

# 더샵 금정위버시티 입주자모집공고



※ 본 아파트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및 계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더샵 금정위버시티」 건본주택 내 분양 상담전화(☎ 051-864-3600) 등을 통해 입주자모집공고 및 청약 등의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나, 간혹 문의전화 폭주로 인하여 상담전화 연결이 안 될 경우가 있으니 양해 바랍니다. 또한 신청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 등의 정확하지 않은 정보 제공에 따른 청약관련 사항에 대한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객 여러분께서는 청약과 관련한 상담은 청약의 참고 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신청자 본인이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청약 자격 등을 숙지하시어 관련 서류 등을 발급받아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콜센터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며 고객 상담 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콜센터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업주체를 통해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2023.11.10.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 본 아파트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4.02.23.입니다.** (청약자격조건 기간, 나이, 지역우선 등의 청약자격조건 판단기준일입니다.)
- 해당 주택건설지역(부산광역시 금정구)은 「주택법」 제63조 및 제63조의2에 의한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으로서,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1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도 1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
- 본 아파트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모든 주택(민간 사전청약, 분양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에 한하여 1인 1건만 신청이 가능하며, **2건 이상 중복신청 시 모두 무효처리 또는 당첨자 선정 이후에도 당첨 무효(예비입주자 지위 무효)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동일단지 내 1인이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 각 1건씩 청약가능하며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 시 일반공급 선정 대상에서 제외처리 함)
- 본 아파트는 수도권 외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른 해당점 제한을 적용받지 않고 기존 주택 당첨여부와 관계없이 본 아파트 청약이 가능합니다. (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 시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4.02.23.) 현재 부산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울산광역시, 경상남도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 신청자 중 같은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부산광역시 거주자가 우선합니다.**
- 2019.11.0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 및 제23조제2항제7호에 따라 우선공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장기해외체류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됩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 상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기간(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 시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봄)은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해당 주택건설지역으로 청약할 수 없습니다. 단, 90일 이내의 여행, 출장, 파견 등 단기 해외체류는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1)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으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2)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으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으로 불인정되며 기타지역 거주자라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8항에 따라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제2조제4호에 의거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 가. 주택공급신청자
    -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 제1호 나목에 의거 주택(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직계존속과 직계존속의 배우자는 가점제 항목의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부양가족 판단 시 직계비속은 미혼자녀와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인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됩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7호의2, 제23조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하오니, 주택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참조)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등의 범위(국토교통부령 부칙 제3조, 제565호, 2018.12.11. 시행)

- 분양권등 신규 계약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봄)

- 분양권등 매수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매매대금 완납일'(실거래 신고서상) 기준 주택 소유로 봄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7호의3에 의거 "소형.저가주택등"은 분양권등을 포함하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 제외)을 기준으로 가격을 판단합니다.

※ "소형.저가주택등"이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주택가격이 1억원(수도권은 1억6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등 (주택가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가목2)의 기준에 따름)

■ 신청자격은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사업주체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일정기간 입주자저축 사용 및 입주자선정 제한 등)을 받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자격, 기준, 일정, 방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격	특별공급					일반공급	
	기관추천	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1순위	2순위
청약통장	필요 (6개월이상, 예치금) ※ 단, 철거민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불필요	필요 (6개월이상, 예치금)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필요 (6개월이상, 예치금)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필요 (1순위, 6개월이상, 예치금)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필요 (1순위, 6개월이상, 예치금)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필요 (1순위, 6개월이상, 예치금)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필요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세대주 요건	-	-	-	필요	-	-	-
소득 또는 자산기준	-	-	적용	-	적용	-	-

※ 1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가입기간이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납입한 자

※ 2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였으나,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 본 아파트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①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거나, ②금융인증서, ③네이버인증서, ④KB국민인증서, ⑤토스인증서 또는 ⑥ 신한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며, 아래와 같이 인증서 로그인 가능하오니 서비스 이용 시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신청 구분	공동인증서 (舊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 (YESKEY)	네이버인증서	KB국민인증서	토스인증서	신한인증서
APT(특별공급/1.2순위) / 오피스텔 / 생활형숙박시설 / 도시형생활주택 / (공공지원)민간임대	○	○	○	○	○	○
APT무순위 / 임의공급 / 취소후재공급(계약취소주택)	○	○	X	X	X	X

- 단, APT 중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는 기관추천 특별공급(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 청약자는 공동인증서 및 금융인증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1항에 따라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본 주택의 해당순위(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2순위)의 청약자격과 입주자저축 요건을 충족 시,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격으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 고령자, 장애인, 다자녀가구(단,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의 최하층 우선배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제1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인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제2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제3호 미성년자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자 또는 세대에 속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신청(특별 및 일반공급)시 최하층의 주택배정을 희망한 당첨자에 대해서 해당 층을 우선 배정하오니 청약 시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며 1층이 없는 경우 최저층을 말하며, 해당 주택의 분양 가격이 바로 위층 주택의 분양가격보다 높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제3호에 해당하는 자 사이에 경쟁이 있으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 배정합니다. 단, 신청자가 많은 경우 다른 층을 배정받을 수 있고, 적은 경우에는 미신청자(최하층 우선배정 신청 비대상자 포함) 에게도 최하층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제1항제1호다목에 의거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 시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전 기존주택을 처분하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 2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 (부칙 제5조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
- 신청접수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청약홈 및 LH청약플러스 등의 기관을 통해 청약접수 및 당첨자 선정을 진행하는 경우 포함)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 할 경우에는 모두 무효처리 및 (민간 사전청약)당첨자 선정 후에도 무효처리 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본인이 같은 주택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 중복청약 시에는 모두 무효처리)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이 '건본주택 방문 신청'에서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인터넷 청약 신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만 사업주체 건본주택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5조제7항에 의거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2에 의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도록 신설되었으며, 특별공급 접수종류 구분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2017.09.20.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6항제2호에 의거 본 주택에 가점제로 당첨되신 분은 당첨일로부터 2년간 가점제 당첨 제한자로 관리되오니, 향후 당첨자 본인 및 세대원이 가점제가 적용되는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가점제 제한사항 적용여부를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 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 본 아파트에 1순위 청약 시 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2년 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추첨제로 청약접수해야 합니다. 또한, 가점제 제한 청약자가 가점제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부적격 처리되오니 청약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순위 접수방법이 '청약신청금 납부'에서 '청약통장 사용'으로 변경되었으니 2순위로 청약하고자 하시는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지역별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8항에 의거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및 광역시에서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주택수보다 추첨 대상자가 많은 경우, 다음 순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1.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되는 주택수의 75% : 무주택세대구성원
  2. 나머지 25%의 주택(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 포함) :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공급한 후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 1순위에 해당하는 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에게 공급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2제1항 및 제26조제1항에 따라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은 순위에 따라 대상 주택수의 50퍼센트를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선정된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로부터 18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함) 당사의 인터넷 홈페이지(www.더삼급정위버시티.com)에 공개되며, 공개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며,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소멸된 때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처리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19.12.0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 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 시 주택형별로 공급 세대수의 500%를 아래와 같이 선정합니다.
    - 1순위 : 공급 세대수의 500%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 등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가점이 높은 자를 앞 순번으로 선정
      - \* 가점제가 적용되지 않는 주택인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
    - 2순위 :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공급세대수 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 등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추첨으로 선정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로 선정된 자 중 당첨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 또는 공급계약을 해약한 자가 있으면 소명기간이 지난 후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의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의 참가의사를 표시한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특별공급 물량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일반공급 물량을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하여 공급하고, 특별공급 물량 중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 제6항에 의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배정일(당첨일)이 입주자 선정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체결은 가능하며 입주자선정내역은 무효처리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9조제2항에 따라 주택의 공급계약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기간 동안에 체결합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 의무화로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부산광역시 금정구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 및 별표1 규정에 의거 주택매매 계약(최초 공급계약 및 분양권, 입주권 전매를 포함)의 부동산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과 입주계획서 및 매수자 본인이 입주할지 여부, 입주 예정시기 등 거래대상 주택의 이용계획의 신고를 의무화 하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필요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해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비·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순위요건을 만족하였으나, 청약 신청 전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청약이 불가합니다.
- 본 아파트의 전매제한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 분	특별공급	일반공급
전매제한기간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6개월까지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6개월까지

- 위장전입 및 불법 전매제한 등을 통한 부정한 당첨자는 「주택법」 제65조 및 「주민등록법」제37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1.02.19.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에 따라 「주택법」 제64조제1항 및 제6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8.12.11.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8조제3항에 의거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된 자는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 사전청약 및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 안내

구 분	특별공급 (기관추천, 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일반1순위	일반2순위	당첨자발표	계약체결
일 정	03월 04일(월)	03월 05일(화)	03월 06일(수)	03월 13일(수)	03월 25일(월) ~ 03월 27일(수)
방 법	인터넷 청약 (09:00 ~ 17:30)	인터넷 청약 (09:00 ~ 17:30)	인터넷 청약 (09:00 ~ 17:30)	개별조회 (청약Home 로그인 후 조회 가능)	-
장 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주체 견본주택</li> <li>■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li> <li>- PC : www.applyhome.co.kr</li> <li>- 스마트폰앱</li> <li>*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li> <li>- PC : www.applyhome.co.kr</li> <li>- 스마트폰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당사 견본주택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29)</li> </ul>

※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 한해 특별공급은 견본주택 방문접수(10:00~14:00, 은행창구 접수 불가), 일반공급은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09:00~16:00)에서 청약 가능함 (단, 은행 영업점별 업무 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람).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스마트폰 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스마트폰 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동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거나,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KB국민인증서 또는 토스인증서 또는 신한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2018.01.31 부산광역시 출산장려정책인「아이·맘부산물랜」에 따라 건축(전문)위원회 심의결과를 반영하여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 총 262세대 중 다자녀 특별공급 150세대 (건설량의 15% 범위), 신혼부부 특별공급 100세대(건설량의 10% 범위)를 아래와 같이 선별(당첨자 발표일[2024.03.13.] 견본주택에서 공개추첨)하고, 공급 금액(bal코너 확장 및 추가선택품목 금액 제외)의 5%를 잔금에서 인하여하여 공급합니다.

- 특별 공급 청약 신청자 중 당첨 세대(정당계약일)에 한하여 공급되며, 이후 예비입주자 및 무순위, 선착순 계약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 「아이·맘부산물랜」의 분양가 인하 혜택은 해당 세대의 최초 계약자에 한하여 적용되며, 분양권 전매 시에는 적용받지 못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 분		59A	59B	84A	84B	합 계
「아이·맘 부산플랜」 적용세대	다자녀가구	29	14	55	52	150
	신혼부부	19	10	37	34	100
	합 계	48	24	92	86	250

- 기관추천,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아이·맘부산플랜」대상 세대에서 제외되며, 「아이·맘부산플랜」 적용 세대는 총 250세대(다자녀가구 150세대, 신혼부부 100세대)입니다.
- 「아이·맘부산플랜」 세대는 각 타입별로 위와 같이 배정되며, 각 타입별 배정된 세대수를 초과하여 공급하지 않습니다.
- 경쟁 발생의 경우 : 타입별 다자녀, 신혼부부 특별공급 배정 세대수 보다 다자녀, 신혼부부 특별공급 당첨자 수가 많은 경우  
[예시 : 다자녀,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신청하였으나, 타 유형(기관추천, 노부모부양, 생애최초)의 접수 미달로 인해 당첨된 경우]
- 타입별 상기 경쟁 발생 시 추첨 대상자
  - ① 다자녀 특별공급 배정 세대수 보다 다자녀 특별공급 당첨자 수가 많은 경우(다자녀 특별공급 경쟁 시)로서 타 유형 접수 미달에 따라 무작위로 당첨된 자
  - ② 신혼부부 특별공급 배정 세대수 보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당첨자 수가 많은 경우(신혼부부 특별공급 경쟁 시)로서 타 유형 접수 미달에 따라 무작위로 당첨된 자
- 경쟁 발생 시 추첨 일정 안내
  - ① 추첨일 : 당첨자 발표일 이후, 서류 접수 기간 중 추첨 대상자를 대상으로 추첨 일정을 개별 통보 후, 건본주택에서 공개추첨하여 선별합니다. 단, 추첨 일정은 유선 및 문자를 통해 안내 예정이며, 추첨 대상자의 착신 불가(수신인의 통화 거절, 스팸문자 등록, 연락처 변경 등) 및 참석 불가 사유(해외 여행, 병의원 입원 등 일신상의 불참 사유 포함)등으로 인하여 미참석 시 대상자 선정이 불가하므로 이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② 대리인 참석 시  
‘위임인 - 위임장(건본주택 비치), 신분증, 인감증명서(본인발급용), 인감도장 / 수임인 -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하며, 해당 서류 미비시 추첨에 참석 불가합니다.
- 「아이·맘부산플랜」에 선별되는 세대는 한국부동산원에서 진행되는 동,호수 추첨과는 무관합니다.
- 2023.11.10. 시행된 내용 관련 자세한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 법령에 따릅니다.
- ※ 본 입주자 모집공고문은 작성 당시 법령 및 정책 등의 규정에 의거하여 작성하였으며, 이후 정책 변경 및 법 개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I**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부산광역시 금정구 건축과-8152호(2024.02.21.)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곡동 200-1번지 일원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3층 ~ 지상 29층 9개동 총 994세대 중 일반분양 308세대

[특별공급 262세대(일반[기관추천] 5세대, 다자녀가구 150세대, 신혼부부 100세대, 노부모부양 2세대, 생애최초 5세대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 입주시기 : 2027년 02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공급대상

(단위 : m<sup>2</sup>, 세대)

주택 구분	주택관리번호	모델	주택형 (전용면적기준)	약식표기	주택공급면적(m <sup>2</sup> )			기타 공용면적 (지하주차장등)	계약 면적	세대별 대지지분	총공급 세대수	특별공급 세대수						일반공급 세대수	최하층 우선배정 세대수
					주거 전용면적	주거 공용면적	소계					기관 추천	다자녀 가구	신혼 부부	노부모 부양	생애 최초	계		
민영 주택	2023000708	01	059.9902A	59A	59.9902	25.9665	85.9567	43.3462	129.3029	36.7856	59	1	29	19	1	1	51	8	1
		02	059.9838B	59B	59.9838	26.0831	86.0669	43.3415	129.4084	36.7817	30	-	14	10	-	-	24	6	3
		03	084.9938A	84A	84.9938	28.5685	113.5623	61.4127	174.9750	52.1177	113	2	55	37	1	2	97	16	9
		04	084.9882B	84B	84.9882	29.4320	114.4202	61.4087	175.8289	52.1142	106	2	52	34	-	2	90	16	9
	합 계											308	5	150	100	2	5	262	46

※ 평형 환산방법 : 공급면적( m<sup>2</sup> )×0.3025 또는 공급면적( m<sup>2</sup> )÷3.3058

※ 대지지분 면적 합산 시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버림하여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표현되어 합산 면적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기타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노인정 등의 공용면적임.

※ 주택형의 구분은 공고상의 표기이며, 건본주택 및 공급안내문/홍보 제작물은 약식으로 표현되었으므로,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에 대한 혼돈 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면적은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표기하여 면적 합산 과정에서 일부 오차가 있을 수 있으며, 이는 공급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특별공급 물량 중 신청접수 미달 물량에 대해서는 다른 특별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신청자에게 추천의 방법으로 우선공급 합니다. 단, 특별공급 전체 신청물량이 공급물량에 미달할 경우 남은 물량은 일반공급으로 전환됨에 따라 일반공급 물량은 특별공급 신청접수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상기 공급세대의 청약접수는 층·호별 구분 없이 청약 순위별 및 주택형별로 접수하여 관계 법령 등에 의거 전산으로 무작위 추첨하여 등·호수가 자동 배정됩니다.

※ 편집 및 인쇄과정 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더샵 금정위버시티 건본주택으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형 표시 안내

입주자모집공고상 (청약시 주택형)	059.9902A	059.9838B	084.9938A	084.9882B
약식표기	59A	59B	84A	84B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 : 원)

주택형 약식 표기	공급 세대수	동별 (라인)	층구분	세대수	분양가			계약금(10%)		중도금(60%)						잔금 (30%) 입주시 (입주지정 기간 내)	
					대지비	건축비	계	1회	2회	1차(10%)	2차(10%)	3차(10%)	4차(10%)	5차(10%)	6차(10%)		
59A	27	103동4,5호 104동4,5호	2층	1	192,217,480	335,852,520	528,070,000	10,000,000	42,807,000	52,807,000	52,807,000	52,807,000	52,807,000	52,807,000	52,807,000	52,807,000	158,421,000
			3-4층	3	196,396,200	343,153,800	539,550,000	10,000,000	43,955,000	53,955,000	53,955,000	53,955,000	53,955,000	53,955,000	53,955,000	53,955,000	161,865,000
			5-6층	5	200,571,280	350,448,720	551,020,000	10,000,000	45,102,000	55,102,000	55,102,000	55,102,000	55,102,000	55,102,000	55,102,000	55,102,000	165,306,000
			7-10층	3	204,750,000	357,750,000	562,500,000	10,000,000	46,250,000	56,250,000	56,250,000	56,250,000	56,250,000	56,250,000	56,250,000	56,250,000	168,750,000
			11-20층	8	208,928,720	365,051,280	573,980,000	10,000,000	47,398,000	57,398,000	57,398,000	57,398,000	57,398,000	57,398,000	57,398,000	57,398,000	172,194,000
	21층 이상	7	213,107,440	372,352,560	585,460,000	10,000,000	48,546,000	58,546,000	58,546,000	58,546,000	58,546,000	58,546,000	58,546,000	58,546,000	175,638,000		
	32	106동4호	3-4층	2	194,430,600	339,719,400	534,150,000	10,000,000	43,415,000	53,415,000	53,415,000	53,415,000	53,415,000	53,415,000	53,415,000	160,245,000	

		107동4호 108동4호	5-6층	1	198,565,640	346,944,360	545,510,000	10,000,000	44,551,000	54,551,000	54,551,000	54,551,000	54,551,000	54,551,000	54,551,000	163,653,000				
			7-10층	6	202,704,320	354,175,680	556,880,000	10,000,000	45,688,000	55,688,000	55,688,000	55,688,000	55,688,000	55,688,000	55,688,000	55,688,000	167,064,000			
			11-20층	17	206,839,360	361,400,640	568,240,000	10,000,000	46,824,000	56,824,000	56,824,000	56,824,000	56,824,000	56,824,000	56,824,000	56,824,000	170,472,000			
			21층 이상	6	210,978,040	368,631,960	579,610,000	10,000,000	47,961,000	57,961,000	57,961,000	57,961,000	57,961,000	57,961,000	57,961,000	57,961,000	173,883,000			
59B	30	106동3호 107동3호 108동3호	1층	3	182,666,120	319,163,880	501,830,000	10,000,000	40,183,000	50,183,000	50,183,000	50,183,000	50,183,000	50,183,000	50,183,000	50,183,000	150,549,000			
			3-4층	3	190,786,960	333,353,040	524,140,000	10,000,000	42,414,000	52,414,000	52,414,000	52,414,000	52,414,000	52,414,000	52,414,000	52,414,000	157,242,000			
			5-6층	4	194,845,560	340,444,440	535,290,000	10,000,000	43,529,000	53,529,000	53,529,000	53,529,000	53,529,000	53,529,000	53,529,000	53,529,000	160,587,000			
			7-10층	4	198,904,160	347,535,840	546,440,000	10,000,000	44,644,000	54,644,000	54,644,000	54,644,000	54,644,000	54,644,000	54,644,000	54,644,000	163,932,000			
			11-20층	12	202,962,760	354,627,240	557,590,000	10,000,000	45,759,000	55,759,000	55,759,000	55,759,000	55,759,000	55,759,000	55,759,000	55,759,000	167,277,000			
			21층 이상	4	207,025,000	361,725,000	568,750,000	10,000,000	46,875,000	56,875,000	56,875,000	56,875,000	56,875,000	56,875,000	56,875,000	56,875,000	170,625,000			
			84A	46	101동3,4호 102동4,5호 105동4호 106동1,2호 107동1,2호 108동1,2호 109동4,5호	1층	4	243,457,760	425,382,240	668,840,000	10,000,000	56,884,000	66,884,000	66,884,000	66,884,000	66,884,000	66,884,000	66,884,000	66,884,000	200,652,000
						2층	5	248,866,800	434,833,200	683,700,000	10,000,000	58,370,000	68,370,000	68,370,000	68,370,000	68,370,000	68,370,000	68,370,000	68,370,000	205,110,000
3-4층	10	254,279,480				444,290,520	698,570,000	10,000,000	59,857,000	69,857,000	69,857,000	69,857,000	69,857,000	69,857,000	69,857,000	69,857,000	209,571,000			
5-6층	5	259,688,520				453,741,480	713,430,000	10,000,000	61,343,000	71,343,000	71,343,000	71,343,000	71,343,000	71,343,000	71,343,000	71,343,000	214,029,000			
7-10층	5	265,097,560				463,192,440	728,290,000	10,000,000	62,829,000	72,829,000	72,829,000	72,829,000	72,829,000	72,829,000	72,829,000	72,829,000	218,487,000			
11-20층	8	270,510,240				472,649,760	743,160,000	10,000,000	64,316,000	74,316,000	74,316,000	74,316,000	74,316,000	74,316,000	74,316,000	74,316,000	222,948,000			
21층 이상	9	275,919,280				482,100,720	758,020,000	10,000,000	65,802,000	75,802,000	75,802,000	75,802,000	75,802,000	75,802,000	75,802,000	75,802,000	227,406,000			
67	102동1호 103동1호 104동1호 105동1호 109동1호	2층		3	241,401,160	421,788,840	663,190,000	10,000,000	56,319,000	66,319,000	66,319,000	66,319,000	66,319,000	66,319,000	66,319,000	66,319,000	198,957,000			
		3-4층		10	246,650,040	430,959,960	677,610,000	10,000,000	57,761,000	67,761,000	67,761,000	67,761,000	67,761,000	67,761,000	67,761,000	67,761,000	203,283,000			
		5-6층		5	251,898,920	440,131,080	692,030,000	10,000,000	59,203,000	69,203,000	69,203,000	69,203,000	69,203,000	69,203,000	69,203,000	69,203,000	207,609,000			
84B	106	101동1,2호 102동2,3호 103동2,3호 104동2,3호 105동2,3호 109동2,3호	7-10층	10	257,144,160	449,295,840	706,440,000	10,000,000	60,644,000	70,644,000	70,644,000	70,644,000	70,644,000	70,644,000	70,644,000	211,932,000				
			11-20층	21	262,393,040	458,466,960	720,860,000	10,000,000	62,086,000	72,086,000	72,086,000	72,086,000	72,086,000	72,086,000	72,086,000	216,258,000				
			21층 이상	18	267,641,920	467,638,080	735,280,000	10,000,000	63,528,000	73,528,000	73,528,000	73,528,000	73,528,000	73,528,000	73,528,000	73,528,000	220,584,000			
			1층	9	237,986,840	415,823,160	653,810,000	10,000,000	55,381,000	65,381,000	65,381,000	65,381,000	65,381,000	65,381,000	65,381,000	65,381,000	196,143,000			
			2층	9	243,275,760	425,064,240	668,340,000	10,000,000	56,834,000	66,834,000	66,834,000	66,834,000	66,834,000	66,834,000	66,834,000	66,834,000	200,502,000			
			3-4층	16	248,564,680	434,305,320	682,870,000	10,000,000	58,287,000	68,287,000	68,287,000	68,287,000	68,287,000	68,287,000	68,287,000	204,861,000				
			5-6층	14	253,853,600	443,546,400	697,400,000	10,000,000	59,740,000	69,740,000	69,740,000	69,740,000	69,740,000	69,740,000	69,740,000	209,220,000				
			7-10층	15	259,142,520	452,787,480	711,930,000	10,000,000	61,193,000	71,193,000	71,193,000	71,193,000	71,193,000	71,193,000	71,193,000	213,579,000				
			11-20층	26	264,431,440	462,028,560	726,460,000	10,000,000	62,646,000	72,646,000	72,646,000	72,646,000	72,646,000	72,646,000	72,646,000	217,938,000				
			21층 이상	17	269,720,360	471,269,640	740,990,000	10,000,000	64,099,000	74,099,000	74,099,000	74,099,000	74,099,000	74,099,000	74,099,000	222,297,000				

## ■ 공통 유의사항

- 상기 공급 세대의 청약 접수는 동별, 층별, 호별 구분 없이 주택형별, 청약 순위별로 접수하여 한국부동산원에서 동·호수를 추첨하여 추첨 결과에 따라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본 아파트에 대한 신청 자격 및 요건 등의 판단 시 기준이 되는 면적은 주거전용면적이고, 연령조건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며, 당첨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자는 본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소명 기간 이내에 소명 완료하여야만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발코니 확장 및 추가 선택품목[유상옵션 등] 비용이 미포함된 가격이며, 발코니 확장 및 추가 선택품목은 계약자가 선택하여 계약하는 사항으로 발코니 확장 및 유상옵션의 계약은 분양계약서 또는 분양계약 이후에 별도의 계약을 통해 선택이 가능합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공히 소유권 이전 등기 비용, 취득세가 미포함된 가격입니다.
- 상기 세대별 계약 면적에는 계단, 복도, 벽체 등 주거 공용면적과 지하 주차장, 경비실, 주민공동시설, 기계/전기실 등의 기타 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각 주택형별 지하 주차장 등에 대한 금액이 상기 공급금액에 포함됩니다.
- 상기 세대별 공급면적, 계약 면적과 대지 지분은 인허가 과정, 법령에 따른 공부 정리, 소수점 이하 단수 정리에 따라 실제 등기 시 공급면적, 계약 면적 및 대지 지분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증감이 있을 때는 공급가격에 의해 계산하여 소유권이전 등기 시까지 상호 정산하기로 함. 단, 소수점 이하 면적변동 및 이로 인한 지분 변동에 대해서는 상호 정산하지 않습니다.
- 전용면적은 안목치수로 산정하며,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으로 등기 면적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잔금은 주택의 사용검사일을 기준으로 받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0조에 의거 납부할 수 있으며, 임시사용승인(동별 사용검사 포함)을 받아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은 입주일에 납부하고, 전체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대지권에 대한 등기는 공부 정리 절차 등의 이유로 실입주일과는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음. 위 단서 조항은 적용되지 않음)
- 분양금액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며 잔금은 입주(열쇠 수령일) 전에 완납하여야 합니다.

- 당 사업장의 중도금, 잔금 납입 일정 및 입주 예정 시기는 공사 진척상황(공정률)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분양대금(중도금, 잔금) 납부일이 휴일 및 법정 공휴일인 경우 다음날 은행 영업일을 기준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연체료 납부 시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로 인해 납부가 지연되는 경우라도 납부 지연에 따른 연체일 수로 산정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분양대금 납부 일정은 사전에 계약자 본인이 숙지하고 청약 및 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불합리하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정부가 출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분양 보증받은 아파트이며,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해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사업주체가 본 아파트의 시행권 및 분양자로서의 권리를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수분양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시행권 인수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별도의 동의 절차 없이도 시행자(분양자)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합니다.
- 입주예정자의 사전방문에 대해서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에 의거 입주 개시 전 도장공사, 도배공사, 가구공사, 타일공사, 주방용구 공사 및 위생기구 공사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입주자의 사전방문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 본 표시재산의 구조물 등 제반 사항은 설계도면 등을 통하여 반드시 확인 후 계약하여야 하며, 확인하지 못한 사항으로 인한 이의 제기 및 그 밖의 광고, 인쇄물이나 구두 약정의 내용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부동산 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인지세 등 각종 제세공과금은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본 아파트 계약체결시 계약자의 부담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II 특별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 ■ 특별공급 신청자격별 · 주택형별 공급세대수

구 분		59A	59B	84A	84B	합 계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국가유공자	1	-	-	1	2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	-	-	1	1
	중소기업 근로자	-	-	1	-	1
	장애인	-	-	1	-	1
	부산광역시	-	-	-	-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29	14	55	52	150
신혼부부 특별공급		19	10	37	34	100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1	-	1	-	2
생애최초 특별공급		1	-	2	2	5
합 계		51	24	97	90	262

※ 주택형별 특별공급대상 세대수는 공급세대수, 비율 등을 감안하여 배정하였으며 배정 호수가 없는 주택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음.

※ (신혼부부) 2021.11.1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50%(소수점 이하 올림)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00%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에게 우선공급하며, 세대수의 20%(소수점 이하 올림. 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40%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한다)합니다. 남은 세대수는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자산기준을 만족하는 신청자와 소득기준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공급합니다.

※ (생애최초) 2021.11.1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50%(소수점 이하 올림)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30%이하인 자에게 우선공급하며, 세대수의 20%(소수점 이하 올림. 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60%이하인 자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한다)합니다. 남은 세대수는 1인 가구 신청자,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자산기준을 만족하는 신청자 및 소득기준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공급합니다.



■ 특별공급 공통사항

구분	내용																				
1회 한정/ 자격요건/ 자격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특별공급 주택을 분양받고자 하는 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에 따라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이 가능하고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향후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 제1호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특별공급 횟수 제한 제외)</li> <li>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li> </ul>																				
무주택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주 한정) 중 1인만 신청가능하며,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의 구성원(부부 포함)이 중복 청약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체결 불가, 부적격당첨자로 관리되며 당첨일부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 사전청약 및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당첨 제한</li> <li>-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생애최초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li> <li>-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주 요건</li> <li>※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및 제4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주택공급신청자</li> <li>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li> <li>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li> <li>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li> <li>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li> </ul> </li> </ul> </li> </ul>																				
청약자격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관추천 특별공급(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민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제외) / 신혼부부 특별공급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신청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li> <li>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li> <li>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li> </ul> </li> <li>-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자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자는 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li> <li>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li> <li>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li> </ul> </li> </ul> </li> <li>※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 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 가능함.</li> </ul> <p style="text-align: center;">[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p> <table border="1" data-bbox="295 1177 2107 1388"> <thead> <tr> <th data-bbox="295 1177 759 1241">구 분</th> <th data-bbox="763 1177 1220 1241">특별시 및 부산광역시</th> <th data-bbox="1225 1177 1682 1241">울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th> <th data-bbox="1686 1177 2107 1241">경상남도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th> </tr> </thead> <tbody> <tr> <td data-bbox="295 1244 759 1276">전용면적 85㎡ 이하</td> <td data-bbox="763 1244 1220 1276">300만원</td> <td data-bbox="1225 1244 1682 1276">250만원</td> <td data-bbox="1686 1244 2107 1276">200만원</td> </tr> <tr> <td data-bbox="295 1279 759 1311">전용면적 102㎡ 이하</td> <td data-bbox="763 1279 1220 1311">600만원</td> <td data-bbox="1225 1279 1682 1311">400만원</td> <td data-bbox="1686 1279 2107 1311">300만원</td> </tr> <tr> <td data-bbox="295 1315 759 1347">전용면적 135㎡ 이하</td> <td data-bbox="763 1315 1220 1347">1,000만원</td> <td data-bbox="1225 1315 1682 1347">700만원</td> <td data-bbox="1686 1315 2107 1347">400만원</td> </tr> <tr> <td data-bbox="295 1350 759 1382">모든면적</td> <td data-bbox="763 1350 1220 1382">1,500만원</td> <td data-bbox="1225 1350 1682 1382">1,000만원</td> <td data-bbox="1686 1350 2107 1382">500만원</td> </tr> </tbody> </table> <p>※ '지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을 말합니다.</p>	구 분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경상남도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전용면적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구 분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경상남도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전용면적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특별공급 각 유형에서 미달세대 발생 시 타 유형의 특별공급 낙첨자(동일한 주택형의 낙첨자)에게 우선공급하며, 경쟁 발생 시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li> <li>특별공급 예비입주자는 각 주택형별 특별공급 세대수의 500%를 선정합니다. 단, 특별공급 신청자수가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600% 미만인 경우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특별공급</li> </ul>																				

- 신청자 전원 예비입주자로 선정되며, 신청자 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600%를 초과할 경우 일부 신청자는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 당첨세대의 당첨 취소, 미계약 등 잔여세대 발생 시 해당 주택형별 특별공급 예비입주자 중에서 순번대로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잔여세대의 동·호수를 공개 후 이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자 명단은 당첨자명단 발표시 함께 발표됩니다.)
  - 특별공급 신청자가 없거나 신청자 수가 공급세대 수에 미달된 경우, 잔여물량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합니다.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청약 시에는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을 무주택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당첨자 선정과 동·호수 추첨은 청약Home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일반공급 당첨 대상자와 함께 진행되며 동·호수는 무작위로 결정 합니다.
  - 청약 신청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 소유여부의 판단에 있어 공급신청 당시 입력값(자료)으로 우선 입주자 선정을 하고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구성원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청약 신청 시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재내용을 검색 또는 확인 결과 평점요소 자격이 다르거나 무주택 기간이 상이할 경우, 유주택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공급계약 체결 이후라도 당첨 취소 및 계약 해제는 물론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경우, 분양 일정 상 계약일 이후라도 아파트 당첨 취소 및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중복청약 당첨 시 처리기준

#### ■ 공통사항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동일 단지의 경우 특별공급 신청자가 일반공급에도 중복 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에 당첨된 경우 일반청약은 무효로 처리(특별공급에 예비입주자로 당첨된 경우에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에서 제외)하고, 특별공급 신청자가 타유형의 특별공급에 중복 청약 시 둘 다 무효처리 됩니다.
- 비규제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인 경우 특별공급 당첨자의 세대구성원이 동일단지(다른단지 포함) 일반공급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둘 다 인정합니다.

####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 세대수의 10% 범위) : 5세대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해당하는 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특별공급 대상으로 아래의 해당 기관장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으신 분.  
(단, 거주요건 등 우선순위 기준은 해당 기관장이 정하며,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는 제외함)

※ 청약자격요건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단,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 제외

※ 추천기관

구 분	관련법규	해당기관
국가유공자 등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등	부산지방보훈청 복지과
장애인	「장애인 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부산광역시청 장애인 복지과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군인복지기본법」 제10조 10년 이상 복무한 군인	국방부 국군복지단 복지사업운영과
중소기업 근로자	「중소기업인력 지원특별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성장지원과

#### ■ 당첨자 선정방법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해야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합니다.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미신청시 당첨자선정(동·호배정)에서 제외되며 계약불가]**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해야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은 해당 추천기관에서 자체 기준에 의거 대상자를 확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되므로 사업주체 및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한국부동산원)은 선정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 **다자녀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 및 2018.01.31. 부산광역시 출산장려정책인 「아이·맘부산플랜」을 반영, 건설량의 15% 범위) : 150세대**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0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부산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지역에 거주하는 만19세 미만의 자녀 3명(태아 포함) 이상을 둔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경과,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다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3명 이상의 자녀 모두 민법상 미성년자(만19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3명 이상의 자녀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와 다른 지역에 거주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 자녀수에는 태아, 입양자녀도 포함 합니다.
  - 태어나 입양한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할 경우 출산 등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입주시까지 입양이 유지되어야 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제3항)
  - 임신부부 또는 입양부부가 다자녀 특별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되는 경우,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에게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까지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 제출을 요구하여 출산여부 및 입양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양의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하고, 임신부부의 임신상태가 입주지정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이를 확인 할 수 있으며 입주예정자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법낙태 또는 입주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는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당첨자 선정방법**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해당주택건설지역(부산광역시)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하며, 경쟁이 있는 경우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우선순위 배점표”에 의한 점수 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 동일점수로 경쟁이 있을 경우 ①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②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 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순으로 공급합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평점요소	총배점	배점기준		비고
		기준	점수	
계	100			
미성년 자녀수(1)	40	미성년 자녀 5명 이상	40	자녀(태아, 입양아, 전혼자녀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만 포함
		미성년 자녀 4명	35	
		미성년 자녀 3명	30	
영유아 자녀수(2)	15	자녀 중 영유아 3명 이상	15	영유아(태아, 입양아, 전혼자녀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의 자녀
		자녀 중 영유아 2명	10	
		자녀 중 영유아 1명	5	
세대구성(3)	5	3세대 이상	5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공급신청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자
		한부모 가족	5	
무주택기간(4)	20	10년 이상	20	배우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도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청약자가 성년(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이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
		5년 이상 ~ 10년 미만	15	

		1년 이상 ~ 5년 미만	10	인 기간으로 산정하되 청약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부터 무주택 기간 산정
해당 시·도 거주기간(5)	15	10년 이상	15	공급신청자가 성년자(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로서 해당 지역(부산광역시)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산정 * 시는 광역시, 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 특별자치도 기준이며, 수도권의 경우 서울, 경기, 인천 지역 전체를 해당 시·도로 본다.
		5년 이상 ~ 10년 미만	10	
		1년 이상 ~ 5년 미만	5	
입주자저축가입기간(6)	5	10년 이상	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공급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1), (2)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혼·재혼의 경우 자녀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경우(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도 포함)에 한함)

(3) : 한부모 가족의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로 확인 (3), (4) : 주택소유여부 판단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를 적용

(4), (5)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주민등록표초본으로 확인 (6) : 입주자저축 가입확인서로 확인

※ 동점자 처리 ①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② 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 **신혼부부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 및 2018.01.31. 부산광역시 출산장려정책인 「아이·맘부산플랜」을 반영, 건설량의 10% 범위) : 100세대**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부산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지역에 거주하고 혼인기간이 7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 재혼 포함)인 무주택세대구성원(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로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 무주택자이어야 함)으로서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 단, 혼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는 자는 2018.12.11. 전에 기존 소유 주택을 처분한 이후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에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에 따라 2순위 청약 가능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경과,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출산은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판단하며, 임신의 경우 임신진단서, 입양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양자 및 친양자의 경우 입양관계 증명서 상 입양신고일이 적용됨) 등으로 확인합니다.
- 임신의 경우 서류 제출 시 출산 관련 자료(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임신 지속 시 임신진단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허위임신, 불법낙태의 경우에는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출산 관련 자료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소득기준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4명 이상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 기준의 140%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

입주자모집공고일	상시근로자 근로소득 확인 시점	사업자 및 프리랜서 등 소득 확인 시점
2024.02.23	(해당 세대의) 전전년도 소득	(해당 세대의) 전전년도 소득

- 자산기준 : 해당 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40%,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은 초과하나, 해당 세대의 부동산가액기준(3억3,1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자는 추첨제 자격으로 신청 가능

※ 부동산가액 산출기준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및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 기타 본 공고상에 표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 따릅니다.

■ **당첨자 선정 방법**

- 2021.11.1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 ① 세대수의 50%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00% 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에게 우선공급
- ② 세대수의 20%(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40% 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
- ③ 남은 주택(일반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40%,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기준을 충족하는 자(일반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경쟁이 있는 경우 당첨자 선정방법

- 우선공급 또는 일반공급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제1순위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공급 합니다.

① 제1순위 :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경우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자[「민법」제855조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외의 출생자(현재 혼인관계인 배우자와의 자녀를 혼인신고일전에 출생신고한 경우를 말함)를 포함]

\* 재혼일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내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포함)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

② 제2순위 : 1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 무자녀 또는 2018.12.11. 전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

- 같은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①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부산광역시) 거주자

②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 수가 많은 자

\* 재혼인 경우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자녀(전혼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신청자 또는 세대 분리된 재혼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되어야 함.

\* 재혼 배우자의 친자녀(전혼 배우자의 자녀)는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만 해당

③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 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된 자

- 추첨제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순위 상관없이 해당 주택건설지역(부산광역시) 거주자한테 우선공급하고,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 2022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공급유형		구분	2022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소득 기준 구분	우선공급 (기준소득, 50%)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00% 이하	~6,509,452원	~7,622,056원	~8,040,492원	~8,701,639원	~9,362,786원	~10,023,933원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00%초과~120% 이하	6,509,453원~ 7,811,342원	7,622,057원~ 9,146,467원	8,040,493원~ 9,648,590원	8,701,640원~ 10,441,967원	9,362,787원~ 11,235,343원	10,023,934원~ 12,028,720원
	일반공급 (상위소득, 20%)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00%초과~140%이하	6,509,453원~ 9,113,233원	7,622,057원~ 10,670,878원	8,040,493원~ 11,256,689원	8,701,640원~ 12,182,295원	9,362,787원~ 13,107,900원	10,023,934원~ 14,033,506원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초과~160%이하	7,811,343원~ 10,415,123원	9,146,468원~ 12,195,290원	9,648,591원~ 12,864,787원	10,441,968원~ 13,922,622원	11,235,344원~ 14,980,458원	12,028,721원~ 16,038,293원
소득기준 초과 / 자산기준 충족 (추첨제, 30%)	배우자가 소득이 없는 경우	140%초과, 부동산가액(3.31억원) 충족	9,113,234원~	10,670,879원~	11,256,690원~	12,182,296원~	13,107,901원~	14,033,507원~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초과, 부동산가액(3.31억원) 충족	10,415,124원~	12,195,291원~	12,864,788원~	13,922,623원~	14,980,459원~	16,038,294원~	

- 기준소득 :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부부 중 1인 소득이 월평균 소득기준 100%초과시 일반공급 20%(상위소득)[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월평균 소득기준 120%초과~160%이하)]를 선택하여야 합니다.

- 상위소득 :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4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 추첨제 : 해당 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40%,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은 초과하나, 해당 세대의 부동산가액기준(3.31억원) 이하에 해당하는 자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661,147) \* (N-8), 100% 기준}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가구원수 산정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인정하되,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포함.

※ (월평균 소득산정 대상) 가구원수에 포함되는 가구원 중 만19세 이상인 성년자(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 부양) 포함). 단, 세대원의 실종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

※ (월평균소득) 소득산정 대상자별 월평균소득을 합산한 금액.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총급여액(21번) 및 소득금액증명상의 지급받은 총액(수입금액)을

근로기간(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으로 나누어 산정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소득금액을 사업기간(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으로 나누어 산정.

※ 소득산정은 청약신청자의 상황(계속적인 근로자 또는 사업자, 신규취업자, 이직자, 신규사업자, 프리랜서 등)에 따라 산정방식이 달리 적용되므로 본인의 상황을 "주택청약 FAQ(국토교통부 발간)"을 확인하여야 하며, 소득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부적격처리 또는 계약포기로 간주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의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를 준비한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자산보유기준

구 분	자산보유기준	자산보유기준 세부내역												
부동산 (건물+토지)	3억3,100만원 이하	건축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li> </ul> <table border="1" style="width:100%; text-align:center;"> <thead> <tr> <th colspan="2">건축물 종류</th> <th>지방세정 시가표준액</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주 택</td> <td>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td> <td>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td> </tr> <tr> <td>단독주택</td> <td>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td> </tr> <tr> <td colspan="2">주택 외</td> <td>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td> </tr> </tbody> </table>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주 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주택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주 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주택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 단, 아래 경우는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구·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대장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li> <li>- 「초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법」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li> <li>-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li> <li>- 종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li> </ul> </li> <li>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li> </ul>													

■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자격 관련 기타 예외사항(「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별표3)

군 복무중이어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가 없는 경우	군복무확인서와 의료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징구하고 이 경우 군복무자(직업군인 제외)는 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군복무자의 배우자의 소득을 파악하여 월평균소득을 산정
직업이 프리랜서이고 소득이 불규칙한 경우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의 소득금액을 근무월수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
유자녀 부부로 청약하려는 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출생하였으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출생신고를 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여 출생자녀가 부부사이의 자녀로 인정되는 경우 청약자격을 인정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	전년도 1월 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 소득을 동 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
자영업자이면서 근로자인 경우	전년도 사업소득에 관한 월평균소득과 근로소득에 대한 월평균소득을 각각 산정하여 합산하되, 사업소득이 손실로 되어 있으면 사업소득은 없는 것으로 하여 근로소득만으로 월평균소득을 산정

■ 생애최초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3조 :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 세대수의 9% 범위) : 5세대

■ 신청자격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3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부산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지역에 거주하면서 생애최초(세대에 속한 모든 자가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한정)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①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른 청약1순위(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경과,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②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재혼을 포함)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입양을 포함, 혼인 중이 아닌 경우에는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올라 있는 자녀를 말함)가 있는 자 또는 1인 가구\*

\* (1인 가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 아니면서(사별 또는 이혼을 포함) 미혼인 자녀(혼인 중이 아닌 경우에는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자녀)도 없는 신청자. 1인 가구는 추첨제로만 청약가능하며, 단독세대(동거인이나 형제, 자매 등 세대구성원에 해당하지 않는 자와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포함)와 단독세대가 아닌 자로 구분하며, 단독세대는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형에 한하여 청약가능

예시)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미혼인 공급신청자 + 어머니(직계존속) 등재 : 평형 상관없음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미혼인 공급신청자(단독세대)만 등재 :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형에 한하여 청약가능

- ③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과거 1년 내에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소득세(「소득세법」제19조 또는 제20조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함)를 납부한 사실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로서 통산하여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 단, 이 경우 해당 소득세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 소득기준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4명 이상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 기준의 160% 이하인 자

입주자모집공고일	상시근로자 근로소득 확인 시점	사업자 및 프리랜서 등 소득 확인 시점
2024.02.23	(해당 세대의) 전전년도 소득	(해당 세대의) 전전년도 소득

- 자산기준 : 해당 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160%)은 초과하나, 해당 세대의 부동산가액기준(3억3,1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자는 추첨제 자격으로 신청 가능
  - ※ 부동산가액 산출기준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및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 청약자가 근로소득(사업소득)에 따른 소득세 납부 실적이 없을 경우 청약이 불가합니다.
- 소득세 납부내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통산 5년의 납부실적을 의미하며, 특히, 비연속적인 경우에도 합산하여 인정 가능함. 단, 5년 이상 소득세 납부실적은 청약자 본인이 납부한 경우만 인정하며, 그 배우자 또는 세대원의 납부실적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등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에도 모집공고일 현재 1년 이내 소득세를 납부한 자로서 통산하여 5년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신청 가능합니다.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른 청약 1순위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 배우자가 결혼 전에 주택을 소유하였다가 처분한 경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어 생애최초 특별공급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청약신청자의 세대원 전원이 구입, 상속, 증여 등 사유를 불문하고 과거 한번이라도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의 지분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만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하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따른 무주택으로 인정받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무주택으로 보아, 생애최초 자격을 부여합니다.
- 기타 본 입주자모집공고 상에 표시되지 않는 내용은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 따릅니다.

■ 당첨자 선정방법

- 2021.11.1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 ① 세대수의 50%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30% 이하인 자에게 우선공급
  - ② 세대수의 20%(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60% 이하인 자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
  - ③ 남은 주택(일반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 160%를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기준을 충족하는 자(일반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 및 1인 가구 신청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
- 소득기준구분 및 추첨제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부산광역시) 거주자가 우선하며,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2022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공급유형		구 분	2022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소득 기준 구분	우선공급(기준소득, 50%)	130% 이하	~8,462,288원	~9,908,673원	~10,452,640원	~11,312,131원	~12,171,622원	~13,031,113원
	일반공급(상위소득, 20%)	130% 초과~160% 이하	8,462,289원~ 10,415,123원	9,908,674원~ 12,195,290원	10,452,641원~ 12,864,787원	11,312,132원~ 13,922,622원	12,171,623원~ 14,980,458원	13,031,114원~ 16,038,293원
추첨제 (30%)	소득기준 초과 / 자산기준 충족	160%초과, 부동산가액(3.31억원)충족	10,415,124원~	12,195,291원~	12,864,788원~	13,922,623원~	14,980,459원~	16,038,294원~
		160%이하	~10,415,123원	~12,195,290원	~12,864,787원	~13,922,622원	~14,980,458원	~16,038,293원
	1인 가구	160%초과, 부동산가액(3.31억원) 충족	10,415,124원~	12,195,291원~	12,864,788원~	13,922,623원~	14,980,459원~	16,038,294원~

-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661,147) \* (N-8), 100% 기준)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 (가구원수 산정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인정하되,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포함.
- ※ (월평균 소득산정 대상) 가구원수에 포함되는 가구원 중 만19세 이상인 성년자(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 부양) 포함). 단, 세대원의 실종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
- ※ (월평균소득) 소득산정 대상자별 월평균소득을 합산한 금액.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총급여액(21번) 및 소득금액증명상의 지급받은 총액(수입금액)을 근로기간(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으로 나누어 산정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소득금액을 사업기간(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으로 나누어 산정.
- ※ 소득산정은 청약신청자의 상황(계속적인 근로자 또는 사업자, 신규취업자, 이직자, 신규사업자, 프리랜서 등)에 따라 산정방식이 달리 적용되므로 본인의 상황을 "주택청약 FAQ(국토교통부 발간)"을 확인하여야 하며, 소득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부적격처리 또는 계약포기로 간주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의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를 준비한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 1인 가구 신청자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 중 하나만 충족하면 청약자격을 만족하는 것으로 봅니다.

※ 자산보유기준

구 분	자산보유기준	자산보유기준 세부내역													
부동산 (건물+토지)	3억3,100만원 이하	건축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li> </ul>												
			<table border="1"> <thead> <tr> <th colspan="2">건축물 종류</th> <th>지방세정 시가표준액</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주 택</td> <td>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td> <td>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td> </tr> <tr> <td>단독주택</td> <td>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td> </tr> <tr> <td colspan="2">주택 외</td> <td>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td> </tr> </tbody> </table>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주 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주택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주 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주택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 단, 아래 경우는 제외</li> <li>- 「농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구·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대장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li> <li>- 「초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법」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li> <li>-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li> <li>- 중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li> </ul>												



■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자격 관련 기타 예외사항(「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별표3)

군 복무중이어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가 없는 경우	군복무확인서와 의료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징구하고 이 경우 군복무자(직업군인 제외)는 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군복무자의 배우자의 소득을 파악하여 월평균소득을 산정
직업이 프리랜서이고 소득이 불규칙한 경우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의 소득금액을 근무월수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
청약자의 자녀를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출생하였으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출생신고를 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여 출생자녀가 청약자의 자녀로 인정되는 경우 청약자격을 인정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	전년도 1월 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 소득을 동 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
자영업자이면서 근로자인 경우	전년도 사업소득에 관한 월평균소득과 근로소득에 대한 월평균소득을 각각 산정하여 합산하되, 사업소득이 손실로 되어 있으면 사업소득은 없는 것으로 하여 근로소득만으로 월평균소득을 산정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 : 공급 세대수의 3% 범위) : 2세대

- 신청자격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부산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지역에 거주하면서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여야 함)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른 청약1순위(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경과,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자격요건 및 세대주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 피부양자(노부모) 및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 따라 피부양자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에서 제외)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해야 합니다.
-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피부양자의 배우자 포함)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제6호 미적용)
- 기타 본 입주자모집공고 상에 표시되지 않는 내용은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 따릅니다.

■ 당첨자 선정방법

-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주택건설지역(부산광역시)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제2항에 따라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가점제를 적용하되, 동점일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에 따릅니다.
- 1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가점제 적용은 신청자 본인이 작성한 '청약가점 산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의거한 청약가점 점수를 우선순위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신청자 본인이 직접 작성한 청약가점의 점수가 본인의 기재 오류에 의한 잘못으로 판명될 경우, 당첨이 취소될 수 있으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Ⅲ 일반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 ■ 일반공급 신청자격 및 유의사항

구 분	내 용
신청자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부산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자) 중 입주자저축 순위별 자격요건을 갖춘자(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 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를 대상으로 주택형별 청약순위 별로 청약 접수가 가능합니다.</li> <li>- 신청자 중 동일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에 따라 해당 주택건설지역(부산광역시)에 거주중인 신청자가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거주 신청자보다 우선합니다.</li> <li>- 청약통장에 가입하여 6개월이 지난 자로서 지역별 예치기준금액 이상을 납부한 자만 1순위 청약이 가능합니다.</li> </ul>
청약신청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약 전 반드시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a href="https://www.applyhome.co.kr">https://www.applyhome.co.kr</a>)에서 과거 당첨사실을 조회하시기 바랍니다.</li> <li>- 신청자격 및 요건 등의 기준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이며, 면적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합니다.</li> <li>- 주민등록표초본상 말소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사도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합니다.</li> <li>- 청약신청 접수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중복신청이 불가(1인 1건만 신청 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신청할 경우에는 청약 모두를 무효 처리합니다.</li> <li>- 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당첨자로 전산관리 됩니다.</li> <li>-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 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당첨자 발표일이 늦은 주택의 당첨은 자동 취소됩니다. (각각 동일한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경우에 한함)</li> <li>- 상기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재사용이 불가하며, 당첨자로 전산 관리되므로 향후 다른 주택청약 시 제한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단, 부적격 당첨자가 소명기간 내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 청약과열지역은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촉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 주택(민간 사전청약 및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li> <li>- 당첨 및 계약 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행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조치하며, 관계 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li> <li>- 청약예금에 가입한 후 예치금액이 작은 지역에서 큰 지역으로 주거를 이전한 자는 신청일 현재 변경된 주거지역에 해당하는 청약예금 예치금액으로 증액 하여야 청약 가능합니다. (단, 차액을 감액하는 경우 또는 주거지 변경없이 가입한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지역간 예치금액 변경없이 청약 가능함)</li> <li>※ 청약통장 관련 기준사항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 기준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신청 가능합니다.</li> <li>② 청약예금 지역간 예치금액 차액 충족 기준 : 청약 접수 당일까지 충족 시 청약 신청 가능합니다.</li> <li>③ 청약통장 예치금 기준(주택청약종합저축)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당일까지 예치금 충족 시 청약 신청 가능합니다.</li> <li>④ 청약예금의 신청 가능 주택규모(전용면적 기준) 변경한 분 신청 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단, 작은 주택규모로 변경할 경우 해당구간의 청약예치금액 충족 시 별도의 주택규모 변경 절차 없이 하위 면적 모두 청약 가능합니다.)</li> </ol> </li> <li>- 거주지역 판단 시 유의사항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해당지역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부산광역시에 거주한 자</li> <li>② 기타지역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에 거주한 자</li> </ol> </li> </ul>

#### ■ 입주자저축 순위별 요건(「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구 분	순 위	주택형	청약관련 신청자격
민영주택	1순위	전용 60㎡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용면적 60㎡ 이하 : 가점제 (40%) 및 추첨제 (60%) 적용, 가점제 낙첨자는 추첨제 대상자로 자동 전환됨.</li> <li>■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요건이 아래의 1순위를 충족하는 자. (가점제 접수)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li> <li>②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납입하여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li> <li>③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현재 납입인정 범위 내에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li> <li>④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납입금액이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li> </ol> </li> </ul>

	<b>전용 60㎡초과 85㎡이하</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 : 가점제 (40%) 및 추첨제 (60%) 적용, 가점제 낙첨자는 추첨제 대상자로 자동 전환됨.</li> <li>■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요건이 아래의 1순위를 충족하는 자. (가점제 접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li> <li>②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납입하여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li> <li>③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현재 납입인정 범위 내에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li> <li>④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납입금액이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li> </ul> </li> </ul>
2순위	전 주택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청약예·부금 및 주택청약종합저축(포함)에 가입한 자</li> </ul>

■ **입주자저축의 예치금액(「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9조제3항 별표2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

구 분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경상남도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전용면적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0조제1항 별표2에 의거 지역별, 주택 규모별 예치금을 예치한 청약통장 가입자는 그 예치금 이하에 해당하는 면적에 모두 청약이 가능합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주택규모선택 및 변경 절차 폐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2016.12.30.)으로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의 주택규모선택 및 변경 절차가 폐지됨에 따라 순위 산정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의 가입기간 및 예치금(잔액 기준)으로 순위를 산정합니다.(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의 순위산정은 현행과 동일함)

- 예치금 잔액은 청약자가 청약 신청 당시 선택한 주민등록표 상 현재 거주지(지역)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지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을 말함

■ **청약 가점제 적용기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 1**

구 분	내 용
① 무주택기간 적용 기준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한다.</li> <li>2) 소형·저가주택등의 가격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을 말한다) 중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른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li> <li>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li> <li>다) 분양권등의 경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한다)</li> </ul> </li> <li>3) 무주택기간은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주택공급신청자의 연령이 만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만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한다. 이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한다)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한다.</li> </ol>
② 부양가족의 인정 적용 기준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원으로 한다.</li> <li>2)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주택공급신청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다만,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으며,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직계존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국인 직계존속</li> <li>- 내국인 직계존속이라도 요양시설(「주민등록법」 제12조에 따라 주민등록을 하는 노인요양시설을 말함) 및 해외에 체류 중(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인 경우</li> </ul> </li> </ol> <p>※ 2019.11.01. 개정·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따라 부양가족을 산정 시에는 제53조제6호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주택을 소</p>

	<p>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p> <p>3) 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한 손자녀 포함)는 <b>미혼으로 한정</b>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택공급신청자의 <b>만30세 이상인 직계비속</b>은 <b>입주자모집공고일</b>을 기준으로 <b>최근 1년 이상</b>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li> <li>- 재혼배우자의 자녀는 주택공급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li> </ul> <p>4) 결혼 후 이혼한 자녀는 "미혼인 자녀"로 보지 않으며, <b>외국인인 직계비속</b>과 아래의 경우처럼 해외 체류 중인 직계비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만30세 미만)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li> <li>- (만30세 이상)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li> </ul>
③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한다.
④ 주택소유여부 및 무주택기간 산정기준	①무주택기간 적용기준 및 ②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에 따라 주택소유 여부를 판정하거나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제23조제4항 및 제53조에 따른다.

■ 청약 가점제 산정기준표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 2 나목

가점항목	가점상한	가점구분	점 수	가점구분	점 수	확인할 서류 등
① 무주택기간	32	만30세 미만 미혼자 또는 유주택자	0	8년 이상 ~ 9년 미만	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분리세대 시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li> <li>■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등</li> <li>■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 만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혼인신고일 확인</li> </ul>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1년 이상 ~ 2년 미만	4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2년 이상 ~ 3년 미만	6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3년 이상 ~ 4년 미만	8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4년 이상 ~ 5년 미만	10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5년 이상 ~ 6년 미만	12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5년 이상	32	
② 부양가족수	35	0명	5	4명	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민등록표등본 초본</li> <li>■ 가족관계증명서 ※ 청약신청자 본인은 부양가족수에서 제외</li> <li>■ 만18세 이상 성년자녀 부양가족인정 신청 시 추가확인서류 (1) 만18세 이상 ~ 만30세 미만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2) 만30세 이상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li> </ul>
		1명	10	5명	30	
		2명	15	6명 이상	35	
		3명	20			
③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17	6개월 미만	1	8년 이상 ~ 9년 미만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약통장 (인터넷 청약 시에 자동 계산됨)</li> </ul>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11	
		1년 이상 ~ 2년 미만	3	10년 이상 ~ 11년 미만	12	
		2년 이상 ~ 3년 미만	4	11년 이상 ~ 12년 미만	13	
		3년 이상 ~ 4년 미만	5	12년 이상 ~ 13년 미만	14	
		4년 이상 ~ 5년 미만	6	13년 이상 ~ 14년 미만	15	
		5년 이상 ~ 6년 미만	7	14년 이상 ~ 15년 미만	16	
6년 이상 ~ 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7년 이상 ~ 8년 미만	9		
--	---------------	---	--	--

※ 본인 청약기점 점수 = ① + ② + ③

※ 제28조제6항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2년 이내에 가점제를 적용받아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제1순위에서 가점제의 적용 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추첨제의 적용 대상자에 포함됩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53조

■ 검색대상 :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

■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사항 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등

■ 주택처분 기준일(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처리일
- 2의2. 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 2의3. 제2조제7호다목에 따른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 가. 분양권등의 매매 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 나. 분양권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봄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6.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신청자 제외)
  - 가점제의 부양가족 인정 여부 판단시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함.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남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중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9.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소형·저가주택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10.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한다)

※ 분양권 주택 소유 판단 예시(경쟁 발생여부는 최초 접수경쟁률로 판단합니다.)

- 청약접수결과 경쟁 발생 : 정당계약자 및 잔여세대 추가 계약자 모두 주택소유
- 청약접수결과 미달 발생 : 정당계약자 주택소유, 잔여세대 추가계약자 주택 미소유(단, 정당계약을 포기하고 잔여세대로 계약하는 경우 주택소유)

구 분	공급세대	접 수	정당당첨자 계약 ②	잔여세대		잔여세대 추가계약 ①	주택소유 판단
				미분양(가)	미계약(나)		
A유형(타입)	100	200(경쟁)	100	X	X	-	② 주택소유
B유형(타입)	100	200(경쟁)	80	X	20	20	② 주택소유   (나) 주택소유
C유형(타입)	100	50(미달)	30	50	20	70*	② 주택소유   (가), (나) 주택소유 아님
D유형(타입)	100	50(미달)	50	50	X	50*	② 주택소유   (가) 주택소유 아님

① 사업주제 선착순 모집에 의한 계약 / ② 정당당첨자 계약은 모두 주택소유로 봄.

\* 경쟁 미발생으로 미달된 경우 정당당첨자가 계약포기 후 미분양분이나 미계약분을 계약할 경우 주택소유로 봄.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7조의3(불법전매 등으로 계약 취소된 주택의 재공급)에 따른 계약취소 물량을 재공급 받는 경우에는 모두 주택소유로 간주함.

- 계약해지로 인한 재공급 분양권도 주택소유로 간주

11. 임차인으로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사람이 임차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그 주택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주택가격이 1억5천만원(수도권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주택가격의 산정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가목2)를 준용한다.

나.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 ■ 소형·저가주택 1호 또는 1세대만을 보유한 경우의 특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7의3 및 별표1 제1호가목2)

• “소형·저가주택 등”이란 전용면적 60㎡이하로, 주택가격이 1억원(수도권은 1억6천만원)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1주택(소형·저가주택) 소유에 대해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분은 소형·저가주택 보유기간을 무주택기간으로 인정됩니다.

① 현재 소형·저가주택 소유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소형·저가주택 1호 또는 1세대만을 보유한 경우

② 현재 무주택자 : 종전에 소형·저가주택을 처분한 후 계속 무주택자로 있는 경우

• 해당 소형·저가주택의 보유기간도 무주택으로 간주합니다.

• 소형·저가주택 공시가격 적용 기준 : 소형·저가주택등의 가격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 중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 공시가격에 따름.

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다) 분양권 등의 경우 :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한다)

IV

신청일정 및 장소, 구비서류

■ 신청일정 및 장소

구분	신청대상자	신청일시	신청방법	신청장소
특별공급	일반(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2024.03.04(월) (청약Home 인터넷 : 09:00~17:30) (사업주체 견본주택 : 10:00~14:00)	• 인터넷 청약 (PC 또는 스마트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li> <li>- PC : www.applyhome.co.kr</li> <li>- 스마트폰앱</li> <li>사업주체 견본주택(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동 1364-7번지)</li> </ul>
일반공급	1순위	2024.03.05(화) 09:00~17: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li> <li>- PC : www.applyhome.co.kr</li> <li>- 스마트폰앱</li> </ul>
	2순위	2024.03.06(수) 09:00~17: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청약통장 가입은행 창구</li> </ul>

※ 스마트폰 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스마트폰 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동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거나,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KB국민인증서 또는 토스인증서 또는 신한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이 '견본주택 방문 신청'에서 인터넷(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청약 신청'으로 변경되었으며, 특별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견본주택 방문접수(은행창구 접수 불가) 허용됩니다. (방문 접수시간 : 10:00~14:00)

※ 일반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나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에서 청약이 가능합니다.

(창구 접수시간 : 09:00~16:00. 단, 은행 영업점별 업무 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시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체결 시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주택공급 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을 대조한 후 청약신청 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할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취소 및 부적격 결과에 대해서는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으며, 당첨 취소 세대는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인터넷 청약서비스 이용방법 및 절차 안내 (해당순위 청약신청일 09:00~17:30)

※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현재 해당 청약순위가 발생하신 분은 ①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거나, ②금융인증서, ③네이버인증서, ④KB국민인증서 또는 ⑤토스인증서 또는 ⑥신한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한국부동산원(모든 은행의 청약통장 가입자)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p><b>[PC 청약시]</b>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접속 ⇒ 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p> <p><b>[스마트폰 청약시]</b> 스마트폰앱(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접속 ⇒ 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p> <p>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운영하는 "공고단지 청약연습"과 "청약가상체험"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p> <p>- 청약홈에서는 청약자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아래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청약에 제한은 없습니다.</p> <p>① [마이데이터('청약도움e') 서비스] 청약신청 단계에서 본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 시, 주민등록표등·초본 등 행정정보를 수신하여 세대주 여부 및 해당지역 거주기간 등을 확인하여 드리는 서비스입니다. (선택사항이며, 청약신청 당일 통신망 연결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 및 연계 기관(정보 보유기관)의 상황 등에 따라 서비스 제공되지 않을 수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청약신청」⇒「APT청약신청」⇒「청약홈 마이데이터('청약도움e') 서비스 팝업」⇒「본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 시」. 단, 본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를 거부하더라도 기존과 동일한 절차대로 신청자가 직접 해당 자격을 판단하여 입력 가능</li> </ul> <p>② [공고단지 청약연습] 공고일 다음날부터 일반공급 청약신청 전날까지 세대원을 등록하고, 해당 세대원(성년자에 한함)의 개인정보 동의가 완료되면, 실제 청약하고자 하는 모집공고에 대한 신청자 및 세대원의 청약자격(주택소유 및 각종 청약제한사실)을 미리 알아볼 수 있어, 부적격자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지원합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세대원 등록방법 : 「청약자격확인」⇒「세대구성원 등록/조회」및「세대구성원 동의」</li> </ul>

· 청약연습방법 : 「공고단지 청약연습」⇒「공고단지 청약연습 신청」. 단, 세대구성원 등록 생략 시 신청자 본인에 대해서만 청약자격 검증

※ 상기 접수시간(17:30)은 청약접수 완료 기준으로 청약 신청 진행 중이라도 접수 완료하지 않고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신청 시 해당 은행에서는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없이 청약 신청자가 기재한 사항만으로 청약접수를 받으며,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하여야 함.

■ 고령자, 장애인 등 정보취약자 일반공급 은행창구 청약(해당순위 청약신청일 09:00 ~ 16:00)

※ 일반공급은 인터넷 청약 신청이 원칙이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을 제외하고는 은행창구에서의 청약접수는 불가합니다.

구 분	구비사항			
일반 공급	본인 신청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택공급신청서(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li> <li>·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 통장</li> <li>· 예금인장 또는 본인 서명</li> </ul>		
	제3자 대리신청 시 추가사항 (배우자 포함)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함		
		<table border="1"> <thead> <tr> <th>인감증명 방식</th> <th>본인서명확인 방식</th> </tr> </thead> <tbody> <tr>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li> <li>-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li> <li>-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li> <li>-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li> <li>※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li> </ul> </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약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 1통</li> <li>- 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li> <li>-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li> <li>※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li> </ul> </td> </tr> </tbody> </table>	인감증명 방식	본인서명확인 방식
인감증명 방식	본인서명확인 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li> <li>-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li> <li>-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li> <li>-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li> <li>※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약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 1통</li> <li>- 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li> <li>-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li> <li>※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li> </ul>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또는 청약자격 전산등록 기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단,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서류 제출)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산일 산정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람.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음.

※ 주택공급 신청서의 단말기 「(전산)인지란」의 인자된 내용과 주택공급신청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고, 동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일 내로 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 정정 신청을 해야 함.

※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 날인 없이 신청인[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는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며,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해야 함.

■ 특별공급 구비서류 당첨자 자격검증 서류안내(건본주택 방문 청약 신청자는 청약 신청 시에 제출하며, 인터넷청약 신청자는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에 한해 당첨자 발표일 이후 계약체결 전 서류 제출기간에 제출)

※ 하기 모든 증명서류(신청 시 구비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건본주택에서는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합니다.

※ 주민등록표등본은 과거 주소 변동 사항 및 변동사유, 세대 구성일 및 사유, 발생일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된 것이어야 합니다.

※ 특별공급은 인터넷 청약 신청이 원칙으로, 인터넷신청 청약자에 한하여 하기 제 증명서류는 계약체결 전 서류 제출 기간에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 신청 당첨으로 인한 당첨 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특별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나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건본주택 방문접수(은행창구 접수 불가)가 허용됩니다.

구 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공통서류 (기관추천 특별공급 포함)	○		신분증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2020.12.21. 이후 신규 발급분은 제외 / 2020.12.21. 이후 신규발급 여권은 무인발급기에서 여권정보증명서를 발급받아 여권과 함께 제출)</li> <li>※ 재외동포 : 국내거소사실신고증 /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li> </ul>
	○		주민등록표등본(전체)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과거주소변동사항,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상세”로 발급</li> </ul>
	○		주민등록표초본(전체)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과거의 주소변동사항(인정받고자하는 기간포함) 및 세대주 성명, 관계 등 “상세”로 발급</li> </ul>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li> </ul>
	○		인감증명서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용도 : 주택공급신청용 / 인감증명서(본인발급용)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대리인 접수 및 계약불가</li> </ul>



	○	인감도장	본인	(본인발급분에 한해 가능하며, 대리발급분은 절대 불가함), 서명인증서(외국인에 한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자는 본인 서명 (※대리인 위임불가)</li> </ul>
	○	청약통장순위(가입)확인서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청약Home 홈페이지에서 청약통장순위(가입)확인서 발급(장애인, 국가유공자 제외)</li> <li>건본주택 방문청약 접수시(인터넷 청약의 경우 미제출)</li> </ul>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내거주기간 확인 ※ 세대원 중 청약자만 생업상(단신부임) 해외 체류(90일 초과)</li> </ul>
	○	단신부임 입증서류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해 세대원 중 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자만 해외에 체류(90일 초과)하고 있는 경우</li> <li>- 국내기업 · 기관 소속 해외 주재원 및 출장자 : 파견 및 출장명령서 등</li> <li>- 해외 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 : 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 근로 관련 서류, 취업, 사업비자 발급내역</li> </ul>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해당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청약자 단신부임 제외사항] :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li> <li>- 청약자가 해외에 체류 중인 기간 세대원 및 자녀 중 한명이라도 해외 체류기간이 입주자모집공고일(24.02.23.) 기준 현재 계속 하여 90일을 초과한 경우 단신부임 불인정</li> <li>[직계존속 부양가족 제외사항]</li> <li>-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24.02.23.)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li> <li>[직계비속 부양가족 제외사항]</li> <li>- 만30세 미만 미혼 자녀 : 입주자모집공고일(24.02.23.)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중인 경우</li> <li>- 만30세 이상 미혼 자녀 : 입주자모집공고일(24.02.23.)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li> <li>- 기록대조일 : 출생 생년월일 ~ 입주자모집공고일(24.02.23.)로 지정하여 발급</li> </ul>
	○	복무확인서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입주자모집공고일(24.02.23.) 현재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자격으로 신청한 경우</li> </ul>
	○	주민등록표등본(전체)	배우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제출 (상기 등본 발급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li> </ul>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주민등록표초본(전체)	피부양 직계존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민등록표상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표등본상 등재 여부가 확인 되지 않는 경우(3년 이상의 주소 변동사항을 포함하여 발급) 세대주 성명, 관계 "상세"로 발급</li> </ul>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배우자 전혼 자녀가 본인 주민등록표상에 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3세대 이상 세대구성 시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포함된 경우</li> </ul>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입양한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li> </ul>
	○	한부모가족증명서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급신청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한부모 가족으로 정하여 5년이 경과한 경우</li> </ul>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 또는 자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만 19세 이전에 혼인하여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상세"로 발급)</li> <li>만 18세 이상~만19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를 미혼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상세"로 발급)</li> </ul>
	○	임신진단서 또는 출생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임신한 태아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li> <li>-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임신진단서 외 불가]</li> <li>-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li> </ul>
신혼부부 특별공급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본인 및 배우자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li> </ul>
	○	임신진단서 또는 출생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임신한 태아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li> <li>-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임신진단서 외 불가]</li> <li>-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li> </ul>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입양한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li> </ul>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재혼가정의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 한 경우(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함)</li> <li>-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전부 공개 "상세" 발급</li> </ul>
	○	주민등록표초본	직계존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본인(배우자 포함)의 주민등록표등본상 직계존속(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등재된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등재된 경우 소득산정 시 가구원수 포함)</li> </ul>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본인 및 만19세이상 세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세대주 및 만19세이상 세대원 전원이 표시되어야 하며, 표시되지 않은 세대원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도 제출</li> <li>발급처 : 국민건강보험공단(성명,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과거이력 포함하여 발급)</li> </ul>
	○	소득증빙서류	본인 및 만19세이상 세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세대주 및 만 19세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분리된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원을 포함)</li> <li>「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 제2호의 3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함</li> </ul>
	○	비사업자 확인각서	본인 및 만19세이상 세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비사업자의 경우(근로자 및 사업자가 아닌 경우)</li> <li>건본주택 비치</li> </ul>
	○	부동산 소유현황	본인 및 세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는 본인과 세대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모두 제출</li> <li>(발급기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 &gt; 등기열람/발급 &gt; 부동산 &gt; “부동산 소유 현황”(소유 현황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결과)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li> <li>* 소유현황이 없는 경우 : ①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소유현황 조회 결과 ②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전국 자치단체로 조회)</li> </ul>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주민등록표초본(전체)	피부양 직계존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민등록표등본상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 등재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3년 이상의 주소변동 사항을 포함하여 발급)</li> <li>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변동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li> </ul>
	○	주민등록표초본(전체)	피부양 직계비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만30세 이상 미혼인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모집공고일로부터 1년 이상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 등재)</li> <li>주민등록번호, 과거 주소변동 사항(1년이상),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하여 발급</li> <li>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변동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li> </ul>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피부양 직계존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민등록표등본상에 피부양 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거나, 피부양 직계존속이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li> <li>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li> </ul>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li> </ul>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 또는 자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만 30세 미만 기혼자가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li> <li>만 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li> <li>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li> </ul>
생애최초 특별공급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인 경우</li> <li>본인 및 배우자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하여 “상세”로 발급</li> </ul>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직계비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고일 이후 현재 혼인 중이 아닌 분이 동일등본상 만 18세 이상의 자녀를 미혼인 자녀로 인정받고자 할 경우</li> </ul>
	○	주민등록표초본	직계존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본인(배우자 포함)의 주민등록표등본상 직계존속(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등재된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등재된 경우 소득산정 시 가구원수 포함)</li> <li>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li> </ul>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li> </ul>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본인 및 만19세이상 세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청약신청자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모두 제출하여야 하며, 표시되지 않은 세대원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도 제출</li> <li>발급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모집공고일 이후 변동사항 포함하여 발급</li> </ul>
	○	소득세납부 입증서류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당첨자 본인의 소득세 납부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의 5개년도 서류</li> <li>* 개월 수(60개월)가 아니라 연도별 횟수를 의미하며 1년의 기간 동안 12개월 이하로 근무하여 납부한 경우도 1개년의 실적으로 인정, 비연속적인 경우도 합산하여 인정 가능합니다.</li> </ul>
	○	소득 증빙서류	본인 및 만19세이상 세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청약신청자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 서류 (단, 배우자 분리세대는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된 세대주의 성년인 직계존비속의 소득입증서류)</li> </ul>
	○	비사업자 확인각서	해당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비사업자의 경우(근로자 및 사업자가 아닌 경우)</li> <li>건본주택 비치</li> </ul>
○	부동산 소유현황	본인 및 세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는 본인과 세대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모두 제출</li> <li>(발급기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 &gt; 등기열람/발급 &gt; 부동산 &gt; “부동산 소유 현황”(소유</li> </ul>	

					현황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결과)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 소유현황이 없는 경우 : ①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소유현황 조회 결과 ②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전국 자치단체로 조회)
부적격 통보 받은자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해당 주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소유권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li> <li>미등기 주택의 경우 건축물관리대장</li> </ul>
		○	무허가건물확인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관할 지자체에서 발급한 무주택임을 확인하는 공문</li> </ul>
		○	건축물철거명실신고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관할 지자체에서 발급한 철거 및 명실을 확인하는 공문</li> </ul>
		○	기타 주주택자 증명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택공시가격증명원, 실거래신고서, 미분양 주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li> </ul>
		○	당첨사실 소명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해당기관의 당첨사실 무효확인서 등</li> </ul>
제3자 대리인 신청시 추가사항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청약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본인 발급 인감증명서에 한함(용도 : 아파트 서류접수 위임용)</li> </ul>
	○		신분증	대리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li> </ul>

■ **신혼부부 ·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표1]**

해당자격		소득입증 제출서류	발급처
근로자	일반근로자	① 재직증명서(*직인날인, 팩스불가) ※ 출산휴가 및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 출산휴가, 휴직기간을 명시하여 발급 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원본(직인날인) 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 ※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전년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직인날인, '매월신고 납부대상자 확인'으로 발급) 또는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해당직장</li> <li>세무서 홈택스</li> </ul>
	금년도 신규취업자 또는 금년도 전직자	① 재직증명서(*직인날인, 팩스불가) ② 금년도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직인날인)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증명서(직인날인) ③ 직장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해당직장</li> </ul>
	전년도 전직자	① 재직증명서(*직인날인, 팩스불가) ② 전년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증명서(직인날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해당직장</li> </ul>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 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상 직장가입자만 해당)	① 재직증명서(*직인날인, 팩스불가) ② 총급여액 및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직인날인) 또는 소득금액증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해당직장</li> </ul>
자영업자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면세사업자	①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본)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세무서(홈택스)</li> </ul>
	법인대표자	① 전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근로소득 확인) 또는 소득금액증명 ② 전년도 재무제표 및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배당소득 확인) ③ 재직증명서 ④ 사업자등록증 사본 ※ 연말정산 등으로 인해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기 전에 특별공급을 신청하는 경우 '전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을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세무서(홈택스)</li> <li>해당직장</li> <li>등기소</li> </ul>

전년도 / 금년도 신규사업자	① [국민연금 가입자] :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및 국민연금가입자증명(원본) (국민연금의 경우 공고일 이전 가입만 인정) ※ 기준소득월액으로 월평균 소득을 산정 ② [국민연금 미가입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예정)신고서(부분)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 세무서(홈텍스) - 국민연금관리공단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① 전년도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직인날인) 원본,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 또는 당해 회사의 간이지급명세서(직인날인) ② 위촉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직인날인, 팩스불가)	- 해당직장 - 세무서(홈텍스)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공급신청자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이면 해당세대 전체가 기준소득 이하인 것으로 간주	- 행정복지센터
일용근로소득자	①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또는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직인날인) ②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직인날인, 팩스불가)	- 해당직장 - 세무서(홈텍스) - 국민연금공단
무직자	① 비사업자 확인 각서(건본주택 비치) ② 소득이 없는 경우 사실증명원(신고사실 없음)	- 건본주택 - 세무서(홈텍스)

※ 연말정산 등으로 인해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이 발급되기 전에 특별공급을 신청하는 경우, 근로자와 자영업자 등 소득은 전전년도(22년도) 소득으로 제출

※ 상기 제출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모든 발급 서류는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등을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하여야 합니다.

※ 해당 직장에서 발급받는 서류에는 사업자의 직인 날인 필수이며, 상기 제출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상기 서류 외 당첨 자격 확인을 위하여 사업 주체에서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기타 본 공고상에 표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 따릅니다.

※ 군 복무 중으로 건강보험증이 없는 경우 : 군 복무확인서와 건강보험 자격 득실확인서를 징구하고 이 경우 군 복무자(직업군인 제외)는 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군 복무자 및 배우자의 소득을 파악하여 월평균 소득을 산정합니다.

※ 신청자 명의로 사업자 (법인)이 등록되어 있으면서 본인이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인 경우 : 소득금액 증명서상의 사업소득이 법인인감이 날인된 소득증빙서류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근로소득 지급 조서 등)로 근로소득을 확인한 후 두 소득액을 합산하여 월평균 소득을 산정합니다.

※ 직원이 프리랜서이고 소득이 불규칙한 경우 : 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의 소득금액을 근무월수로 나누어 월평균 소득을 산정함.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 : 전년도 1월 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소득을 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 소득을 산정합니다.

※ 자영업자이면서 근로자인 경우 : 전년도 사업소득에 대한 월평균 소득과 근로소득에 대한 월평균 소득을 각각 산정하여 합산하되, 사업소득이 손실로 되어있으면 사업소득은 없는 것으로 하여 근로소득으로만 월평균 소득을 산정합니다.

### ■ 소득세 납부 입증서류[표2] (생애최초 특별공급)

해당자격		소득입증 제출서류	발급처
자격 입증 서류	근로자	① 재직증명서(직인날인)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③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① 해당직장 ② 건강보험공단 ③ 세무서
	자영업자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③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원	①, ③ 세무서 ② 건강보험공단
	근로자,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자	①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납부 내역 증명 포함) ※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분에 한함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① 해당직장 또는 세무서 ② 건강보험공단
소득세 납부 입증서류	과거 5개년도 소득세 납부증명서류로 아래에 해당하는 서류 중 하나 ① 소득금액증명원(근로자용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용) 및 납부내역증명서(종합소득세 납부자) ② 납세 사실 증명 (종합소득금액 증명 제출자에 한함) ③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 영수증 ④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일용근로자용 소득금액증명 및 납세사실증명	①, ② 세무서 ③ 해당직장 ④ 해당직장 또는 세무서	

※ 상기 제출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모든 발급 서류는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등을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하여야 합니다.

※ 해당 직장에서 발급받는 서류에는 사업자의 직인 날인 필수이며 상기 제출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상기 서류 외 당첨 자격 확인을 위하여 사업 주체에서 추가서류를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기타 본 공고상에 표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 따릅니다.

※ 자산보유기준(신혼부부 특별공급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구 분	자산보유기준	자산보유기준 세부내역													
부동산 (건물+토지)	3억3,100만원 이하	건축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li> </ul>												
			<table border="1"> <thead> <tr> <th colspan="2">건축물 종류</th> <th>지방세정 시가표준액</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주 택</td> <td>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td> <td>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td> </tr> <tr> <td>단독주택</td> <td>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td> </tr> <tr> <td colspan="2">주택 외</td> <td>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td> </tr> </tbody> </table>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주 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주택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주 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주택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 단, 아래 경우는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구·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대장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li> <li>- 「초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법」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li> <li>-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li> <li>- 중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li> </ul> </li> <li>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li> </ul>														

■ 입주자 선정 방법 및 동·호수 결정

구 분	선정방법
특별공급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한국부동산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생애최초특별공급, 다자녀특별공급, 신혼부부특별공급, 노부모부양특별공급, 기관추천특별공급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 추첨은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동·호수를 결정합니다.</li> <li>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li> <li>특별공급 입주자 선정 시 특별공급 접수종류 구분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주택형별 공급세대의 500%까지 추첨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주택형별 전체 신청자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60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li> <li>특별공급 신청자가 없거나 신청자가 공급세대수에 미달된 경우,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모집합니다.</li> <li>특별공급 입주자로 선정된 자 중 당첨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공급계약을 해약한 자가 있으면 소명기간이 지난 후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하여 공급합니다.</li> <li>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해당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li> <li>특별공급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자의 동·호와 미계약 동호는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됩니다.</li> </ul>
일반공급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한국부동산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각 순위별로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이 1순위는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2순위는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 추첨은 특별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동·호수를 결정합니다.</li> <li>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은 다음과 같으며, 가점제가 적용되는 전용면적의 1순위 청약자는 해당 순위에서 가점제(가점점수가 높은 순)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가점제 낙첨자에 한해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추첨제 대상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재선정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용면적 60㎡ 이하 : 일반공급 세대수의 40%를 가점제로, 나머지 60%는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제 우선공급* 적용</li> <li>-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 : 일반공급 세대수의 40%를 가점제로, 나머지 60%는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제 우선공급* 적용</li> </ul> </li> <li>*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광역시) 민영주택 추첨제 공급 시 무주택자 우선공급 :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주택수보다 추첨 대상자가 많은 경우, 다음 순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되는 주택수의 75% : 무주택세대구성원</li> <li>2. 나머지 25%의 주택(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 포함) :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li> <li>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공급한 후 남은 주택 : 1순위에 해당하는 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li> </o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일순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 중 경쟁이 있을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부산광역시 거주신청자가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거주신청자보다 우선합니다.</li> <li>• 입주자 선정 시 선순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b>600%</b>를 초과할 경우 차순위 접수분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li> <li>• <b>2019.12.0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b></li> <li>• <b>예비입주자 선정 시 주택형별로 일반공급 세대수의 500%를 아래와 같이 선정합니다.</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순위 : 일반공급 세대수의 500%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 등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가점이 높은 자를 앞 순번으로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점제가 적용되지 않는 주택인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li> </ul> </li> <li>- 2순위 :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공급세대수 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 등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추첨으로 선정</li> </ul> </li> <li>• 미계약 또는 계약해제 발생 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됨)</li> <li>• 예비입주자 선정 시 제출한 청약신청 서류 검토 결과, 가점점수가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재산정한 가점점수가 다음 순위 예비입주자의 점수를 초과한 경우에만 예비입주자 자격이 유지될 수 있으며, 다음 순번예비입주자 점수보다 같거나 낮은 경우에는 예비입주자에서 제외하여야 한다.</li> <li>•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로부터 18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한다) 당사 인터넷 홈페이지(<a href="http://더샵금정위버시티.com">http://더샵금정위버시티.com</a>)에 공개하며, 공개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며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 처리합니다.</li> </ul>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50조에 따라 특별공급도 인터넷청약(한국부동산원 청약Home)을 원칙으로 하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는 견본주택 방문접수가 가능합니다.</b></li> <li>• 인터넷 청약(한국부동산원 청약Home)의 경우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당첨자 공급계약 체결 전 사업주체로 제출하시기 바라며, 견본주택 방문접수 시에는 공급별 구비서류를 지참하여야 합니다.</li> <li>• 특별공급 방문접수는 견본주택에서만 가능하며 은행창구에서는 접수하지 않습니다.</li> <li>•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li> <li>• 특별공급 신청자가 일반공급에도 중복 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에 당첨된 경우 일반청약은 무효로 처리(특별공급에 예비입주자로 당첨된 경우에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에서 제외)하고, 특별공급 신청자가 타 유형의 특별공급에 중복 청약 시 둘 다 무효처리 됩니다.</li> <li>•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li> <li>• 청약 신청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li> <li>• 주택소유여부의 판단에 있어 공급신청 당시 입력 값(자료)으로 우선 입주자선정을 하고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주 및 세대원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li> <li>• 분양일정상 계약일 이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에는 아파트 당첨 및 계약이 임의 해지될 수 있으며, 계약금 납입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급이자 없이 원금만 환불하며, 당첨취소세대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li> <li>•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해당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li> <li>•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제8항에 따라 부적격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취소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 <b>당첨자발표일부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b> 다른 분양주택(민간 사전청약 및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li> <li>• 예비입주자(특별공급 및 일반공급)로 선정된 자는 본인의 연락처(주소, 전화번호)를 사업주체에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하지 않을 경우 연락처 및 주소 불명 등의 사유로 예비입주자 공급(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사업주체에서는 책임지지 않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li> <li>• 특별공급 예비입주자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입주자선정(동·호수 배정 및 계약)일정은 별도로 통보할 계획입니다.</li> <li>•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본 아파트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을 위한 추첨에도 참가할 수 없습니다. [예비입주자의 동·호수 배정일(당첨일)이 공급 신청한 다른 주택의 당첨자발표일보다 빠를 경우 다른 주택의 당첨이 무효 처리됨.] 또한, 추첨에 참가하여 계약을 체결한 후라도 추첨일 이전에 다른 주택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li> <li>•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중에서 최초 동·호수 배정 추첨에 참가하여 동호를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공급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되어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하고 예비입주자 및 그세대에 속한 자는 규제지역 내 청약시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li> <li>•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li> </ul>

### ■ 일정 및 계약장소

구 분	신청대상자	당첨자 및 동·호수/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계약체결
특별공급	일반(기관추천),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일시: 2024.03.13.(수)</li> <li>확인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a href="http://www.applyhome.co.kr">www.applyhome.co.kr</a>) 또는 스마트폰앱에서 개별조회</li> <li>*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KB국민인증서 또는 토스인증서 또는 신한인증서로 로그인 후 조회 가능</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일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4.03.25.(월)~2024.03.27.(수) (10:00~16:00)</li> </ul> </li> <li>장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더샵 금정위버시티 견본주택 (주소 :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29) (문의 : 051-864-3600)</li> </ul> </li> </ul>
일반공급	1순위 2순위		

※ 당첨자에 대한 동·호수는 한국부동산원에서 무작위 전산추첨을 통해 배정합니다.

※ 당첨자 명단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http://www.applyhome.co.kr))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셔야 하며 당첨자 및 동·호수 확인 시에는 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 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으로서 인터넷 청약이 불가하여 견본주택(특별공급) 또는 은행창구(일반공급) 등에 방문하여 청약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정보입력(주택명, 주택형, 성명, 생년월일 입력) 조회가 가능하나 정보 오입력 등의 경우 부정확한 내역이 조회될 수 있으므로 인증서를 발급받으신 분은 반드시 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정확한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청약신청 건에 대해서는 '정보입력에 의한 당첨내역 조회가 불가(당첨여부에 관계없이 '당첨내역이 없음'으로 표기됨)하오니 반드시 인증서로 로그인하시어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및 동·호수,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시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전화문의는 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 당첨자 명단은 상기 장소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전화문의는 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 인터넷, 휴대폰 문자 당첨자발표 서비스 이용 안내

- 본 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를 위해 제공하는 부가서비스이며 정확한 당첨여부는 당사 홈페이지([www.더샵금정위버시티.com](http://www.더샵금정위버시티.com))를 통해 재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 분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쏠 은행 청약자)	
이용기간	2024.03.13.(수) ~ 2024.03.22(금) (10일간)	
인터넷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a href="http://www.applyhome.co.kr">www.applyhome.co.kr</a>) 접속 → 청약당첨조회 → 당첨조회(최근10일)</li> <li>- 스마트폰앱 접속 → 청약당첨조회 → 당첨조회(10일간)</li> <li>※ 당첨조회(10일) 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마이페이지 &gt; 청약제한사항확인 또는 청약소통방 &gt; APT당첨사실조회를 통해 당첨내역 확인 가능</li> </ul>	
휴대폰 문자서비스	대상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신청시 휴대폰번호를 등록하신 분 중 당첨(예비)자
	제공일시	2024.03.13(수)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휴대폰 문자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한 부가서비스로서 정확한 당첨여부는 상기 발표일에 청약홈>청약당첨조회 및 당첨자 발표장소 등에서 본인이 반드시 재확인하여야 합니다.

## VI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자격 확인 서류 제출

### ■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제출 및 유의사항

<b>제출기한(특별공급 당첨자 포함)</b>	• 2024.03.14(목) ~ 2024.03.21(목) (10:00~16:00) (8일간)
<b>대 상</b>	• 특별공급, 일반공급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b>제출처</b>	• 더샵 금정위버시티 견본주택 / 주소 :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29
<b>유의사항</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별공급 예비입주자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의 서류제출도 해당 기간 내 동시 진행하며, 추첨 일정 등은 별도 통보 예정.</li> <li>• 특별공급, 일반공급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는 지정된 당첨자 서류제출 기간 내에 (예비)당첨자에 대한 주택 소유 실태 전산검색 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신청내역 등 적격 자격에 대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격확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계약체결일 계약 진행 불가함)</li> <li>• 모든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4.02.23(금))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이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li> <li>•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의 서류는 분양주체에서 6개월간 보관 후 일괄 파기합니다.</li> <li>• 소명자료 제출과 관련 사항은 해당자에게 별도 통보예정으로 청약신청자가 청약 신청 시 잘못된 정보 기재(연락처, 주소 등)로 해당 정보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당사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li>• 부적격 통보를 받거나 부적격 의심 사유가 있어 소명이 필요한 경우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소명에 필요한 서류를 소명기간 내 (계약 체결 이전)에 반드시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li> </ul>

- ※ 주택의 공급계약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제2항에 의거,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사실 공고일 (당첨자 발표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체결하도록 함에 따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2항에 의거 계약체결 이전에 당첨자 서류 제출기한 내에 견본주택에 방문하시어 아래 당첨자 서류를 제출하시고, 부적격 사항 및 적격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자격, 세대주, 해당 지역 거주요건, 주택 소유, 배우자 분리 세대 확인 등)
- ※ 서류 심사를 통하여 적격 여부를 확인받아 계약체결을 진행하여도 이후 부적격당첨자로 최종 판명될 경우에는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됨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 제출 가능 일정 및 시간대, 예약 방법 등 세류 제출 관련 세부 사항은 당첨자발표 후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별도로 공지될 예정입니다.
- ※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는 서류 제출기한 내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미제출한 당첨자의 경우 계약체결 시 진행이 늦어지거나 계약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서류를 제출하였지만, 계약체결 기간 내에 계약 체결하지 않을 경우 계약 포기로 간주합니다.
- ※ 신청 자격에 맞는 제 증명서류 (제출서류 참조)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서류가 상이할 경우 당첨을 취소하며, 부적격당첨에 따른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 당첨자가 신청한 내용과 당첨 후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다를 경우 별도의 보완자료 등으로 당첨 자격을 소명하여야 하며, 제출서류로 신청 자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소명 자료 관련 추가서류 제출 요구 시 반드시 이에 응해야 합니다.
- ※ 소명자료 제출 관련 사항은 개별적으로 해당자에게 별도 통보 예정입니다.
- ※ 사업 주체는 접수된 서류를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로 간주합니다. (배우자, 직계존비속도 대리 신청자로 봄)
- ※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 및 제52조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된 자 (예비입주대상자 포함)는 계약체결 이전에 사업 주체가 정한 기간에 신청 자격별 구비 서류를 지참하여 견본주택을 방문, 청약내역과 대조, 검증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 입주대상자 자격검증서류 제출 기간 이내 방문이 어려운 당첨자의 경우 견본주택으로 통지 후 계약체결 전 자격검증서류 일체 및 계약체결 시 구비사항을 준비하시어 계약체결을 하시기 바랍니다. 단, 계약체결 시 자격검증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입주대상자 자격검정 절차로 계약 진행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신청내용과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다를 경우 별도의 보완자료 등으로 당첨 자격을 정해진 기간내 (7일 내)에 소명하여야 하며, 미소명시에는 부적격자임을 확인하여야 최종 부적격 처리되며, 서류 미제출로 인해 미확인 시 계약 포기로 간주하여 당첨자로 분류되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 특별공급 당첨자(예비입주자)의 경우 특별공급 구비서류 및 당첨자 자격검증 서류안내에 따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일반공급 당첨자(예비입주자) 제출 서류

구 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공동 서류	○		주민등록표등본(상세)	본인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과거 주소 변동사항 및 사유, 세대구성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 포함"으로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상세)	본인	•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과거의 주소 변동사항(인정받고자하는 기간포함) 및 과거의 주소 변동사항 중 세대주 성명, 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		인감증명서	본인	•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용도 : 아파트 분양계약용 (본인 발급용) ※ 본인서명사실 확인서는 대리인 접수 및 계약 불가, 서명인증서(외국인에 한함)
	○		인감도장	본인	• 인감도장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자는 본인서명 ※ 대리인 위임 불가



	○	신분증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2020.12.21. 이후 신규 발급분은 제외 / 2020.12.21. 이후 신규발급 여권은 무인발급기에서 여권정보증명서를 발급받아 여권과 함께 제출)</li> <li>※ 재외동포 : 국내거소사실신고증 /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li> </ul>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포함)를 표기하여 "상세"로 발급</li> <li>- 미혼, 이혼, 사별, 단독세대, 배우자 분리세대 등 배우자 유무 확인</li> </ul>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내 거주기간 확인 ※ 기록대조일 : 생년월일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 설정하여 발급</li> </ul>
	○	단신부임 입증서류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해 세대원 중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자만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표3 참조)</li> <li>- 국내기업·기관 소속 해외 주재원 및 출장자 : 파견 및 출장명령서 등</li> <li>- 해외 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 : 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 근로 관련 서류, 취업, 사업비자 발급내역</li> </ul>
	○	복무확인서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이 입주자저촉에 가입하고 거주하는 지역과 다른 주택건설지역의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li> <li>※ 군 복무 기간 (10년 이상) 명시</li> </ul>
	○	주민등록표등본(상세)	배우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민등록표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세대원 포함)을 표기하여 "상세"로 발급</li> </ul>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청약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되어있거나, 분리된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되어 있을 경우</li> <li>재혼가정에서 배우자의 전혼자녀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상세"로 발급(※ 공급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시만 인정)</li> </ul>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급신청자가 단신부임을 확인해야 하는 경우</li> <li>※ 기록대조일 : 생년월일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 설정하여 발급</li> <li>※ 공급신청자가 해외에 체류 중인 기간 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동일한 세대원 또는 미성년자녀 중 한명이라도 해외체류 기간이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경우 단신부임 불인정</li> </ul>
일반공급 (가점제 당첨자 및 예비입주 자)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상세"로 발급</li> <li>만 30세 미만 기혼자가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li> </ul>
	○	주민등록표초본(전체)	피부양 직계존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 (3년 이상의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발급)</li> </ul>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피부양 직계존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본인의 주민등록표상에 피부양 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거나 피부양 직계존속이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상세"로 발급</li> </ul>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피부양 직계존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으려는 경우</li> <li>&lt;아래에 해당되는 경우 부양가족에서 제외&gt;</li> <li>*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li> <li>※ 기록대조일 : 생년월일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 설정하여 발급</li> </ul>
	○	주민등록표초본(전체)	피부양 직계비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만30세 이상 미혼인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1년 이상 부양)</li> <li>주민등록번호, 과거 주소변동 사항(1년 이상),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하여 발급</li> </ul>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피부양 직계비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으려는 경우</li> <li>&lt;아래에 해당되는 경우 부양가족에서 제외&gt;</li> <li>* 만30세 미만 미혼 자녀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li> <li>* 만30세 이상 미혼 자녀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li> <li>※ 기록대조일 : 생년월일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 설정하여 발급</li> </ul>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피부양 직계비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만 18세 이상의 미혼인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li> </ul>
<b>상기 구비서류 외 추가 구비서류</b>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인으로 간주합니다.)				
제3자 대리인 접수시 추가사항	○	인감증명서	청약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용도 : 주택공급신청용(청약자 본인 발급용)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시 대리불가 단, 외국인의 경우 국적지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 이나 이에관한 공정증서(본인발급용)</li> </ul>
	○	인감도장	청약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외국인이 인준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 시 제출 생략</li> <li>인감증명서와 대조 必</li> </ul>
	○	위임장	청약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건본주택 비치</li> </ul>
	○	신분증 및 인장	대리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li> <li>(20.12.21 이후 신규발급 여권은 무인발급기에서 여권정보증명서를 발급받아 본인 여권과 함께 제출)</li> </ul>
부적격 통보	○	해당 주택에 대한 소명자료	해당주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택 및 '분양권 등' 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에 따른 해당 필요서류 제출</li> <li>건축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가옥대장등본 포함)</li> </ul>

받은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무허가건물확인서 또는 철거예정증명서</li> <li>• '소형·저가주택 등'임을 증명하는 서류(주택공시가격 증명원 등)</li> <li>•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li> <li>• 피해확인서 (HUG 안심전세포털에서 발급)</li> </ul>
		○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해당주택

※ 상기 모든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견본주택에서는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된 경우에 한해 접수합니다.

※ 공급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 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공급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니 세대주 기간 산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 구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표 등본 발급 시 기재 (포함)되어야 할 내용 : 세대 구성 사유, 현 세대원의 세대주와의 관계, 현 세대원의 전입일 / 변동일 / 변동 사유, 교부 대상자 외에 다른 세대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 주민등록표 초본 발급 시 기재 (포함)되어야 할 내용 : 개인 인적 사항 변경 내용, 과거의 주소변동 사항 (전체 포함), 과거의 주소변동 사항 중 세대주의 성명과 세대주와의 관계

※ 자격 검증을 위해 상기 서류 외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단신부임(해외 근무자) 입증 서류[표3](※ 계약체결 전 제출, '단신 부임' 청약 신청 및 당첨자는 상기 공통서류 외 추가 제출)

구 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단신부임 (해외 근무자)	○		해외 체류 증빙 서류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내기업 및 기관소속 해외 주재원 및 출장자인 경우 : 파견 및 출장명령서</li> <li>• 해외 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인 경우 : 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 또는 근로 관련 서류</li> <li>• 취업 또는 사업비자 발급내용 등 근로자가 아닌 경우 (※ 반드시 제출) : ① 비자 발급내역 ② 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li> <li>※ 유학, 연수, 관광, 단순체류자의 경우 생업 사정을 인정할 수 없으며, 생업 관련 증빙서류 불가능한 자 또한 생업 사정 불인정</li> </ul>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본인 및 세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배우자 및 세대원이 생업 등으로 해외 체류 여부 확인 (출생연도부터 현재까지 기간 지정으로 발급)</li> </ul>
		○	비자 발급 내역 및 재학증명서 등	본인 및 세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권 분실 및 재발급으로 체류 국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li> <li>※ 비자 발급 내역, 재학증명서 등 체류 국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통해 소명하여야 하며, 세대원이 당첨자(청약신청자)와 동일한 국가에 체류하지 않았다는 사실 (계속하여 90일을 초과)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 단신 부임 인정 불가</li> </ul>

Ⅶ

**계약 체결 절차 및 유의사항**

■ 계약 체결 일정 및 장소

구 분	당첨자 계약 기간	계약장소
당첨자 계약 체결 (특별공급 / 일반공급)	2024.03.25(월) ~ 2024.03.27(수) (3일간, 10:00 ~ 16:00)	더샵 금정위버시티 견본주택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29)

- ※ 당첨자는 당첨 동호수의 공급금액 확인 후 지정된 분양대금계좌로 계약금을 납부하고 구비서류를 준비하시어 반드시 지정된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자의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함)
- ※ 계약체결 이후라도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하지 못하면 계약은 취소됩니다.

■ 계약 체결 시 구비서류

구 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본인 계약 시	○		계약금 입금 증빙서류	계약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무통장 입금 영수증 또는 입금 확인증</li> <li>• 계약금 현장수납 불가</li> </ul>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계약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인 발급분에 한해 가능하며, 대리발급분은 절대 불가함, 서명인증서(외국인에 한함)</li> <li>•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대리인 접수 및 계약 불가</li> <li>• <b>자격검증 서류 제출시 제출한 경우 제외</b></li> </ul>
	○		인감도장	계약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외국인이 서명인증서를 제출한 경우 본인 서명</li> </ul>
	○		신분증	계약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20.12.21.이후 신규발급 여권은 무인발급기에서 여권정보증명서를 발급받아 본인 여권과 함께 제출) 등</li> <li>※ 재외동포 : 국내거소사실신고증 /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li> </ul>
	○		정부수입인지(종이문서용)	계약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지세를 사업주체와 분양계약자가 1/2씩 균등 부담(세부사항 홈페이지 참조)</li> <li>• 기획재정부에서 운영하는 '전자수입인지(e-revenuestamp.or.kr)' 사이트에서 구매 및 납부증명서 출력 or 우체국 및 시중은행에서 구매</li> </ul>
	○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계약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홈페이지 서식 게시</li> </ul>
		○	당첨유형별 입주 대상자 자격 검증 서류 일체	해당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격 검증 서류 제출 기한 내 제출한 서류는 제외</li> </ul>
		○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요구하 는 서류(소명자료)	해당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주체가 적격여부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자료</li> </ul>

※ 본인 이외에는 모두(배우자, 직계 존비속 등 포함) 대리 계약 신청자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서류 외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합니다.

대리인 계약 시 추가 구비 서류	○		인감증명서(위임용)	계약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감증명서 용도 : 아파트 계약 위임용</li> <li>• 본인발급용에 한해 가능하며, 대리발급분은 절대 불가함</li> <li>※ <b>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 신청 / 대리 계약 불가함</b></li> </ul>
	○		인감도장	계약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약자 본인의 인감증명서와 일치하는 인감도장</li> <li>•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 시는 제출 생략</li> </ul>
	○		신분증 및 인장	대리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20.12.21.이후 신규발급 여권은 무인발급기에서 여권정보증명서를 발급받아 본인 여권과 함께 제출) 등</li> <li>※ 재외동포 : 국내거소사실신고증 /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li> </ul>
	○		위임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li> <li>• 견본주택 비치</li> </ul>

※ 상기 제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단,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외국인은 공급신청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금 입금 영수증은 반드시 당첨자 본인이 입금한 영수증이어야 하며, 타인 명의 등 계약금 납부 주체가 당첨자와 상이하거나 불분명하게 입금된 경우에는 계약금 미납 및 계약 미체결로 처리됩니다.

## ■ 계약 체결 조건 및 유의사항

- 본 아파트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계약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로 전산 관리합니다.
- 부적격 당첨자로 통보된 자는 계약체결이 불가하며, 부적격당첨 소명 기간 내에 소명을 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 당첨되었으나 계약체결을 하지 않은 분의 청약통장은 계좌 부활되지 않습니다.
- 계약금은 지정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여야 합니다. (현장수납 불가)
- **이중 당첨자 및 부적격 당첨자 처리 및 계약 취소에 관한 사항**-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4호
  - **입주대상자 자격 확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에 따라 당첨자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 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된 자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즉시 통보하며, 통보한 날로부터 7일 내에 부적격 사항에 대한 소명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부적격 사항 소명 안내** : 관련기관의 전산시스템과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시 입주대상자의 현황이 상이할 수 있으며, 부적격 사항 및 적격여부 확인이 필요한 자료 통보된 경우 소명기간(7일) 내에 서류 확인등을 통하여 소명을 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 **계약체결 이후 관련 법령 등의 처리 및 검증으로 인한 당첨 및 계약취소 확인** : 계약체결 후이라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되고, 공급계약을 취소하며 당첨자(부적격당첨자)로 관리됩니다.
    - ① 1순위 당첨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의 소유여부가 신청한 사실과 다른 경우 - 주택 및 '분양권 등' 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참조
    - ② 특별공급 당첨자 중 과거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 자격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
    - ③ 가점제의 적용 대상자가 아닌 자가 가점제를 적용받아 당첨된 경우
    - ④ 위장전입,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 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경우
    - ⑤ 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7일)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 단, 부적격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 사유가 고의성 없는 단순 착오기재가 사실임을 증명하는 경우 당사 견본주택에 방문하여 '계좌부활 요청서(당사 비치)' 작성 시 청약통장 재사용이 가능하며 당첨이 취소된 자는 공급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본 아파트의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민간 사전청약을 포함)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상기 기준에 의거 주택소유 여부 판단 시 당첨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전원 포함)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전원의 주택소유 사실을 포함하며, 특별공급 및 1순위자(분리세대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는 국토교통부에 무주택 여부를 검색하여 부적격 당첨자를 판명합니다.
- ※ 상기 기준에 의거 주택소유 여부 판단 시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 구성원 전원, 일반공급은 당첨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전원 포함)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전원의 주택 소유 사실을 포함하며, 국토교통부의 무주택 여부를 검색하여 부적격 당첨자를 판명합니다.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 **당첨 및 계약 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 될 수 있으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당첨취소 및 고발조치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부정당첨자로 관리합니다.
- 주민등록법령 위반 및 청약관련요금 등을 타인명의로 가입하거나 가입한 자의 청약관련요금 등을 사실상 양도받아 공급신청 및 계약 시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계약은 취소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부정당첨자로 관리합니다.
- 신청 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된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기 체결된 계약은 취소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부적격당첨자로 관리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인에게 귀속됩니다.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정당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견본주택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시공업체, 부동산중개업자 등의 영업행위)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 무관한 사항입니다.
- 신청 시 제출한 서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4조 및 제23조제2항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의 서류는 접수일부 6개월 동안 보관하고, 입주자로 선정된 자의 서류는 접수일부 5년 동안 보관 하며, 관계 기관의 요청이 있으면 보관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청약 및 계약 시 사업주체에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일정기간 보관 후 폐기 합니다.
- 입주지정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에 대해서는 입주 및 잔금완납이나 소유권 이전 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합니다. 또한 계약자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주체가 입은 손해는 계약자가 배상합니다.
- 주변단지의 신축으로 인한 건축사향과 아파트 배치, 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주변도로의 비산분진, 소음문제 등을 포함한다) 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 등이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 하고 청약신청 및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행정구역 및 단지 내 시설명칭, 동·호수는 향후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견본주택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문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승강기의 용량, 속도, 탑승위치 등) 등은 현장여건에 맞게 설계 변경된 최종 건축허가도면에 준하며, 이로 인해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여야 합니다.
- 계약체결 후 계약자의 변심, 귀책사유 등으로 인하여 분양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계약 내용에 따라 위약금을 배상하여야 합니다.
- 계약체결 시 계약자가 선택하는 마감재 선택사항 및 추가옵션계약은 변경이 불가하며, 공사에 착수하거나 별도품목 상품을 제작업체에 주문 또는 발주한 이후에는 해제가 불가하므로 이점 유념하시어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의 설계 및 시공관련 개선, 구조개선, 법령 및 지자체 지침 준수 등을 위하여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에 대한 공급계약을 체결한 계약자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2020.02.21. 시행) 제3조에 따라 공급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관청에 부동산거래의 신고를 사업주체와 공동으로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거래의 신고에 따른 일정한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하여야 하며, 이 경우 사업주체에서 일괄 신고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 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인지세 등 제세공과금은 계약자의 부담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부동산 거래(분양계약)로 인해 발생하는 인지세(가산세) 및 제세공과금 등은 납부기한 내 공급계약자 부담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1호 및 「인지세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하여 공동주택 공급계약서와 권리의무 승계(전매) 계약서는 인지세법상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과세대상입니다. 따라서, 최초 계약체결 시 사업주체와 분양계약자는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각 납부하여야 하며 분양계약자가 부담부분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납부, 인지본실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분양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부동산 등기(최초 분양계약자와 최종 매수자의 인지세 납부의무이행 확인)와는 무관하게 중간 전매도 인지세법에 따른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체결 이후 부적격 당첨, 공급질서 교란행위, 통장매매, 위장전입 등의 사유로 계약이 취소될 경우 사업주체에 인지세 환불을 요구할 수 없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 기타 계약조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에 준합니다.

### ■ 부적격 당첨자에 대한 명단관리(「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8조)

- 사업주체는 제52조 제3항 및 제57조제8항에 따른 부적격 당첨자가 소명기간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고 제58조제4항에도 해당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 명단을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은 통보받은 자의 명단을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하는 등 전산관리하고, 제57조 제7항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전산검색 결과를 통보할 때 제58조 제3항에 해당하는지를 표시하여 통보하여야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8조 제1항에 따라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 사전 청약 및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8조 제4항에 따라 사업주체는 부적격 당첨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첨자로 간주합니다. (단, 제57조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1. 같은 순위(제28조에 따른 순위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2.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제52조 제3항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 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순차별로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

### ■ 분양대금 납부 계좌 및 납부 방법

분양대금 납부 계좌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비고
계약금 / 중도금 / 잔금	수협은행	1010-2501-6382	신한자산신탁주식회사	입금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 ex) 101동 101호 홍길동 : 1010101홍길동

- ※ 계약금 납부: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시어 입금 후 입금증을 견본주택에 제출(견본주택 수납 불가) (예시 101동 101호 당첨자 "홍길동"의 경우, 입금자명을 "1010101홍길동"으로 기재)
- ※ 지정된 계약금 및 중도금, 잔금은 지정일자에 입금하시기 바라며, 사업주체에서는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 상기 관리계좌로 납부되지 아니한 분양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 사업주체는 이 계약체결과 동시에 계약자에 대한 분양대금채권을 주택도시보증공사에게 양도하고 계약자는 이를 이의 없이 승낙하기로 합니다.
- ※ 착오납입에 따른 문제발생시 사업관련 주체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 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하여 부적격자로 판정될 경우, 사업주체가 규정한 일정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이자가 발생 되지 않습니다.

### ■ 계약자 중도금 대출 안내

- 대출 관련 세부 일정은 당사 견본주택에서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이며 사업주체가 알선하는 금융기관을 통한 대출 신청 여부는 계약자의 선택사항입니다.
- 본 아파트의 중도금 대출 알선조건은 '중도금 대출 이자후불제' 조건이며, 총 분양대금에 60% 범위에서 사업주체가 지정하는 대출금융기관 및 조건에 따라, 중도금 대출을 알선할 예정입니다. 단, 사업주체가 알선한 금융기관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 '중도금 대출 이자후불제' 조건 등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계약자는 사업주체가 지정한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가능하나, 정부의 관련 정책, 금융기관의 대출 취급방침, 대출상품의 종류, 개인의 사정 등으로 대출 한도가 개인별로 상이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도 있으므로 지정 금융기관에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에 따른 대출 불가 및 한도 축소 등의 사유로 인해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으며 이와 관련된 책임을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부담하지 않고, 계약자 자기책임 하에 분양대금을 조달하여 기일 내 납부하여야 합니다.
- 사업주체가 알선한 금융기관 및 대출 취급상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대출 은행과 대출 협약에 따라 공급대금의 10% 이상 납부 이후 대출이 가능하므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자는 법률의 변경 및 정부의 부동산 정책(주택, 담보대출 제한, 보증서 발급 제한 등) 등에 따라 대출 조건 등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분양대금을 본인 책임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특히 청약 접수 전 본인의 신용 상태 및 대출 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한 후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정부 정책, 금융기관, 사업주체의 사정 등으로 대출 관련 제반 사항(대출 취급기관, 조건, 대출 취급상품 등)이 변경되더라도 사업주체에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 대출에 필요한 중도금 대출 관련 보증수수료, 인지대 등 제반 경비는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금융 신용불량 거래자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 대출이 불가하거나 대출 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분양대금 납부 조건에 따라 중도금을 현금으로 직접 납부(이 경우 사업주체는 분양대금 납부일정을 별도로 통보할 의무가 없으며 미납 시 연체료 가산됨)하여야 하며, 대출 불가 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대출 보증요건 강화에 따라 대출 보증 건수 및 보증 한도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정부 및 금융기관의 정책에 의해 입주 시점의 담보대출에 대한 대출 심사 강화, 원리금 상환조건 등 규제가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사업주체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당사는 대출기관과 협약 후 계약자에게 제시한 조건으로 대출을 신청한 계약자에게만 대출을 알선하며, 계약자가 당사의 대출 알선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변경을 요구할 경우 대출을 알선하지 않으며, 계약자는 분양대금을 자기 책임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 대출 신청은 계약 진행에 따라 모집공고에 기재된 중도금 납부 약정일자보다 다소 지연될 수 있으므로 이를 이유로 사업주체에 분양계약해지 요구, 중도금 대출 신청 거부, 발코니 확장비 및 추가 선택품목 대금 납부 거부 등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대출 은행과의 대출 협약 등에 의거하여 대출금융기관에 대출을 위한 계약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정보 제공 미동시에 따른 대출 불가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체는 이에 책임지지 않음.)
- 대출 알선과 관련하여 당사 및 금융기관에서 제시한 서류의 미제출 시 당사는 대출을 알선하지 않습니다.
- 당사가 알선한 대출의 대출 기간 만료 시(준공 후 미입주 등) 금융기관의 대출 기간 연장 및 공정률에 따른 중도금 납부 일자의 변경에 대해 별도의 절차 없이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대출 신청 관련 안내는 당사 의무사항이 아니며 “개인 사유로 인해 대출 미신청” 또는 “금융거래 신용불량자 등” 계약자의 사정에 의한 대출 불가 등으로 발생하는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대출 기간 이내라도 계약자의 금융 신용불량 등 결격사유 등이 발생하면 대출 금융기관의 대출 중단 등 요구에 따라 계약 해지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건본주택 및 분양사무소는 대출기관이 아니므로 분양상담사 및 관계자는 대출 여부에 대해 확정할 수 없으며, 추후 중도금 대출 취급기관의 심사를 통하여 대출 여부가 결정됩니다. 이에 고객의 대출 비율 축소 또는 대출 불가에 대하여 분양 상담(전화상담 포함) 내용을 근거로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대출 책임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상기 내용에도 불구하고 사업주체의 중도금 대출 알선은 확정이 아니며, 중도금대출 알선이 불가 할 경우 계약자 자격으로 분양대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계약자는 입주증 발급일 또는 입주 지정기간 종료일 중 빠른 날까지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담보대출로 전환하여야 하며, 대출금을 담보대출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급금액을 전액 완납하고 소유권 이전 및 근저당권 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담보대출에 따른 보증수수료, 인지대 등 제반 수수료 및 근저당 설정 비용 등은 대출금융기관이 정한 부담 주체가 부담하여야 하며, 담보 전환 시 대출 한도, 대출금리 등 기타대출 조건 등은 대출금융기관의 조건에 따르기로 합니다.
- 분양사무소는 대출기관이 아니므로 분양상담사 및 관계자는 대출 여부에 대해 확정할 수 없으며, 추후 중도금 대출 취급기관의 심사를 통하여 대출 여부가 결정됩니다. 이에 고객의 대출 비율 축소 또는 대출 불가에 대하여 분양 상담(전화상담 포함) 내용을 근거로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게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계약자는 중도금 대출 최초 신청 시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제시한 중도금 대출금리 등의 조건으로 대출 신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추후 중도금 대출금리 조건(대출금리 인상 등)이 변경되더라도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게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예비입주자 안내

- 예비입주자(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 대한 입주자선정(동·호수 배정 및 계약) 일정은 별도로 통보할 계획입니다.
- 사업주체는 예비입주자(특별공급 및 일반공급)로 선정된 자가 청약신청 시 기재한 연락처 및 주소로 예비입주자관련 안내를 하오니 연락처 및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인한 피해에 대해 사업주체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예비입주자(특별공급 및 일반공급)로 선정된 자는 본 아파트 건본주택을 내방하여 본인의 연락처(주소, 전화번호)를 통보하여야 합니다. [통보하지 않을 경우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예비입주자 공급(특별공급 및 일반 공급)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자의 동·호와 미계약 동·호는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됩니다.
- 일반공급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자의 동·호와 미계약 동·호는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됩니다.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 본 아파트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을 위한 추첨에도 참가할 수 없습니다.(예비입주자의 동·호수 배정일(당첨 일)이 공급 신청한 다른 주택의 당첨자발표일보다 빠를 경우 다른 주택의 당첨이 무효 처리됨.) 또한 추첨에 참가하여 계약을 체결한 후라도 다른 주택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 계약이 해제될 수 있으니, 이점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중에서 최초 동·호수 배정 추첨에 참가하여 동호를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공급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되어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Ⅷ

**발코니 확장 및 추가 선택 품목**

■ 발코니 확장 공사 금액

(단위 : 원 / VAT 포함)

주택형(타입)	발코니 확장금액	납부금액 및 일정	
		계약금(10%) 계약 시	잔금(90%) 입주지정기간
59A	16,000,000	1,600,000	14,400,000
59B	16,000,000	1,600,000	14,400,000
84A	20,000,000	2,000,000	18,000,000
84B	20,000,000	2,000,000	18,000,000

■ 발코니 확장 공사금 납부 계좌

납부 계좌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비고
계약금 / 잔금	수협은행	1010-2501-6469	신한자산신탁주식회사	입금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 ex) 101동 101호 홍길동 : 1010101홍길동

- ※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발코니 확장 공사 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아파트 분양대금 입금계좌 및 그 외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대금 계좌와 상이합니다.
- ※ 계약금은 계약 당일 상기 납부계좌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 상기 납부 계좌로 반드시 무통장 또는 인터넷뱅킹(건본주택 현금수납 불가) 하시기 바라며, 입금 시에는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예 : 101동 101호 홍길동 → 1010101홍길동]
- ※ 계약금 납부: 계약 시 상기 계좌 입금 후 입금증은 건본주택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건본주택에서 계약금(현금 또는 수표) 수납 불가/ 신용카드 결제 불가]
- ※ 입금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소명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기간에 따른 환불이자는 없습니다.
- ※ 입금자의 착오입금에 따른 문제 발생 시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으며, 계약자(입금자)는 이에 대하여 사업주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확장 공사 시 유의사항

-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4호, 제46조제4항, 제5항의 규정에 의해 공동주택의 발코니는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기준 내에서 구조 변경 할 수 있으며, 발코니 구조 변경은 입주자모집공고 시 공개된 총액 범위 내에서 시공사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야합니다.
- 상기 발코니 확장 공사비는 일괄 확장을 전제로 산정한 금액이며,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 시공 상의 문제로 아파트 공급계약 체결기간 내에 발코니 확장 여부를 선택하여 발코니 확장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자재발주 등의 문제로 추가 신청 및 변경이 불가능합니다.(비확장 요청이 없을 시에는 확장형 으로 시공됨)
- 발코니 확장의 마감자재는 제품의 품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 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신청 주택형별 확장위치 등 세부사항은 분양 카달로그 및 건본주택에서 반드시 확인 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과 가변형 칸막이 제거 변경은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시공되어야 하므로 시공사가 직접 시공하도록 제한합니다.
- 단위세대 설계 당시 소비자의 성향 등을 고려해 발코니 확장을 감안하여 설계하였으며, 발코니 확장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 단위세대의 공간 활용도가 저하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세대의 상부세대가 비확장일 경우 상부세대의 배관 일부가 확장세대 상부에 노출되어 이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확장 창호는 내풍압, 구조검토 등의 결과에 따라 세대별, 층별, 위치별로 창호규격 및 사양(유리, 창틀)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에 따른 단열재의 추가 설치로 발코니 실사용 면적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시 세대 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천장 환기구 위치, 에어컨 매립배관 위치, 세대 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고, 실내습도 등 생활습관에 따라 발코니 창 및 유리, 기타 확장부위에 결로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니 입주자께서는 환기 등으로 예방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하자발생 시 하자보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발코니 외부 전면 창 설치 및 발코니 확장에 따른 냉난방 비용의 상승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각 세대의 발코니에 필요시 선희통 BOX 및 드레인 등이 시공될 수 있으며, 발코니 확장 선택 시 비확장 세대의 발코니 사용 또는 우천으로 인하여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에 드레인 및 선희통이 설치되는 발코니와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가 있으며, 위치와 개수는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으며, 드레인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 내에서는 물을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 발코니 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 배관은 노출배관(천정, 벽)으로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하부 바닥 배관으로 인한 턱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비확장 세대의 경우 조명기구 및 배선기구의 타입, 배치 및 설치는 확장형 세대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발코니 비확장 세대의 발코니 확장 공사를 입주자가 개별 시공함으로써 입주 후 소음, 진동, 분진 등을 초래하여 타 입주자의 민원 발생 시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 무관합니다.

- 발코니 개별 확장 세대의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실내인테리어 업체 등을 통하여 개별 시공한 부위가 하자가 발생하여 원칙적으로 시공 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사업주체에게 일방적인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발생 책임소재에 대한 원인 규명 의무는 입주자 본인에게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범위는 확장형 단위세대 평면도를 기준으로 하며 계약체결 이후 관계법령 해석상의 차이 등의 사유로 발코니가 일부 변경될 경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주택형별 단위세대 구조에 따라 발코니 면적 및 확장면적에 차이가 있으며, 발코니 확장 시 동일 주택형이라도 해당 동, 호수에 따라 확장구간의 폭 및 깊이가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상부세대가 발코니 비확장 세대일 경우, 천장 단열재 설치로 인해 우물천장 및 커튼박스의 깊이, 형태, 디자인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실외기가 설치된 공간의 출입문은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일부 발코니 확장 창호는 성능 및 안전 개선 등으로 창호의 형태, 형식, 크기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추가선택 품목(유상옵선)

### 1) 시스템 에어컨

(단위 : 원 / VAT 포함)

제조사	주택형	품 목	설치위치	공급금액	계약금(10%)	중도금(10%)	잔금(80%)
					계약 시	2025.02.25	입주지정일
시스템 에어컨 (LG)	59A	선택1	거실+안방 (2개소)	4,700,000	470,000	470,000	3,760,000
		선택2	거실+안방+침실1+침실2 (4개소)	7,900,000	790,000	790,000	6,320,000
	59B	선택1	거실+안방 (2개소)	4,700,000	470,000	470,000	3,760,000
		선택2	거실+안방+침실1+침실2 (4개소)	7,900,000	790,000	790,000	6,320,000
	84A	선택1	거실+주방+안방 (3개소)	6,700,000	670,000	670,000	5,360,000
		선택2	거실+주방+안방+침실1+침실2 (5개소)	10,000,000	1,000,000	1,000,000	8,000,000
	84B	선택1	거실+주방+안방 (3개소)	6,700,000	670,000	670,000	5,360,000
		선택2	거실+주방+안방+침실1+침실2 (5개소)	10,000,000	1,000,000	1,000,000	8,000,000

-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선택은 발코니 확장을 선택한 세대에 한하여 공급하며, 시공 및 자재 발주 등의 문제로 계약 후 선택사항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미선택 시 거실 스탠드형 및 안방 벽걸이형 에어컨 각 1개소 설치 가능하도록 냉매매립배관 및 냉매배관 연결용 매립박스가 기본 제공됩니다. (에어컨 장비 및 실외기,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을 위한 냉매배관 및 드레인용 배관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설치 위치는 상기 선택사항별 위치에 설치되며,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 지정을 할 수 없습니다.
-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공사비는 본 아파트(공동주택) 공급금액과 별도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설치 위치는 세대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 ※ 실외기실의 냉매배관 및 응축수 배관은 노출배관으로 기본시공되며 현장여건에 따라 은폐, 매립될 수 있습니다.
-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실외기는 선택한 실내기 소요 용량에 맞는 제품이 설치됩니다.
- ※ 에어컨 실내기 선정시 각 실별로 적절한 단위부하에 따라 에어컨 장비가 선정되며 부득이할 경우 장비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천장에 설치된 실내기 사이즈는 장비사양, 제조사에 따라 크기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선택 시 세대 내 냉매박스, 냉매매립배관 및 배관연결구는 시공되지 않으므로 스탠드형 및 벽걸이형 에어컨을 추가 설치할 수 없습니다. (시스템에어컨 옵션 공급금액은 냉매매립배관 비용을 차감하여 산정된 가격입니다.)
-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선택 시 설치되는 실외기에 스탠드형 및 벽걸이형 에어컨을 연결하여 가동할 수 없습니다.
- ※ 시스템 에어컨 컨트롤러는 무선 리모컨으로 실내기 1대당 1개가 제공되며, 유선 컨트롤러 미설치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시스템에어컨 옵션 선택 시 기 선정된 시스템 에어컨 제조사 및 모델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설치에 따라 거실 또는 일부세대 주방/식당 우물천장의 크기 및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건본주택에 설치된 천장형 냉·난방기기는 건본주택용 전사용품으로 본공사 시 설치되는 장비 사양 및 위치와는 무관하며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품귀 또는 생산/공급의 중단,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질 및 동급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 선정된 제품의 형태·설치위치 등의 세부사항은 건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은 냉방 전용제품으로 난방운전이 불가하며, 운전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설치에 따라 일부 배선기구 및 조명기구의 사양, 수량, 종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세대 내 구조, 실내기 선택 수량, 운전 조건 또는 실내 환경 등에 따라 냉방 사각지역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 ※ 발코니 확장 시 적용되는 시스템에어컨 설치 위치는 해당 실내에서 다소 조정될 수 있으며, 기능상 장애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및 기타 세대 내 조건에 따라 설치 위치의 조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유상옵선 선택에 따라 세대 내부 구조가 변경될 경우 천장형 시스템에어컨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시스템에어컨 옵션 선택에 따라 각 세대 내 실외기실에는 에어컨 실외기가 설치되며, 이로 인한 실외기실 공간이 협소해질 수 있습니다.



※ 시스템에어컨에는 공기정정기능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시공 상의 문제로 일정 시점 이후에는 추가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계약이 불가합니다.

2) 가전기기

(단위 : 원 / VAT 포함)

품 목		주택형 (약식표기)	구성 및 세부사항	옵션 금액	계약금(10%)	중도금(10%)	잔금(80%)
					계약 시	2025.02.25	입주지정일
빌트인냉장고/수납	비스포크	59A, 59B, 84A	비스포크(냉장/냉동/김치) + 톨 수납장(내부 당사 개발 인출형 선반) 냉장_RR40C7(9/8)95AP / 냉동_RZ34C7(9/8)65AP / 김치_RQ34C7(9/8)45AP	7,200,000	720,000	720,000	5,760,000
		84B		7,400,000	740,000	740,000	5,920,000
	오브제	59A, 59B, 84A	오브제(냉장/냉동/김치) + 톨 수납장(내부 당사 개발 인출형 선반) 냉장_BC1L1AA1(STS) / 냉동_BC1F1AA(STS) / 김치_BC1K1AA1(STS)	6,600,000	660,000	660,000	5,280,000
		84B		6,800,000	680,000	680,000	5,440,000
인덕션 (기본형 주방시 선택가능)	삼성	전타입	[삼성] NZ63B5056AK	1,500,000	150,000	150,000	1,200,000
	LG		[LG] BEI3GQBI				
식기세척기 (미설치 시 여닫이 도어장)	삼성	전타입	[삼성] DW60T7075FS	1,800,000	180,000	180,000	1,440,000
	LG		[LG] DUB22SB2(걸레받이설치)				
전기오븐 (미설치 시 여닫이 도어장)	삼성	전타입	[삼성] NQ36A6555CK	450,000	45,000	45,000	360,000
	LG		[LG] MZ385EBT1				
음식물분쇄처리기		전타입	[지비엔디테크놀로지] GB-200	750,000	75,000	75,000	600,000
청정환기 시스템	스탠다드형	전타입	통합제어 (청정환기유닛 1EA, 메인 컨트롤러 1EA)	1,400,000	140,000	140,000	1,120,000
	프리미엄형	59A, 59B	각 실 제어+음압 환기(청정환기유닛 1EA, 메인 컨트롤러 1EA, 각실 컨트롤러 3EA)	5,300,000	530,000	530,000	4,240,000
		84A, 84B	각 실 제어+음압 환기(청정환기유닛 1EA, 메인 컨트롤러 1EA, 각실 컨트롤러 4EA)	5,700,000	570,000	570,000	4,560,000
드레스룸 제습기		84A, 84B	[대우컴프레서] DC50DAW	1,750,000	175,000	175,000	1,400,000
욕실복합환풍기		전타입	[힘펠] FHD3-C150P * 2개소 설치(부부+공용욕실)	1,150,000	115,000	115,000	920,000
전동커튼		전타입	거실+안방 각 1개소 (커튼구동기, 커튼레일, 리모컨 제공 / 커튼지 미제공)	1,350,000	135,000	135,000	1,080,000
스마트홈 앤 시큐리티		전타입	13인치 월패드+안면인식 도어폰+지문인식 푸시폴 도어락+스마트 욕실스위치	990,000	99,000	99,000	792,000

※ 상기 선택품목은 발코니 확장옵션을 선택한 세대에 한하여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상기 선택품목 금액은 공동주택 공급금액과 별도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상기 선택품목 금액에는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이 미포함된 금액으로 추후 관할관청으로부터 관련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이는 계약자가 납부하여야 합니다.

※ 상기 선택품목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 품귀, 신제품의 출시, 성능개선 등의 이유로 동급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빌트인 냉장고 옵션 미선택시 오픈형 냉장고장이 확장시 설치되며, 도어는 설치되지 않습니다.

※ 가전제품 옵션은 세대내 구조에 따라 설치 위치가 상이할 수 있고, 가전 및 가구도어의 개폐방향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빌트인 냉장고 유상옵션(비스포크, 오브제) 선택 시,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냉장고 및 김치냉장고를 위한 별도의 공간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삼성전자 비스포크 냉장고 도어의 컬러는

- 준공 전 원하시는 컬러로 선택하실 수 있도록 제조사에서 안내를 드릴 예정입니다. 열지전자 오브제 선택시 컬러선택은 불가합니다.
- ※ 빌트인 냉장고(비스포크, 오브제) 선택시 타입에 따라 가전 배치 순서(냉장,냉동,김치냉장고) 및 가전,가구의 열림방향이 상이할수 있습니다.
  - ※ 빌트인 냉장고(비스포크, 오브제) 선택시 주방가구의 형태 및 크기, 수납구성이 변경될수 있습니다.
  - ※ 빌트인 냉장고(비스포크, 오브제) 미선택시 냉장고와 김치냉장고를 설치할수 있는 가구가 설치되며 도어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 ※ 식기세척기 미선택 시 여닫이도어가 설치됩니다.
  - ※ 전기오븐 미선택 시 여닫이도어가 설치됩니다.
  - ※ 프리미엄키친 또는 인덕션을 유상옵션으로 선택한 경우 기본 가스쿡탑은 설치되지 않습니다.
  - ※ 프리미엄키친 선택시 인덕션이 포함되므로, 인덕션을 중복 선택할 수 없습니다.
  - ※ 84B타입에서 프리미엄 키친과 빌트인 냉장고(비스포크,오브제) 중복 선택시, 주방 평면 변화로 인해 빌트인 냉장고 옆 툴장 사이즈가 다른 타입과 상이합니다.
  - ※ 청정환기시스템 선택 시 기본제공(의무)되는 제품은 시공되지 않으며, 기본제공(의무)되는 제품의 비용은 상기 추가선택품목 판매가 산정 시 감액되어 정산된 금액입니다.
  - ※ 청정환기시스템 옵션 미선택 시 기본형 환기장치가 설치됩니다.
  - ※ 청정환기시스템 스탠다드의 경우 실내공기질측정(AIG) 장치는 이동형(포터블) 타입의 제품이 세대당 1개가 제공되며, 주방에 4.3인치 Color LCD 컨트롤러가 설치됩니다.
  - ※ 청정환기시스템의 설치 위치는 타입 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 지정을 할 수 없습니다.
  - ※ 청정환기시스템은 기본형 환기장치 대비 큰 용량의 제품으로 운전 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청정환기시스템의 필터교체는 사용시점 기준으로 연 1회 권장해드립니다.
  - ※ 청정환기시스템의 작동을 위한 통합 컨트롤러는 주방에 노출시공되며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지정을 할 수 없습니다.
  - ※ 청정환기시스템의 장비는 실외기실 천장에 노출 설치되며, 시공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선택옵션에 따라 천장, 방의 구조가 변경될 경우 천정의 환기디퓨저의 위치 및 개소는 이동 및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 청정환기시스템 프리미엄의 경우 각 침실에 전동 디퓨저가 설치되며 설정된 모드에 따라 자동으로 열리거나 닫힐 때 소음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 ※ 청정환기시스템 프리미엄의 경우 음압 환기 모드시 별도의 배기팬이 작동되고 이에 따라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본공사 시 현장 상황에 따라 청정환기시스템은 위치가 이동될 수 있습니다.
  - ※ 청정환기시스템 프리미엄의 경우 제어 실별로 4.3인치 실내공기질측정(AIG) 일체형 Color LCD 컨트롤러가 설치되며, 주방에 4.3인치 실내공기질측정(AIG) 일체형 Color LCD 통합 컨트롤러가 설치됩니다.
  - ※ 식기세척기 미선택 시 여닫이도어가 설치됩니다.
  - ※ 음식물분쇄처리기 옵션 선택 시 운수분배기와와의 간섭으로 싱크볼의 배수구 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본공사 시 수납공간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 음식물분쇄처리기 옵션 선택 시 제품 설치위치와 싱크대 배수구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음식물분쇄처리기 옵션 선택 시 기본 제공되는 음식물탈수기는 제공되지 않으며, 싱크대 하부 가림막 길이가 변경됩니다.
  - ※ 음식물 분쇄 처리기 배출구의 배출고무는 성능유지 차원에서 년 1회 교환하여야 합니다. 제품별 소모성 교환 품목은 선택 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인덕션을 유상옵션으로 선택한 경우 기본 가스쿡탑은 설치되지 않습니다. 또한 주방평면특화/프리미엄키친 유상옵션 선택시 인덕션이 포함되어 있어, 별도 인덕션 구매가 불가합니다.
  - ※ 음식물분쇄처리기, 욕실복합환풍기, 드레스룸제습기는 설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본공사 시 제조사 여건에 따라 브랜드 및 제품, 디자인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 욕실복합환풍기 옵션 추가금액은 기본형 욕실팬 비용이 차감된 금액이며 기본 제공되는 환풍기는 설치되지 않습니다.
  - ※ 욕실복합환풍기 및 드레스룸제습기는 각 1대당 1개의 리모컨이 지급되며 추가 리모컨은 제조사를 통해 개별로 구입하셔야 합니다.
  - ※ 드레스룸제습기의 설치 위치에 따라 전등 및 감지기 등의 부착물 위치 및 제품의 종류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 드레스룸제습기의 광촉매필터는 5년 주기로 교체 필요하며 사용 방법에 따라 교체 주기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드레스룸제습기 옵션선택시 안방의 드레스룸에만 설치되며 기타 침실에 포함된 드레스룸에는 설치되지 않습니다.
  - ※ 렌지후드의 색상 및 디자인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전동커튼 유상옵션 선택 시 커튼구동기, 커튼레일, 리모컨이 제공되며, 커튼지는 제공되지 않습니다.(50kg 미만의 커튼지 하중을 허용)
  - ※ 스마트홈 앤 시큐리티 옵션 선택 시, 기본 제공(의무)되는 제품 대신 13인치 월패드, 환기 연동되는 스마트 욕실 스위치, 지문인식 푸시풀 도어락, 안면인식 도어폰 제품으로 업그레이드됩니다.
  - ※ 스마트홈 앤 시큐리티 옵션 미선택 시, 기본 제공(의무)되는 10인치 월패드, 기구식 욕실 스위치, 푸시풀 도어락(지문인식 기능 제외), 일반 도어폰(안면인식 기능 제외)이 제공됩니다.
  - ※ 스마트홈 앤 시큐리티 옵션 상품의 설치 위치는 주택형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 지정을 할 수 없습니다.

3) 가구/마감재 옵션

(단위 : 원 / VAT 포함)

항 목		주택형 (약식표기)	구성 및 세부사항	옵션금액	계약금(10%)	중도금(10%)	잔금(80%)
					계약 시	2025.02.25	입주지정일
현관중문	수동	전타입	3연동 슬라이딩 도어(1픽스+2슬라이딩) + 신발장 하부 조명	2,300,000	230,000	230,000	1,840,000
	자동			3,500,000	350,000	350,000	2,800,000
프리미엄키친 (엔지니어드스톤 상판/벽, 인덕션 포함)		59A	고급형 주방가구+독립형 디자인후드+엔지니어드스톤 상판/벽+인덕션 3구(LG/삼성)	12,500,000	1,250,000	1,250,000	10,000,000
		59B	고급형 주방가구+독립형 디자인후드+엔지니어드스톤 상판/벽+인덕션 3구(LG/삼성)	11,000,000	1,100,000	1,100,000	8,800,000
		84A	고급형 주방가구+독립형 아일랜드+독립형 디자인후드+장식장+주방우물천장내 간접조명(포인트천장 포함)+엔지니어드스톤 상판/벽+인덕션 3구(LG/삼성)	23,000,000	2,300,000	2,300,000	18,400,000
		84B	고급형 주방가구+식탁일체형 아일랜드+독립형 디자인후드+톨장+포인트 천장 +엔지니어드스톤 상판/벽+인덕션 3구(LG/삼성)+펜던트형 라인조명	18,000,000	1,800,000	1,800,000	14,400,000
주방 엔지니어드스톤 (기본형 주방시 선택가능, 프리미엄키친 선택시 불가)		59A	엔지니어드스톤 벽,상판	3,550,000	355,000	355,000	2,840,000
		59B		3,300,000	330,000	330,000	2,640,000
		84A		4,100,000	410,000	410,000	3,280,000
		84B		3,900,000	390,000	390,000	3,120,000
욕실 특화	프리미엄바스	59A, 59B	벽(600*600)/바닥(300*300) 중국산 타일, 젠다이 고급 엔지니어드스톤, 샤워부스 및 액세서리 (무광), 고급수전 및 도기	5,000,000	500,000	500,000	4,000,000
		84A, 84B		5,000,000	500,000	500,000	4,000,000
안방 불박이장	스탠다드형	59A, 59B	슬라이딩 불박이장	3,800,000	380,000	380,000	3,040,000
		84A, 84B		4,600,000	460,000	460,000	3,680,000
	프리미엄형	84A, 84B		AL슬라이딩 도어+시스템가구	6,800,000	680,000	680,000
침실2 불박이장		59A, 59B	여닫이 도어 불박이장	1,500,000	150,000	150,000	1,200,000
		84A, 84B		2,050,000	205,000	205,000	1,640,000
		84A, 84B		패밀리 라이브러리 가구(후면 판넬 포함)	5,000,000	500,000	500,000
다용도실 하부장		84A	손세탁볼+하부장	600,000	60,000	60,000	480,000
거실/주방 바닥타일 마감	기본형	59A	거실/주방/복도 바닥 포슬린타일 마감	1,700,000	170,000	170,000	1,360,000
		59B		1,600,000	160,000	160,000	1,280,000
		84A		2,500,000	250,000	250,000	2,000,000
		84B		2,700,000	270,000	270,000	2,160,000
	프리미엄키친 선택 시	59A		1,700,000	170,000	170,000	1,360,000
		59B		1,600,000	160,000	160,000	1,280,000
		84A		2,800,000	280,000	280,000	2,240,000
		84B		2,800,000	280,000	280,000	2,240,000
디자인월	기본형	59A	거실아트월 대형타일(1200*600)+타일 상부 간접등(픽처레일 일체형) +거실후면/복도 디자인 판넬+디자인 판넬 상부 일부 구간 픽처레일 몰딩	3,500,000	350,000	350,000	2,800,000
		59B		3,800,000	380,000	380,000	3,040,000
		84A		3,100,000	310,000	310,000	2,480,000
		84B		4,200,000	420,000	420,000	3,360,000
	프리미엄키친 선택 시	59A		3,500,000	350,000	350,000	2,800,000
		59B		3,800,000	380,000	380,000	3,040,000
		84A		2,900,000	290,000	290,000	2,320,000
		84B		4,100,000	410,000	410,000	3,280,000
스마트 감성조명 루미나		59A,59B	거실 간접조명(점소등제어)+거실+안방+침실,1,2 감성조명(색온도, 디밍)	2,500,000	250,000	250,000	2,000,000
		84A,84B		2,800,000	280,000	280,000	2,240,000

※ 상기 선택품목은 발코니 확장옵션을 선택한 세대에 한하여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상기 선택품목 금액은 공동주택 공급금액과 별도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상기 선택품목 금액에는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이 미포함된 금액으로 추후 관할관청으로부터 관련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이는 계약자가 납부하여야 합니다.

※ 상기 선택품목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 품귀, 신제품의 출시, 성능개선 등의 이유로 동급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상기 선택품목 유무에 따라 천장 몰딩 및 가구의 형태나 규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 붙박이 가구로 가려지는 벽, 천장, 바닥은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습니다.
- ※ 가구류(시스템가구 등)는 과도한 하중 적재 시 처짐이 생기거나 손상될 수 있으니,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십시오.
- ※ 붙박이장류(신발장, 붙박이장, 주방가구, 욕실장, 욕조 등)가 설치되어 있는 벽, 바닥, 천장면의 마감은 설치되지 않으며 싱크대신발장의 하부에는 열전달로 인한 뒤틀림변형 등을 방지하기 위해 난방배관이 시공되지 않습니다.
- ※ 엔지니어드스톤(주방상판 및 벽체)과 인덕션 유상옵션은 기본형 주방에서만 선택 가능합니다.(프리미엄키친 옵션에 엔지니어드스톤 주방상판 및 벽체, 인덕션 포함)
- ※ 엔지니어드스톤 마감(주방상판 및 벽체)은 자체 특성상 시공이음매가 노출되며, 나누기는 현장의 여건에 따라 변경됩니다.
- ※ 엔지니어드스톤 마감(주방상판 및 벽체) 미선택 시, 인조대리석(MMA) 주방상판과 주방벽체 타일마감이 적용되며 상판과 타일이 접하는 부분에는 뒷턱 또는 뒷선반이 설치됩니다. 기본형/유상옵션형 선택 여부에 따라 주방상판 전면 두께(다용도실 가구 상판 참조) 및 주방가구 규격 등이 변경됩니다.
- ※ 현관중문은 자동/수동 선택 및 설치 주택형/타입에 따라 색상 및 형태, 길이 등이 상이하게 설치되며, 선택여부에 따라 현관창고 및 신발장의 형태, 길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본공사 시 중문의 프레임, 창호 부속품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수동 또는 자동 선택에 따라서도 상기 내용 처럼(현관중문 선택 시 신발장 하부 간접조명이 적용되며, 신발장하부 간접조명 ON/OFF를 위한 동작감지센서가 천장에 설치됩니다.)
- ※ 현관중문은 장식성도어로 차음 및 단열을 위한 기능성도어가 아니며, 도어 개폐 시 흔들림,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구와 현관중문의 틈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거실/주방 바닥타일 선택 시, 타일 패턴 및 칼라는 생산시기 등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타일 나누기는 현장의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바닥타일의 적용 범위는 주택형 및 타입에 따라 상이하게 설치되니, 계약체결 시 반드시 확인하여 주십시오.
- ※ 거실/주방 바닥타일 자체 특성상 표면이 평활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일정한 무늬나 색상의 공급이 어려우므로 자체 자체의 품질상 하자는 K.S기준에 의거하여 판단되오니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십시오.
- ※ 프리미엄키친 옵션 선택시, 59A,59B 타입은 쿡탑이 아일랜드에 설치되지 않습니다.
- ※ 프리미엄키친 옵션 선택시 상부장 도어 열림 방식은 도어 위치 별로 상이합니다.
- ※ 프리미엄키친 옵션 선택시 가스배관이 설치되지 않아 가스쿡탑 설치가 불가합니다.
- ※ 84A, 84B 타입은 프리미엄키친 옵션 선택 시, 평면변화가 포함되며, 알파룸이 삭제됩니다. 84B 타입의 경우 알파룸이 삭제되고 침실1의 크기가 변화되니, 확인하신 후 계약 체결 바랍니다.
- ※ 84A타입에서 프리미엄키친 선택시, 알파룸이 삭제되며, 고급형 주방가구, 주방장식장, 주방 벽/상판 엔지니어드스톤, 독립형 아일랜드, 독립형 후드, 인덕션, 주방 우물천장/ 간접조명/포인트루버, 더샵 빌트인 멀티콘센트(전열1구,무선충전,USB)이 제공됩니다. 프리미엄키친 미선택시에는 알파룸과 "ㄷ"자 주방가구(기본형 여단이 상/하부장), 주방 벽 타일, 인조대리석(MMA) 상판, 가스쿡탑, 침니형 후드, 더샵 빌트인 콘센트(전열2구)가 시공되며, 식당 우물천장/포인트루버/간접조명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 84B타입에서 프리미엄키친 선택시, 알파룸이 삭제되며, 고급형 주방가구, 툄수납장(기본 선반), 주방 벽/상판 엔지니어드스톤, 식탁일체형 아일랜드, 독립형후드, 인덕션, 포인트 루버천장, 식탁 펜던트 조명, 더샵 빌트인 멀티콘센트(전열1구,무선충전,USB)가 설치됩니다. 프리미엄키친 미선택시에는 기본형 가구, 주방벽 타일, 인조대리석(MMA) 상판, 가스쿡탑, 침니형 후드, 매입형 식탁조명, 더샵 빌트인 콘센트(전열2구)가 시공됩니다.
- ※ 59A, 59B타입에서 프리미엄키친 선택시, 평면변화는 포함되지 않으며, 고급형 주방가구, 주방 벽/상판 엔지니어드스톤, 독립형 후드, 인덕션, 더샵 빌트인 멀티콘센트(전열1구,무선충전,USB)이 제공됩니다. 프리미엄키친 미선택시에는 기본형 가구, 주방 벽 타일, 인조대리석(MMA) 상판, 가스쿡탑, 침니형 후드, 더샵 빌트인 콘센트(전열2구)가 시공됩니다.
- ※ 프리미엄키친 선택시 인덕션이 포함되어 있으며, 가스쿡탑으로 변경이 불가합니다.
- ※ 디자인월 옵션 선택시 타일 설치 구간이 기본형과 상이한 타입이 있으니 계약전 확인 바랍니다.
- ※ 디자인월 옵션 선택시, 거실 전면은 대형 포슬린타일(600\*1200) 및 상부 간접조명(픽처레일 일체형)이 설치되며, 타입에 따라 타일 설치 되는 구간이 추가 될 수 있습니다. 거실 후면/복도 일부 구간에 디자인 월판넬이 시공되며, 일부 구간에 픽처레일이 시공됩니다. 포슬린타일은 자체 특성상 밴딩(표면 휘어짐)이 있어, 표면이 평활하지 않을 수 있으며, 자체 이음매 간 단차가 발생할 수 있고, 본공사시 타일 나누기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디자인 월판넬은 본공사시 판넬 나누기가 변경될 수 있으며, 고정을 위해 타카자국이 보일 수 있습니다.
- ※ 디자인월 옵션 미선택 시 아트월은 거실 전면부위에만 400X800 포슬린타일로 설치되며, 타일 장방향이 가로로 설치됩니다. 또한 거실 후면 및 복도는 지정된 거실 벽지로 마감되며, 아트월 상부 간접조명(등박스 포함) 및 픽처레일은 시공되지 않으니, 분양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디자인월 옵션 선택 시 마감재 및 시공두께로 인하여 거실 및 복도 공간의 치수가 줄어듭니다.
- ※ 디자인월 옵션 선택 시 시공되는 픽처레일 일체형 조명과 픽처레일은 소형액자 및 전시품을 위한 제품으로 대형제품(벽걸이 TV 등)을 위한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과도한 하중으로 인해 파손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액자걸이 와이어(별도 구매 필요)의 허용하중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59A,59B 타입의 경우 안방 붙박이장 선택 시, 붙박이장 설치 후 해당 공간의 크기를 확인하신 후 계약 체결 바랍니다.
- ※ 프리미엄바스 옵션 선택시, 부부욕실 및 공용욕실에는 포슬린타일로 벽(600\*600)/바닥(300\*300)이 설치되며, 고급형 엔지니어드스톤 뒷선반이 설치됩니다.
- ※ 스마트 감성조명 더샵 루미나 유상옵션 선택시 거실등, 침실등의 색온도와 밝기가 제어되고, 거실 우물천장에 간접 LED조명(점소등 제어)이 적용됩니다. (알파룸 및 일부침실은 감성조명 옵션 제외, 옵션계약안내문 참조)
- ※ 거실 감성조명은 월패드 및 거실스위치, 침실 감성조명은 통합스위치에서 제어되며, 더샵 전용 스마트폰 App. 및 음성인식으로도 제어 가능합니다. (단, 음성인식 제어 기능은 플랫폼 운영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 거실, 복도 등 아트월면 상부 LED 간접조명 및 주방 우물천정 간접조명은 스마트 감성조명 더샵 루미나 옵션과는 별도 옵션입니다.
- ※ 스마트홈 앤 시큐리티 옵션 선택 시, 기본 제공(의무)되는 제품 대신 13인치 월패드, 환기 연동되는 스마트 욕실 스위치, 지문인식 푸시풀 도어락, 안면인식 도어폰 제품으로 업그레이드됩니다.
- ※ 스마트홈 앤 시큐리티 옵션 미선택 시, 기본 제공(의무)되는 10인치 월패드, 기구식 욕실 스위치, 푸시풀 도어락(지문인식 기능 제외), 일반 도어폰(안면인식 기능 제외)이 제공됩니다.
- ※ 스마트홈 앤 시큐리티 옵션 상품의 설치 위치는 주택형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 지정을 할 수 없습니다.

### ■ 추가선택 품목(유상옵션) 공사금 납부 계좌

납부 계좌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비고
계약금 / 중도금 / 잔금	수협은행	1010-2501-6598	신한자산신탁주식회사	입금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 ex) 101동 101호 홍길동 : 1010101홍길동

- ※ 상기 계좌로 계약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추가선택 품목(유상 옵션) 공사 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아파트 분양대금 입금계좌 및 발코니확장 공사 대금 계좌와 상이합니다.
- ※ 계약금은 계약 당일 상기 납부계좌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 상기 납부 계좌로 반드시 무통장 또는 인터넷뱅킹(건본주택 현금수납 불가) 하시기 바라며, 입금 시에는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예 : 101동 101호 홍길동 → 1010101홍길동]
- ※ 계약 시 상기 계좌 입금 후 입금증을 건본주택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건본주택에서 계약금(현금 또는 수표) 수납 불가/ 신용카드 결제 불가]
- ※ 입금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소멸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기간에 따른 환불이자는 없습니다.
- ※ 입금자의 착오입금에 따른 문제 발생 시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으며, 계약자(입금자)는 이에 대하여 사업주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상기 유상 옵션 품목 금액에는 취득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입주 후 관할 관청으로부터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 카탈로그 상 표기되는 각 실의 명칭은 카탈로그 기준이나, 설계변경 등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건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상기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 품귀 또는 신제품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신청형별 설치위치 등 세부사항은 건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유상옵션 품목의 설치 위치는 지정되어 있으며,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를 지정할 수 없습니다.
- ※ 추가선택품목 공사의 계약내용 및 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일정과 납부금액은 추가선택품목 공사계약서에 준하며, 사업주체는 공사금액 납부 약정일을 계약자에게 별도로 통보할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 ※ 납부예정일이 변동(연기 등) 될 경우 사업주체는 계약자에게 문자, 우편물 등으로 통보 시 고지 된 것으로 합니다.(수신여부에 대한 책임 없음)

## IX

## 유의사항

※ 다음의 유의사항을 청약 전에 반드시 확인 및 숙지하시기 바라며, 추후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구 분	내 용
일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입주자모집공고문 등의 내용을 정확히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을 하여야 하며, 입주자모집공고문 등의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지 않고 청약 및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li> <li>단지 명칭은 '더샵 금정위버시티'로 잠정 결정하였으나 추후 아파트 명칭 및 팻네임 등은 향후 변경될 수 있으며, 분양 시 입주민의 이해를 돕기 위한 등·호수의 표기도 변경될 수 있음.</li> <li>분양홍보물 등에 표시된 주변 개발계획 및 각종 시설(도로, 학교, 차도, 하천, 공원, 녹지 등) 조성계획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해당 시행주체가 계획, 추진 예정 중인 사항을 표현한 것으로 일부 변경 및 취소, 개통 지연 등이 발생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귀책사유가 없음.</li> <li>본 사업지 인근 초등학교, 중학교 등 학생배치에 관한 내용은 교육부의 급당 학생수 정책, 해당 교육행정기관의 추진 일정(시기 조정 등) 및 학생 배치여건 변화(관내 공동주택 개발, 학생 수 등)에 의해 추후 변경될 수 있고, 자세한 사항은 관할교육지원청 등 관할지역 교육행정기관에 반드시 문의하여 확인 바람.</li> <li>근린생활시설 및 부대복리시설, 커뮤니티 시설의 구성 및 건축 이용계획은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 시 현장 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li> <li>입주자모집공고 이전 제작, 배포된 홍보물은 사전 홍보 시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시공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더샵 금정위버시티' 홈페이지 및 견본주택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라며, 또한 홍보과정에서 주변 환경, 개발계획, 교통여건 등의 계획 또는 예정사항은 추후 관련 정책 등의 변화로 변경될 수 있으니, 관련 사항별 관계기관에 반드시 본인 확인 후 청약 및 계약을 하여야 하며 향후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li> <li>본 단지는 내진설계가 적용되어 있으며 내진능력등급 MMI Ⅷ등급, 최대지반가속도 0.239(g)로 설계되어 있음.</li> </ul>
인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당 단지는 2022년 4월 최초 사업시행인가 완료한 사업장으로, 경과규정의 적용 가능한 법적기준(친환경관련 포함)에 대해서는 최초 인허가 접수일 혹은 완료일 당시의 기준을 준수함.</li> <li>본공사 시, 현장여건 및 구조·성능·상품개선 등으로 인해 인허가 도서와 상이한 부분이 발생할 경우 분양 후 경미한 변경 등을 진행할 수 있으며, 해당사항에 대해서는 입주자에게 별도로 사전고지 않음.</li> <li>인허가 절차상의 각종 인증 및 심사를 통해 일부 계획이 변경될 수 있으며, 해당사항에 대해서는 입주자에게 별도로 사전고지 않음.</li> <li>분양 시 계획된 야간경관조명 계획은 야간경관심의 의견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li> </ul>
공 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당 사업부지에 면한 주변 도로계획은 다음과 같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측 소로3-147호선은 폭원 5m(전체 13m), 중로3-386호선은 폭원 12m, 남측 중로3-385호선은 14m로 개설될 예정임.</li> </ul> </li> <li>단지 주변도로 및 대체구거는 기부채납부지로 단지내 소유가 아니며, 카탈로그 및 모형, CG등 분양홍보물에 표현된 내용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제작된 것으로 실시공과 동선, 식재, 레벨계획 등이 상이할 수 있음. 또한 착공 및 분양이후 실시계획변경 등으로 인한 인허가청 협의 의견 및 조건에 따라 실시공시 카탈로그, 모형, CG 등 분양홍보물에 표현된 바와 그 진출입동선, 형태, 높이, 조경계획, 레벨계획 등이 상이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바람.</li> <li>단지 서측 소로3-147호선변 사업지의 대지경계 내에 보행자 통행이 가능한 전면공지(보행공간)가 조성되며, 인허가청 협의 및 현장 여건 등에 따라 가로 디자인(조경계획, 경사도, 레벨계획, 바닥패턴, 폭) 등의 설계가 변경될 수 있음.</li> <li>준공시 경계(분할)측량 후 대지면적 및 공공시설(도로,구거 등)면적이 변경될 수 있고, 이에 따라 계약면적상의 대지지분이 변경 될 수 있음. 이 경우 공급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이로인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li> <li>당 단지의 기반시설(도로,구거)등의 계획이 변경 될 수 있으며, 카탈로그 및 모형, CG등 분양홍보물에 표현된 내용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제작된 것으로 실시공과 동선, 식재, 레벨계획 등이 상이할 수 있음.</li> <li>당 단지의 대지 경계선 주위 개발계획(조경, 토목, 기타 구조물 등의 계획 일체)과 경사도 및 레벨 계획은 주변 환경 및 외부 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인해 사업승인 변경이 수반될 수 있고, 이에 대한 설계변경 시 개별 동의를 받지 아니함.</li> <li>단지 북측에는 금생도서관(3층), 부곡교회(4층), 남측에는 최고높이 20층 영풍마드레빌, 또한 101동, 102동 동측, 106동 북동측으로 금정청소년수련관(3층) 위치하고 있음. 주변 단지의 경우 각 단지의 계획 및 시공에 따라 형태, 높이, 레벨계획 등이 변경될 수 있음.</li> <li>본 공고내용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함.</li> </ul>
도로 및 기반시설	
웬스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단지 외곽 경계에 별도로 웬스가 설치되지 않을 수 있음. 조경계획이나 인허가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근린생활시설 및 주민공동시설 전면, 보행자 출입구간에는 별도의 외부인 차단을 위한 시설이 설치되지 않음.</li> </ul>
구역경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당 단지 내 레벨이 상이하여 단차가 생기는 구간에 대해서는 조경석, 옹벽, 사면처리 등이 계획되어 있으며, 카탈로그 및 모형, CG등 분양 홍보물에 표현된 조경석, 옹벽, 사면처리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제작된 것으로 실시공시 현장여건 등에 따라 구간, 높이, 시공방법 등의 계획이 상이할 수 있음.</li> </ul>

가구  
및  
마감재

- 사업주체와 시공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자재의 독점, 품질, 품귀, 업체의 부도,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등의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동등 이상의 다른 제품으로 변경 시공될 수 있음.
- 단위세대 마감자재 내용은 주택형별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견본주택 및 마감자재목록표를 참조하시기 바람.
- 공장생산 자재(타일,벽지,시트,인조석 등)의 경우 자재 자체의 품질상 하자의 판단은 KS기준 및 시방서에 의해 결정됨.
- 천연자재(석재, 목재 등)는 자재 특성상 동일한 무늬로 공급이 어려우므로, 자재 자체의 품질상 하자의 판단은 KS기준에 명시된 내용에 한정함.
- 본공사시 세대 내부 마감자재의 색상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동일 모델로 설치한 경우에도 색상 및 디자인이 달리 보일 수 있음.
- 엔지니어드스톤 및 인조대리석으로 시공되어 있는 제품은 제작특성상 제조일자에 따라 패턴과 색상, 배인이 균일하지 않아 견본주택에 설치된 자재와 다소 상이할 수 있음.
- 강마루 특성상 반복되는 패턴으로 인위적인 느낌이 들 수 있으며, 본공사시 유사 색상 및 무늬를 지닌 동등이상의 성능을 가진 타제품으로 대체 시공될 수 있음.
- 벽체 도배 마감재는 봉투바름에 의한 부착으로 테두리와 매립박스 주위로만 접착이 됨. 그 외 부위는 들뜸으로 느껴질 수 있지만 공법상 특성이며 하자가 아님.
- 견본주택 미건립세대 59A타입은 건립세대인 84A타입과 세대 마감재 및 색상 등이 동일하며, 평면형태 및 공간크기에 따라 일부 마감 및 가구구성, 가구길이, 가구 색상의 조합, 유상옵션의 형태 등이 상이할 수 있으니 분양자료(분양 카탈로그 등)를 확인하여 주십시오.
- 견본주택 미건립세대 59B타입은 건립세대인 84B타입과 세대 마감재 및 색상 등이 동일하며, 평면형태 및 공간크기에 따라 일부 마감 및 가구구성, 가구길이, 가구 색상의 조합, 유상옵션의 형태 등이 상이할 수 있으니 분양자료(분양 카탈로그 등)를 확인하여 주십시오.
- 아파트 단위세대의 천장고는 2,300mm(침실 기준)이며, 욕실, 실외기실, 발코니, 다용도실 등의 부분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비확장 세대는 확장세대 대비하여 일반가구 및 주방가구 제공량이 상이하므로 카탈로그 상 이미지를 상세히 확인하여야 하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택형/동-호수 등에 따라 각 시설별 공간의 크기, 창호의 크기 등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계약시 반드시 확인하여 주십시오.
- 동일한 주택형이라도 호수에 따라 견본주택과 다르게 좌우대칭형 평면이 될 수 있으며, 세대별로 각 실의 조망 및 방향이 상이합니다. 또한 각 동별 계단실, 승강기홀 등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이점 확인 후 청약 및 계약하여 주십시오.
- 현관 신발장, 주방가구, 붙박이장, 욕실장 등 수납공간의 크기와 마감자재는 주택형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하향식 피난구 공간은 관련 법규에 따라 물건의 적치가 금지됩니다.
- 계약자가 사용 또는 희망하는 가전제품(냉장고, 세탁기, 김치냉장고 등 일체)의 용량 및 규격에 따라 세대 내 설치가 불가할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해야 하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방가구, 붙박이장, 신발장, 욕실장 등 설치되는 가구의 비노출면(후면, 하부, 천장 등)에는 마루, 타일, 석재, 도배 등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습니다.
- 인허가 과정 및 본공사 시 사용성 개선을 위하여 주방가구 및 수납공간의 계획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공사 시 다용도실/실외기실/욕실/현관 등 단차부위 시공오차가 있을 수 있으며 허용범위 이내의 오차는 하자보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욕실 출입문(부부/공용)은 본공사 시 PVC계통(ABS) 도어로 시공됩니다.
- 욕실 거울의 경우, 보호페인트가 입혀졌더라도, 자재특성(은 성분) 상 산성, 알칼리성 세제와 쉽게 화학반응하여 습기에 의해 변색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 바, 욕실 환기 및 유지 관리에 유의하여 주시고 해당 변색은 하자보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본공사 시 세대 내 욕실 단차는 바닥구배 시공으로 인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복도 또는 침실 내부로의 물 넘김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계되었으므로 욕실 출입시 문짝에 의한 신발 걸림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욕실, 발코니, 다용도실 바닥은 물흐름 구배로 인하여 턱높이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본공사 시 세대 내 욕실의 천장높이는 바닥타일의 마감 구배와 천장 내 설비배관 설치 등에 의하여 도면상의 치수와 달리 일부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공사 시 각종 유리도어(슬라이딩, 여닫이, 픽스 등)의 디테일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공사 시 마루자재 및 인조대리석(엔지니어드스톤 포함)은 자재의 특성상 견본주택 및 각종 인쇄물의 색상 및 무늬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나 이는 하자보수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거실 아트월, 욕실, 주방 등 타일 패턴이 규칙적이지 않고 견본주택과 동일한 패턴으로 설치되지 않으며, 색상, 줄눈나누기 및 간격이 다소 다를 수 있으나 이는 하자보수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현관 디딤판/결레받이, 욕실 뒷선반, 주방 상판 및 벽체 등에 사용된 인조대리석(엔지니어드스톤 포함)은 자재의 특성상 패턴, 색상이 균질하지 않을 수 있으며, 본공사 시 견본주택에 설치된 자재와 패턴, 색상, 나누기가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자재 특성상 갈라짐 현상이나 패턴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공장생산 자재(타일, 석재 등)는 자재 특성상 일정한 무늬나 색상의 공급이 어려우므로 자재 자체의 품질상 하자의 판단은 KS기준에 의합니다.
- 엔지니어드 스톤과 인조대리석 등은 자재특성상 본공사 시 이음매가 보일 수 있으며, 본공사시 패턴 및 색상 등이 견본주택 설치세대와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대 내 설치되는 인테리어 마감재의 다양한 두께(주방벽 타일/인조대리석(엔지니어드스톤 포함, 아트월 등))로 인하여 안목치수가 도면과 상이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설치되는 가구의 폭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li> <li>· 마감재(마루 자재, 주방 상판, 아트월 등)는 시공방식 및 도색과정 등에 따라 견본주택 및 각종 인쇄물에 표기된 색상 및 무늬와 서로 상이할 수 있고, 자재 특성상 이음부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하자과 무관합니다.</li> <li>· 본공사 시 일반가구/주방가구 등 마감재의 치수 및 색상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동일 모델로 설치한 경우에도 당초 색상, 디자인과 달리 보일 수 있습니다.</li> <li>· 본공사 시 천장틀의 종류 및 규격은 천장구성 및 마감재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본공사 커튼박스 시공 시 간섭부분의 가구사이즈가 일부 줄어들 수 있습니다.</li> <li>· 본공사 시 코킹 시공 부위, 코킹 두께 및 색상등은 달라질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li>· 단위실 내 커튼박스 길이는 천장배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li> <li>· 단위실 금속도어(현관 방화문) 및 목창호, PL창호의 문짝, 프레임 및 손잡이는 사이즈, 형태, 위치 등이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li> <li>· 가구류(시스템 가구 등)는 과도한 하중 적재 시 처짐이 생기거나 손상될 수 있으니,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십시오.</li> <li>· 가구 디테일 및 이음매 위치, 도어 나누기 등은 견본주택과 다소 상이하게 시공될 수 있습니다.</li> <li>· 빌트인 냉장고(오브제, 비스포크) 유상옵션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 냉장고와 김치냉장고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제공되며 냉장고 뒤쪽 벽체는 벽지로 마감됩니다.</li> <li>· 침실 내 유상옵션 선택에 따라 방의 스위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각 단위실 내부에 적용되는 가구의 패턴글라스는 유리 특성상 조명 및 각도 등에 따라 색상이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li> <li>· 각 단위실 목문 틀 및 시트마감 부위는 시공 시 불가피하게 타카핀 자국이 보일 수 있습니다.</li> <li>· 현관 방화문은 성능에 따라 형태 및 디자인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ul>
<p>분양홍보물 및 견본주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견본주택은 84Am<sup>2</sup>, 84Bm<sup>2</sup> 타입으로 시공되었으며, 미건립 타입은 모형과 인쇄물을 참고하시어 계약 전에 평면 형태 및 가구배치, 실면적, 마감재 등 견본주택 설치 주택형과 다른 사항을 숙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람.</li> <li>· 견본주택은 분양 후 일정기간 공개 후 당사 사정에 따라 폐쇄 또는 철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평면설계 및 마감자재 등을 촬영, 보관할 예정임.</li> <li>· 분양홍보에 사용된 모형(단지모형, 세대모형 등)과 카탈로그 및 각종 인쇄물, 기타 홍보물에 삽입된 CG(광역위치도, 조감도, 배치도, 투시도, 조경도, 주민공동시설 및 단위세대 평면도 등)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개략적으로 제작된 것이므로 실제 시공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 또한, 동선, 기능, 성능 개선 및 인허가 과정의 관계기관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식재 및 시설물의 위치와 규모는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의 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li> <li>· 커뮤니티 등의 운영방안 등에 대해서는 입주 후 관리사무소 및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하여 운영, 관리됨.</li> <li>· 견본주택 및 분양 홍보물은 확장형 기준으로 제작되어 기본형세대 선택시 제공되지 않는 품목이 있으므로 계약전 반드시 확인하기 바람.</li> <li>· 견본주택에 설치된 세대현관문틀은 전시공간 조성을 위하여 임의 시공된 것으로 실제 본공사 시공제품과 무관함.</li> <li>· 세대 현관문틀 및 문틀 외부의 견본주택 공용홀 마감은 제품품목 및 본공사와 무관하며, 실제 시공시 적용되는 마감재의 범위는 세대현관문틀을 경계로 내부에 한함.</li> <li>· 견본주택, 카탈로그 등에 기재된 마감재 수준 이상의 변경요구는 불가하므로 마감재 수준을 자세히 확인하신 후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람.</li> <li>· 카탈로그 및 홈페이지에는 소비자의 주택형에 대한 인식의 편의를 위하여 간략하게 표기한 부분이 있으니 청약 및 계약시 주택형에 대한 혼돈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람.</li> <li>· 견본주택에 시공된 제품은 자재의 품질, 품귀, 생산중단, 제조회사의 도산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동질, 동급 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음.</li> <li>· 입주자모집공고 이전 제작 및 배포된 홍보물 등은 사전 홍보 시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현재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니 견본주택을 확인하시어 계약시 착오 없으시길 바람.</li> <li>· 각종 광고 및 홈페이지, 홍보물(카탈로그, 전단, 안내문 등) 등 홍보과정에서 현재 계획 또는 예정으로 홍보한 내용은 추후 인허가 과정이나 관계기관의 사정, 관련정책 등의 변화로 변경될 수 있으며, 홍보물 제작과정에서 오기, 오탈자로 인하여 잘못 기재 될 수 있으니 견본주택에 방문하시어 확인하시고 청약 및 계약하시길 바람.</li> <li>· 견본주택 내에는 분양가 포함 품목과 추가 선택품목, 전시품 등이 혼합되어 시공되었으며, 본공사시에는 사업승인도서 및 계약내용에 따라 시공되어 견본주택과 상이할 수 있고 전시품은 시공되지 않음.</li> <li>· 견본주택에 설치된 감지기, 유도등, 스프링클러헤드의 위치 및 개수는 세대 시공과 무관하며, 실 시공시 소방법에 맞추어 설치됨.</li> <li>· 견본주택 및 본 공사에 설치된 환기유니트, 환기디퓨저, 온도조절기, 선풍통, 바닥배수구, 위생기구, 욕실 악세사리의 수량, 제품사양 및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li> <li>· 견본주택에 설치되는 스프링클러는 모델하우스 운영을 위한 것이며 본공사 시 소방법규에 적법하게 설치됨. 실별 설치 위치 및 수량이 변경될 수 있음.</li> <li>· 본 견본주택에 설치된 단지모형 및 단위세대는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대지 주변현황, 공사시 필요한 설비기기 및 점검구, D/A는 표현되지 않을 수 있음.</li> <li>· 같은 주택형이라도 면적이 조금씩 상이할 수 있으며, 견본주택과 달리 평면이 좌우대칭이 될수 있으니, 계약시 반드시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견본주택 건립 주택형 84A, 84B타입 외 견본주택 미건립 주택형59A, 59B타입의 내부 치수 및 마감재의 사양, 옵션의 형태 등은 견본주택 건립 주택형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li> <li>· 견본주택에 미설치된 타입에 대해서는 견본주택에서 분양상담을 통해 평면 및 마감재 등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여 주십시오.</li> <li>· 견본주택 단위세대 내부에 설치된 인테리어 각종 소품가구(커튼, 블라인드, 침구류, 카펫 등 포함), 벽 장식패널 마감, 디스플레이 가전제품(냉장고, TV, 세탁기, 건조기 등), 기타 전사용품 등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한 연출용으로 입주 시 제공되지 않으며 분양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li> <li>· 견본주택 내 안방 비확장 발코니에 설치된 바닥마감재 및 가구, 소품 등은 연출용으로 설치된 전사용 제품으로, 본공사 시 제공되지 않으며 안방발코니는 물쓰는 공간으로 설계되어 바닥 배수구 및 타일마감(실외기실 바닥마감과 동일한 바닥타일)이 기본설치됩니다. 또한 발코니는 단열 및 바닥난방이 제공되지 않는 공간이며, 안방과 발코니 사이에는 본공사 시 분함문이 설치됩니다.</li> <li>· 견본주택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제시된 마감자재 및 설치 제품은 자재품질, 품귀, 제조회사의 도산 등의 사유로 본공사 및 하자보수 시 동질 또는 동가 이상의 다른 제품(타사제품 포함)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견본주택은 발코니확장형으로 시공되어 있으므로 계약자는 계약전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상담시 계약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발코니 외부 창호류, 세대내 목창호류, 가구류, 유리, 바닥재 등 마감자재의 색상, 디자인, 재질 등은 본공사 시 견본주택과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li> <li>· 견본주택에 설치된 모형, CG 등은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대지 주변현황, 필요한 전기, 설비기기 및 출입문 등은 표현되지 않았고, 본공사 시 견본주택과 다소 상이 할 수 있습니다.</li> <li>· 견본주택에 표시되거나 설치된 우,오수 배관의 위치, 선홍통과 수전의 위치, 환기디퓨저의 위치, 온도조절기와 바닥배수구의 제품사양 및 위치 등은 실제 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견본주택에 설치된 가전, 가구와 다르게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등), 가구 등은 폭,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배치가 불가할 수 있으니, 반드시 견본주택에 설치된 가구 사이즈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li> <li>· 견본주택에 설치된 연출용 조명기구는 본 공사 시 설치되지 않습니다.</li> <li>· 견본주택에 설치된 조명기구, 배선기구, 월패드, 콘센트, 스위치, 대기전력차단장치, 온도 조절기, 일괄소등스위치, 디지털 도어록 등의 제품 사양은 동등 이상의 타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위치 또한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견본주택에 설치된 배선기구/조명기구/스마트 스위치/분전함의 설치 위치 및 수량, 사양 등은 본공사 시 공사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견본주택에 설치된 가구류(시스템가구 포함)의 바디 및 도어 마감재 (도장, PET, LPM, 유리 등)는 본공사 시 동등이상 제품이 설치될수 있습니다.</li> </ul>
단 지	단지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각 동별 주동 출입구는 동별 특성에 따라 디자인 및 높이, 폭, 동선 등이 상이하며 주동 출입구 및 외측벽선에서 돌출된 구조로 인해 인접세대에 소음, 일조권, 조망권 등 환경권이 침해 될 수 있음.</li> <li>· 본공사 시, 시공여건 및 디자인 개선을 위하여 아파트 주동과 부대복리시설의 외관디자인(마감재료 및 패턴디자인, 옥상장식물, 창틀모양 등), 지하출입구, 외부시설물(난간디테일, DA, 쓰레기보관소 등), 조경디자인(식재, 시설물, 구조물, 조경바닥패턴 등), 주차장 구조체 공법은 경미한 변경 등 인허가 절차를 통해 형태, 재질, 색채 등이 부위별 변경될 수 있으며, 상기 사항은 입주자의 개인취향 및 의견에 의해 변경될 수 없음.</li> <li>· 주동의 동출입구 및 외부 저층부 3개층 높이(필로티 포함)는 지정석재 마감임. 근린생활시설 및 부대복리시설 외부 입면, 단지 내 건축용벽은 일부 지정석재 마감이며, 재료의 색상 및 디자인은 시공 중 변경될 수 있음.</li> <li>· 추후 옥외광고물 심의(자문) 및 야간경관심의(자문)에 따라 조명계획이 변경 될 수 있음.</li> <li>· 단지 내 조경 및 조경수 식재위치는 입체적 단지조화를 고려하여 설치나 식재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단, 규격이나 수량의 변경시 당초 계획보다 동등 이상으로 시공됨), 관계기관 심의결과, 시공과정 등에 따라 조경 시설물에 따른 조경 선형이나 포장 및 조경 시설물의 재료, 형태, 위치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li> <li>· 저층부 세대는 단지 주변도로, 단지 내 비상차로, 문주, 부대복리시설, 가로등, 동출입구, 식재, 차량출입구 및 진출입 차량의 전조등에 의해 소음, 조망 등 사생활 침해 및 야간조명에 의한 눈부심 등의 환경권에 영향을 받을 수 있음.</li> <li>· 입주 시 단지 바닥마감, 조경, 창호형태, 입면 장식물딩 등으로 인하여 사다리차 이용 시 제약이 있을 수 있으며, 1층에서 E/V를 통한 이삿짐 운반을 할 수 있음. 당 단지는 확장시 거실과 침실의 창호가 철재난간이 적용된 이중창임으로 확장세대 거실과 침실로의 사다리차 이용이 어려울 수 있음.</li> <li>· 차량 출입구를 제외한 단지 내 도로는 비상차로로 입주 후 단지운영에 따라 우편물 차량, 이사집, 택배, 구급 차량 등이 단지내 비상차량 동선을 통해 진입할 수 있으며, 단지 내 도로는 경사에 따라 장애인의 통행에 영향을 받을 수 있음.</li> <li>· 우편물보관함은 지상1층 각 동 출입구 내부 공용홀에 설치되며, 각 동별로 위치 및 규모는 상이할 수 있음.</li> <li>· 무인택배시스템은 지상1층 필로티에 설치되며, 각 동별로 위치 및 규모는 상이할 수 있음.</li> <li>· 단지 주출입구 인근에 어린이 통학차량 주정차 공간이 조성됨으로 104동, 105동, 107동, 108동 저층세대에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어린이 통학차량 주정차 공간은</li> </ul>

인허가 과정의 관계기관 협의 및 현장 여건에 따라 위치 및 규모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주거동 옥상의 철제난간 설치영역은 변경 될 수 있음.
- 주거동 필로티 진출입구간에 낙하물 방지 시설물이 추가 될 수 있음.
- 101동, 102동, 103동, 104동, 105동, 106동 하부 지하1층 및 107동, 108동, 109동 하부 지하2층에 제연휀룸이 계획됨으로 주동 1층 필로티내 제연휀룸 급기 DA가 설치되고 이에 따라 일부 저층 세대에 소음 및 진동 등의 환경권 침해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추후 실시공시 휀룸의 기능상의 이유로 DA가 일부 추가 또는 이동될 수 있음. 각동 1층에는 DA(제연DA 포함), 지하주차장 채광창, 주차장 급배기그릴 등 저층부 세대와 인접하여 설치되어 소음, 냄새, 조망 등의 환경권 침해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 단지 내 조경식재, 수경시설, 야간조명 및 홈네트워킹설비 등의 관리에 따른 유지, 보수, 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후 관리규약에 따름. 수경시설은 수질관리를 위하여 상수가 연결될 예정이며, 수경시설 가동에 따른 관리비가 발생할 수 있고 이에 관련한 내용은 입주후 관리규약에 따름. 또한 수경시설과 인접한 일부 저층 세대의 경우 소음과 진동이 발생할 수 있음.
- 단지 내 옹벽, 조경식재, 마운딩, 플랜터 등 구조물 구성에 따라 일부 저층세대에 프라이버시, 조망, 일조에 침해가 있을 수 있음. 특히, 식재기반조성 및 미관개선을 위해 분양홍보물과 상이한 구조물(플랜터, 마운딩등)이 계획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일부 저층세대에 일조, 조망 침해가 있을 수 있음.
- 단지 내 소방안전매트 설치가 권장될 경우 해당 구간에 식재가 제한되어(교목 및 관목 식재 불가) 저층세대의 프라이버시 침해 및 가로경관에 변경이 발생할 수 있음.
- 단지 외부 및 기반시설의 레벨차가 발생하는 구간에 대하여 옹벽 및 화계, 사면처리 등이 계획되어 있으며 모형, CG등 분양홍보물에 표현된 사항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제작된 것으로 실시공시 아파트의 현장여건, 미관 개선 등에 따라 구간, 높이, 디자인, 재질 등의 계획이 상이할 수 있음.
- 단지 내/외부 대지 레벨차 및 옹벽으로 인하여 일부 저층 세대에서는 조망간섭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 전 단지 모형을 참고하시기 바람.
- 단지 내 설치되는 어린이놀이터, 어린이물놀이장, 주민운동시설, 휴게소, 주민공동시설 및 단지 내 공지, 수경시설, 소방도로, 보행가로변에 인접한 세대에는 프라이버시 침해,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각종 필로티 내부 혹은 진출입구 인근에 자전거 보관소가 인접하게 설치되어 일부 저층세대 조망권 및 소음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본공사 시 현장여건 및 미관, 사용성 개선을 위해 위치, 규모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내 설치 된 물놀이장, 수경시설은 인계 후 안전, 보건, 수질관리는 관리주체의 의무이며, 관리소홀로 인한 냄새, 오염수, 해충, 개구리 소음 등에 대하여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또한 개인 부주의로 인한 조경옥외공간에서의 안전사고 발생시에는 입주민에게 책임이 있음.
- 단지 내 어린이물놀이장 외 수경시설에는 수질 정화를 위한 장치가 설치되며, 물놀이 시설이 아닌 관상용 시설이므로 별도 안전요원이 배치되지 않음.
- 단지 내 도로 및 보행로의 경사로, 선형, 폭, 조경 및 식재계획, 포장재, 포장패턴, 외부시설물은 본공사 시 동선, 기능, 성능 개선을 위해 위치, 디자인, 구조, 높이, 재료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이로 인해 일부 저층세대는 조망, 소음, 도로로 인한 시야간섭 등의 환경권 및 프라이버시가 침해될 수 있음.
- 단지 차량 출입구 중 일부 구간 포장이 불력으로 적용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차량 진입시 소음과 진동이 발생할 수 있음.
- 단지 내 공동주택용 쓰레기분리수거장이 각동별로 설치되며 보관소는 2개소 설치될 예정임. 분리수거장은 101동 남측과 북측, 102동 남측과 북측, 103동 남측과 북측, 104동 남측과 북측, 105동 북측, 106동 남측과 북측, 107동 남측과 북측, 108동 북측, 109동 북측에 위치하며, 보관소는 102동-103동 사이, 106동-107동 사이에 위치함. 근린생활시설(상가)의 분리수거함은 별도로 근린생활시설 주차장 인근에 위치함. 쓰레기분리수거장 및 보관소가 인접한 일부 저층세대는 소음, 조망, 냄새 등의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음. 또한 일부 저층세대는 해당 동의 쓰레기분리수거장 및 보관소 외에 인접한 동의 쓰레기분리수거장 및 보관소가 근접하여 설치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분양시 표현된 위치를 확인하시기 바람. 단, 외부 조경공간의 배치 개선시 쓰레기 분리수거함 및 보관소의 위치가 다소 조정될 수 있으며 각 쓰레기분리수거장 및 보관소의 위치는 시공 여건에 따라 분양 시와 다소 상이할 수 있음.
- 엘리베이터와 인접한 세대는 엘리베이터 운행으로 인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음.
- [전기통신사업법 제69조의2],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24조의2]에 의거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의 설치에 관한 상호 협의결과에 따라 102동, 107동, 108동 옥상층에 옥외안테나가 설치될 예정이며, 102동, 107동, 108동 옥상층, P-1 지하1층 주차장 휀룸1, 휀룸6, P-2 지하3층 주차장 방재실, 휀룸5에 이동통신용 증계장치가 설치될 예정으로 이는 인허가 및 시공과정에서 위치가 변경될 수 있고, 이로 인한 민원 및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원패스 시스템의 스마트폰 블루투스 연동은 스마트폰 기종에 따라 수신거리 및 기능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 원패스 시스템의 스마트폰 연동은 스마트폰 OS 정책에 따라 사용에 불편이 발생할 수 있음.
- 아파트 옥상부에 의장용 구조물, 안테나, 피뢰침, 경관조명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사생활 침해 및 눈부심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 특히 안테나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이동통신설비 구축을 위해 옥탑에 설치되며 추후 이로 인한 사생활 침해 등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민원을 제기할 수 없음.
- TV안테나는 전파수신이 양호한 106동 옥상층 또는 옥탑층에 설치되며, 인허가 및 시공 과정에서 위치가 변경될 수 있고, 이로 인한 민원 및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전동의 옥상층에는 신재생에너지 설치기준에 준하여 태양광집광판 구조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빛반사등에 의한 눈부심 및 풍음등이 일부세대에 발생할 수 있음.

		<p>향후 이에 대한 민원을 제기할 수 없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상 발전기는 관련 법규상 일정 주기로 시험 운전을 하게 되어있으며, 운전시 운전대에 따른 소음, 배기가스, 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음.</li> <li>· 각 동의 59B타입, 84B타입 칩실1 창호에는 신재생에너지 적용 계획에 따라 실내 루버형 집광채광 시스템이 설치되며 이로 인해 빛반사등에 의한 눈부심 및 풍음등이 발생할 수 있음.</li> <li>· 홈네트워크 서버의 경우 고정IP(전용회선)사용으로 관리 비용이 발생됨.</li> <li>· 스마트홈 IoT사업자의 서비스가 적용 될 경우 입주지원기간 종료 시점으로부터 2년간 무상 지원되며, 이후에는 유상으로 변경될 수 있음. 음성인식 스피커는 별도 구매 품목이며 스마트홈 IoT 연동 가전제품은 서비스사업자와 제휴된 가전에 한해 가능함.</li> <li>· 외부에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세대제어 및 정보조회가 가능한 '스마트홈' 서비스가 제공됨</li> <li>· 가스, 상하수도 등 인프라 시설 및 연결은 관할부서 여건에 따라 변경될수 있음.</li> <li>· 도시가스 공급을 위한 지역정압기가 단지내에 설치되며 위치는 공급업체인 부산도시가스와 협의하여 설치 예정임.</li> <li>· 지하주차장, 필로티 및 외기에 노출되는 일부 배관에는 동파 방지를 위해 열선이 설치될 수 있으며, 열선 전기 비용은 공용 관리비에 포함되어 부과됨.</li> <li>· 단지 북측편에 가스 정압실이 설치될 예정이며, 해당 가스 정압실의 크기 및 위치는 가스공사 등 관계청의 협의 및 현장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li> <li>· 어린이집 옥상에 옥상녹화가 계획되어 있으며, 이용을 위한 접근은 불가능하지만 관리를 위한 인원이 접근 가능하여 인근 저층부 세대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음.</li> <li>· 각 동 옥상층에는 옥상녹화가 계획되어 있지 않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li> <li>· 단지내 지상도로가 없는 일부 세대의 경우는 이삿짐 운반시 엘리베이터를 사용해야 하며, 단지내 지상도로가 있더라도 단지배치 특성상 일부세대에는 이삿짐 사다리차 진입이 어렵거나 불가할 수 있음.(임의사용에 의한 파손의 복구비용은 원인자부담의 원칙을 따름)</li> <li>· 단지 내 비상차로 및 포장구간 중 일부는 화재 등의 응급상황 발생시 비상차량의 정차위치로 표기/활용될 수 있음.</li> <li>· 단지 우·오수 배관은 옥외배관 최종 검토 결과에 따라서 본공사 시 위치 및 개소(부지 내,외부 유출입구 등)가 조정 및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빗물 재이용시설이 설치되는 일부 동 및 세대는 빗물 저류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li> </ul>
	출입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지 차량 주출입구(문주설치) 1개소가 설치되며 104동과 105동, 107동과 108동의 저층세대는 진출입 차량의 운행 및 전조등에 의해 소음, 냄새, 조망 등 환경권 침해 및 사생활 침해와 야간조명에 의한 눈부심 등의 빛공해가 발생할 수 있음.</li> <li>· 단지 차량 주출입구 외 별도 지하주차장 차량출입구는 총 1개소가 설치되며 단지 서측 13M 도로변에 위치함. 101동, 102동, 103동, 104동, 105동의 저층세대는 진출입 차량의 운행 및 전조등에 의해 소음, 냄새, 조망 등 환경권 침해 및 사생활 침해와 야간조명에 의한 눈부심 등의 빛공해가 발생할 수 있음.</li> <li>· 근린생활시설(상가)의 부설주차장은 101동 북측 지상부에 위치하고 있고, 105동 북측 지상부에 위치함에 따라 주차공간 및 진출입 동선에 인접한 동인 101동, 105동의 저층세대는 진출입 차량의 운행 및 전조등에 의해 소음, 냄새, 조망, 야간조명에 의한 눈부심 등의 빛공해 등 환경권 침해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li> <li>· 주동 필로티 계획은 전동 1층 일부 세대에 필로티가 계획되어 있으며, 필로티의 내부 계획 및 마감 높이는 상이할 수 있음. 필로티가 계획된 동은 주동출입구 위치에 계획되어 있으며 주동 출입구의 내부 계획 및 높이는 코어별 상이할 수 있음.</li> <li>· 각동 필로티 내부에 자전거보관소 및 휴게공간이 설치됨에 따라 일부 통행에 불편이 있을 수 있으며, 저층 일부세대 소음 및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음. 또한 설비배관 시공 등으로 인하여 천정에 단차가 발생 가능함.</li> </ul>
	아파트 주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동 기준층 엘리베이터홀에는 채광을 위한 채광창이 설치되며, 코어 형태에 따라 모양 및 형태는 상이함. 공용부 창호 계획은 본 시공 시 달라질 수 있음.</li> <li>· 101동 북측,과 동서측으로 드라이에어리어(DA)가 설치되어 일부 저층세대에 소음, 진동, 냄새, 매연, 조망, 눈부심 등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li> <li>· 101동 북측으로 1개소 공동주택용 쓰레기분리수거장, 남측으로 1개소 공동주택용 쓰레기분리수거장이 설치됨. 외부 조경공간의 배치 개선시 쓰레기 분리수거함의 위치가 다소 조정될 수 있으며 쓰레기 분리수거장과 인접한 일부 저층세대는 소음, 조망, 냄새 등의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음. 각 쓰레기분리수거함의 위치는 시공여건에 따라 분양시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며 각동 출입구와 쓰레기 분리수거장의 거리는 각각 상이함.</li> <li>· 101동 북동측으로 펠가든이 설치되어 일부 저층세대에 소음, 냄새 등의 환경권 침해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li> <li>· 101동 남동측으로 부대복리시설(커뮤니티)이 설치되어 일부 저층세대에 소음, 진동, 빛공해 등의 환경권 침해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li> <li>· 101동 지하2층에 근린생활시설(상가) 설치되어 일부 저층세대에 소음, 진동, 빛공해 등의 환경권 침해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li> <li>· 101동 지하1층 주차장 주변 근린생활시설(상가) 실외기실이 설치되어 소음, 진동 등의 환경권 침해 및 동선 간섭 등이 발생할 수 있음.</li> <li>· 101동 지하1층, 지하2층에 펌프실, 우수저류조, 물탱크실 등이 위치하고 있어 소음, 진동 등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li> <li>· 101동 북측 하부 도로변에 근린생활시설(상가)의 부설주차장이 설치되어 일부 저층세대는 진출입 차량의 운행 및 전조등에 의해 소음, 냄새, 매연, 조망, 야간조명에 의한 눈부심 등의 빛공해 등 환경권 침해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li> <li>· 101동 남서측 하부에 P-1 지하주차장 차량출입구가 설치되어 일부 저층세대에 소음, 냄새, 매연, 조망 등의 환경권 침해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01동 북측 하부 근린생활시설 주차장 주변에 가스정압실이 설치될 예정으로, 일부 저층세대에 소음, 진동, 냄새, 매연, 조망 등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li> <li>• 101동 남측으로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P-1 지하주차장과 단지내부 레벨 +40.00, 서측 13M도로와 연결되며, 일부 저층세대에 소음, 진동, 조망 등의 환경권 침해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li> <li>• 101동 북측 하부에 가스정압실이 설치될 예정되어, 일부 저층세대에 소음, 진동, 냄새, 매연, 조망 등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li> <li>• 101동 옥상 기계실로 올라가는 계단 내부에 출입통제 안내표지 및 차단문 설치되며, 현장여건과 소방협약에 따라 위치 및 형태가 변경될 수 있음.</li> <li>• 101동-102동 사이 외부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P-1 지하주차장과 단지내부 레벨 +40.00, 서측 13M도로와 연결되며, 일부 저층세대에 소음, 진동, 조망 등의 환경권 침해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li> <li>• 102동 남측으로 어린이놀이터 및 주민운동시설이 설치되어 일부 저층세대에 소음, 조망 등 환경권 침해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li> <li>• 102동 남측으로 드라이에어리어(DA)가 설치되어 일부 저층세대에 소음, 진동, 냄새, 매연, 조망, 눈부심 등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li> <li>• 102동 북측으로 1개소 공동주택용 쓰레기분리수거장, 남측으로 1개소 공동주택용 쓰레기분리수거장이 설치됨. 외부 조경공간의 배치 개선시 쓰레기 분리수거함의 위치가 다소 조정될 수 있으며 쓰레기 분리수거장과 인접한 일부 저층세대는 소음, 조망, 냄새 등의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음. 각 쓰레기분리수거함의 위치는 시공여건에 따라 분양시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며 각동 출입구와 쓰레기 분리수거장의 거리는 각각 상이함.</li> <li>• 102동 동남측으로 물놀이 시설이 설치되어 일부 저층세대에 소음, 진동 등의 환경권 침해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li> <li>• 102동 동측으로 부대복리시설(커뮤니티) 및 부대복리시설 출입구가 설치되어 일부 저층세대에 소음, 진동, 조망 등의 환경권 침해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또한, 분양 후 상품개선, 현장여건 등에 따라 위치 및 형태가 변경될 수 있음.</li> <li>• 102동 북동측으로 P-1 지하주차장 천창, 서측 하부 외부옹벽에 P-1 지하주차장 채광창이 설치되어 일부 저층세대에 소음, 냄새, 매연, 조망 등의 환경권 침해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li> <li>• 102동 북측으로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P-1 지하주차장과 단지내부 레벨 +40.00, 서측 13M도로와 연결되며, 일부 저층세대에 소음, 진동, 조망 등의 환경권 침해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li> <li>• 102동 옥상 기계실로 올라가는 계단 내부에 출입통제 안내표지 및 차단문 설치되며, 현장여건과 소방협약에 따라 위치 및 형태가 변경될 수 있음.</li> <li>• 103동 북측으로 어린이놀이터 및 주민운동시설이 설치되어 일부 저층세대에 소음, 조망 등 환경권 침해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li> <li>• 103동 북측과 동남측으로 드라이에어리어(DA)가 설치되어 일부 저층세대에 소음, 진동, 냄새, 매연, 조망, 눈부심 등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li> <li>• 103동 북측으로 공동주택용 쓰레기분리수거장과 재활용품보관소가 각 1개소, 남측으로 1개소 공동주택용 쓰레기분리수거장이 설치됨. 외부 조경공간의 배치 개선시 쓰레기 분리수거함과 보관소의 위치가 다소 조정될 수 있으며 쓰레기 분리수거장과 보관소는 인접한 일부 저층세대는 소음, 조망, 냄새 등의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음. 각 쓰레기분리수거장과 보관소의 위치는 시공여건에 따라 분양시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며 각동 출입구와 쓰레기분리수거장과 보관소의 거리는 각각 상이함.</li> <li>• 103동 북동측으로 물놀이 시설, 동남측으로 수경시설을 포함한 휴게정원이 설치되어 일부 저층세대에 소음, 진동 등의 환경권 침해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li> <li>• 103동 북동측으로 부대복리시설(커뮤니티) 및 부대복리시설 출입구가 설치되어 일부 저층세대에 소음, 진동, 조망 등의 환경권 침해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또한, 분양 후 상품개선, 현장여건 등에 따라 위치 및 형태가 변경될 수 있음.</li> <li>• 103동 남측으로 외부계단 및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P-1 지하주차장과 단지내부 레벨 +40.00, 서측 13M도로와 연결되며, 일부 저층세대에 소음, 진동, 조망 등의 환경권 침해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li> <li>• 103동 남동측으로 P-1 지하주차장 천창, 서측 하부 외부옹벽에 P-1 지하주차장 채광창, 남동측 외부옹벽에 P-2 지하주차장 채광창이 설치되어 일부 저층세대에 소음, 냄새, 매연, 조망 등의 환경권 침해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li> <li>• 103동 옥상 기계실로 올라가는 계단 내부에 출입통제 안내표지 및 차단문 설치되며, 현장여건과 소방협약에 따라 위치 및 형태가 변경될 수 있음.</li> <li>• 103동 옥상에 소화용수 보관을 위한 옥상 물탱크실이 설치되며, 현장여건과 소방협약에 따라 위치 및 형태가 변경될 수 있음.</li> <li>• 103동-104동 사이 외부 계단 및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P-1 지하주차장과 단지내부 레벨 +40.00, 서측 13M도로와 연결되며, 일부 저층세대에 소음, 진동, 조망 등의 환경권 침해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li> <li>• 104동 남측과 북동측으로 드라이에어리어(DA)가 설치되어 일부 저층세대에 소음, 진동, 냄새, 매연, 조망, 눈부심 등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li> <li>• 104동 북측 1개소 및 남측 1개소로 공동주택용 쓰레기분리수거장이 설치됨. 외부 조경공간의 배치 개선시 쓰레기 분리수거장의 위치가 다소 조정될 수 있으며 쓰레기 분리수거장과 인접한 일부 저층세대는 소음, 조망, 냄새 등의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음. 각 쓰레기분리수거장의 위치는 시공여건에 따라 분양시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며 각동 출입구와 쓰레기 분리수거장의 거리는 각각 상이함.</li> <li>• 104동 북동측으로 수경시설을 포함한 휴게정원이 설치되어 일부 저층세대에 진동, 소음, 조망 등 환경권 침해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li> <li>• 104동 북측으로 외부계단 및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P-1 지하주차장과 단지내부 레벨 +40.00, 서측 13M도로와 연결되며, 일부 저층세대에 소음, 진동, 조망 등의 환경권</li> </ul>
--	--

침해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 104동 남측으로 P-1 지하주차장으로 출입하는 주차램프가, 남동측으로 P-2 지하주차장을 출입하는 출입구가 설치되어 일부 저층세대의 경우 진출입 차량의 운행 및 전조등에 의해 소음, 냄새, 조망, 야간조명에 의한 눈부심 등의 빛공해 등 환경권 침해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 104동 남동측으로 어린이안전보호구역내 주출입구 회전교차로가 설치되어 일부 저층세대의 경우 진출입 차량의 운행 및 전조등에 의해 소음, 냄새, 조망, 야간조명에 의한 눈부심 등의 빛공해 등 환경권 침해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 104동 동남측으로 P-1 지하주차장 천창, 서측 하부 외부옹벽에 P-1 지하주차장 채광창, 동측 외부옹벽에 P-2 지하주차장 채광창이 설치되어 일부 저층세대에 소음, 냄새, 매연, 조망 등의 환경권 침해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 104동 옥상 기계실로 올라가는 계단 내부에 출입통제 안내표지 및 차단문 설치되며, 현장여건과 소방협의를 따라 위치 및 형태가 변경될 수 있음.
- 105동 북측으로 1개소 공동주택용 쓰레기분리수거장이 설치됨. 외부 조경공간의 배치 개선시 쓰레기분리수거장의 위치가 다소 조정될 수 있으며 쓰레기분리수거장과 인접한 일부 저층세대는 소음, 조망, 냄새 등의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음. 각 쓰레기분리수거함의 위치는 시공여건에 따라 분양시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며 각종 출입구와 쓰레기분리수거장의 거리는 각각 상이함.
- 105동 서측 하단 외부 옹벽에 드라이에어리어(DA)가 설치되어 일부 저층세대에 소음, 진동, 냄새, 매연, 조망, 눈부심 등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 105동 남측 지하2층에 근린생활시설(상가)이 설치되어, 일부 저층세대에 소음, 진동, 빛공해 등의 환경권 침해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 105동 서측으로 근린생활시설(상가) 실외기가 설치되어, 일부 저층세대에 소음, 진동, 빛공해 등의 환경권 침해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 105동 서측 하부 외부도로변에 근린생활시설(상가)의 부설주차장이 설치되어 일부 저층세대는 진출입 차량의 운행 및 전조등에 의해 소음, 냄새, 매연, 조망, 야간조명에 의한 눈부심 등의 빛공해 등 환경권 침해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 105동 남측 지하2층, 지하1층 주변에 전기실, 발전기실, 근린생활시설 수조, 근린생활시설 펌프실 등이 위치하고 있어 소음, 진동 등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 105동 남측 조경구간에 발전기 급배기용 DA가 설치되며, 발전기 가동 시 소음, 냄새, 매연 등이 발생 할 수 있음.
- 105동 북측으로 P-1 지하주차장으로 출입하는 주차램프가, 북동측으로 P-2 지하주차장을 출입하는 출입구가 설치되어 일부 저층세대의 경우 진출입 차량의 운행 및 전조등에 의해 소음, 냄새, 조망, 야간조명에 의한 눈부심 등의 빛공해 등 환경권 침해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 105동 남동측으로 단지 주출입구 및 문주, 경비실이 설치되며 일부 저층세대의 경우 조망 간섭, 진출입 차량의 운행 및 전조등에 의해 소음, 냄새, 조망, 야간조명에 의한 눈부심 등의 빛공해 등 환경권 침해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 105동 북동측으로 어린이안전보호구역내 주출입구 회전교차로가 설치되어 일부 저층세대의 경우 진출입 차량의 운행 및 전조등에 의해 소음, 냄새, 조망, 야간조명에 의한 눈부심 등의 빛공해 등 환경권 침해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 105동 동측으로 경로당이 설치되어 일부 저층세대에 소음, 진동, 조망 등의 환경권 침해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또한, 분양 후 상품개선, 현장여건 등에 따라 위치 및 형태가 변경될 수 있음.
- 105동 북동측으로 P-1 지하주차장 천창, 동측 외부옹벽에 P-2 지하주차장 채광창이 설치되어 일부 저층세대에 소음, 냄새, 매연, 조망 등의 환경권 침해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 105동 옥상 기계실로 올라가는 계단 내부에 출입통제 안내표지 및 차단문 설치되며, 현장여건과 소방협의를 따라 위치 및 형태가 변경될 수 있음.
- 106동 남측으로 어린이놀이터 및 주민운동시설이 설치되어 일부 저층세대에 진동, 소음, 조망 등 환경권 침해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 106동 남측으로 드라이에어리어(DA)가 설치되어 일부 저층세대에 소음, 진동, 냄새, 매연, 조망, 눈부심 등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 106동 북동측으로 1개소 공동주택용 쓰레기분리수거장, 남서측으로 공동주택용 쓰레기분리수거장과 재활용품보관소가 각 1개소 설치됨. 외부 조경공간의 배치 개선시 쓰레기분리수거장과 보관소의 위치가 다소 조정될 수 있으며 쓰레기분리수거장과 보관소는 인접한 일부 저층세대는 소음, 조망, 냄새 등의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음. 각 쓰레기분리수거함과 재활용품 보관소의 위치는 시공여건에 따라 분양시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며 각종 출입구와 쓰레기 분리수거장과 재활용품 보관소의 거리는 각각 상이함.
- 106동 남측과 북측으로 P-2 지하주차장 천창, 서측 하부 외부옹벽에 P-2 지하주차장 채광창이 설치되어 일부 저층세대에 소음, 냄새, 매연, 조망 등의 환경권 침해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 106동 북측으로 P-2 지하주차장(지하1층~지하3층)에 부대복리시설(커뮤니티)이 설치되어, 일부 저층세대에 소음, 진동, 빛공해 등의 환경권 침해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 106동 북측과 남측, 남서측 하단으로 드라이에어리어(DA)가 설치되어 일부 저층세대에 소음, 진동, 냄새, 매연, 조망, 눈부심 등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 106동 남측으로 단지시설 레벨49.40에서 P-2 지하1층주차장(레벨48.10)으로 출입하는 경사로(램프)가 설치되어 일부 저층세대에 소음, 냄새, 매연, 조망 등의 환경권 침해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경사로 형태 및 위치는 추후 현장여건 등에 따라 위치 및 형태가 변경될 수 있음.

- 106동 저층부는 북측, 동측으로 대지 레벨차 구간에 외부옹벽이 조성되어 조망권이 침해될 수 있음.
- 106동 북측으로 외부계단 및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P-2 지하주차장과 단지내부 레벨 +40.00, 레벨 +53.30으로 연결되며, 일부 저층세대에 소음, 진동, 조망 등의 환경권 침해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 106동 옥상 기계실로 올라가는 계단 내부에 출입통제 안내표지 및 차단문 설치되며, 현장여건과 소방협의에 따라 위치 및 형태가 변경될 수 있음.
- 106동 옥상에 소화용수 보관을 위한 옥상 물탱크실이 설치되며, 현장여건과 소방협의에 따라 위치 및 형태가 변경될 수 있음.
- 107동 북측과 남측으로 어린이놀이터 및 주민운동시설이 설치되어 일부 저층세대에 소음, 조망 등 환경권 침해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 107동 북측과 남서측 하단으로 드라이에어리어(DA)가 설치되어 일부 저층세대에 소음, 진동, 냄새, 매연, 조망, 눈부심 등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 107동 북측으로 공동주택용 쓰레기분리수거장과 재활용품보관소가 각 1개소, 남측으로 2개소 공동주택용 쓰레기분리수거장이 설치됨. 외부 조경공간의 배치 개선시 쓰레기 분리수거장과 보관소의 위치가 다소 조정될 수 있으며 쓰레기분리수거장과 보관소는 인접한 일부 저층세대는 소음, 조망, 냄새 등의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음. 각 쓰레기분리수거장과 보관소의 위치는 시공여건에 따라 분양시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며 각동 출입구와 쓰레기분리수거장과 보관소의 거리는 각각 상이함.
- 107동 저층부는 동측으로 대지 레벨차 구간에 외부옹벽이 조성되어 조망권이 침해될 수 있음.
- 107동 남측으로 외부계단 및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P-2 지하주차장과 단지내부 레벨 +40.00, 레벨 +49.40으로 연결되며, 일부 저층세대에 소음, 진동, 조망 등의 환경권 침해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 107동 남서측으로 P-2지하주차장 주출입구 및 어린이안전보호구역내 회전교차로가 설치되어 일부 저층세대의 경우 진출입 차량의 운행 및 전조등에 의해 소음, 냄새, 조망, 야간조명에 의한 눈부심 등의 빛공해 등 환경권 침해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 107동 남서측 하단에 드라이에어리어(DA)가 설치되어 일부 저층세대에 소음, 진동, 냄새, 매연, 조망, 눈부심 등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 107동 옥상 기계실로 올라가는 계단 내부에 출입통제 안내표지 및 차단문 설치되며, 현장여건과 소방협의에 따라 위치 및 형태가 변경될 수 있음.
- 107동-108동 사이 외부 계단 및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P-2 지하주차장과 단지내부 레벨 +40.00, 레벨 +49.40으로 연결되며, 일부 저층세대에 소음, 진동, 조망 등의 환경권 침해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 108동 북측과 남동측으로 어린이놀이터 및 유아놀이터가 설치되어 일부 저층세대에 진동, 소음, 조망 등 환경권 침해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 108동 남측 하단에 어린이집이 설치되어 일부 저층세대에 진동, 소음, 조망 등 환경권 침해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 108동 지하3층에 경로당이 위치하고 있어 인접한 일부 저층세대에 소음 등 환경권 침해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 108동 남측 하부로 수경시설이 설치되어 인접한 일부 저층세대에 소음 등 환경권 침해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 108동 남서측으로 단지 주출입구 및 문주, 경비실이 설치되며 일부 저층세대의 경우 진출입 차량의 운행 및 전조등에 의해 소음, 냄새, 조망, 야간조명에 의한 눈부심 등의 빛공해 등 환경권 침해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 108동 북서측으로 P-2 지하3층 주차장으로 출입하는 주차장 입구가 설치되어 일부 저층세대의 경우 진출입 차량의 운행 및 전조등에 의해 소음, 냄새, 조망, 야간조명에 의한 눈부심 등의 빛공해 등 환경권 침해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 108동 북측으로 2개소 공동주택용 쓰레기분리수거장이 설치됨. 외부 조경공간의 배치 개선시 쓰레기분리수거장의 위치가 다소 조정될 수 있으며 쓰레기분리수거장과 인접한 일부 저층세대는 소음, 조망, 냄새 등의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음. 각 쓰레기분리수거장의 위치는 시공여건에 따라 분양시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며 각동 출입구와 쓰레기분리수거장의 거리는 각각 상이함.
- 108동 북측으로 외부계단 및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P-2 지하주차장과 단지내부 레벨 +40.00, 레벨 +49.40으로 연결되며, 일부 저층세대에 소음, 진동, 조망 등의 환경권 침해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 108동 옥상 기계실로 올라가는 계단 내부에 출입통제 안내표지 및 차단문 설치되며, 현장여건과 소방협의에 따라 위치 및 형태가 변경될 수 있음.
- 108동-109동 사이 하부 외부 옹벽과 109동 북동측으로 드라이에어리어(DA)가 설치되어 일부 저층세대에 소음, 진동, 냄새, 매연, 조망, 눈부심 등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 109동 남서측 하단에 유아놀이터 및 어린이집이 설치되어 일부 저층세대에 소음, 조망 등 환경권 침해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 109동 남서측 하부에 경사로(램프)가 설치되어 해당 경사로는 일부 저층세대에 소음, 진동, 조망 등의 환경권 침해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 109동 남측 하부에 단지 차량 부출입구(경비실설치)가 설치되며 일부 저층세대의 경우 진출입 차량의 운행 및 전조등에 의해 소음, 냄새, 조망, 야간조명에 의한 눈부심 등의 빛공해 등 환경권 침해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 109동 남측으로 어린이안전구역 및 부출입구 회전교차로가 설치되어 일부 저층세대의 경우 진출입 차량의 운행 및 전조등에 의해 소음, 냄새, 조망, 야간조명에 의한 눈부심 등의 빛공해 등 환경권 침해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 109동 북서측으로 1개소 공동주택용 쓰레기분리수거장이 설치됨. 외부 조경공간의 배치 개선시 쓰레기분리수거장의 위치가 다소 조정될 수 있으며 쓰레기분리수거장과

		<p>인접한 일부 저층세대는 소음, 조망, 냄새 등의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음. 각 쓰레기분리수거장의 위치는 시공여건에 따라 분양시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며 각종 출입구와 쓰레기분리수거장의 거리는 각각 상이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09동 동남측으로 단지시설 레벨+46.40에서 레벨+49.40으로 비상차량 진입 경사로가 설치되어 일부 저층세대의 경우 진출입 차량의 운행 및 전조등에 의해 소음, 냄새, 조망, 야간조명에 의한 눈부심 등의 빛공해 등 환경권 침해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li> <li>• 109동 저층부는 남측과 동측을 대지 레벨차 구간에 외부옹벽이 구성되어 조망권이 침해될 수 있음.</li> <li>• 109동 동측으로 P-2 지하주차장 채광천창이 설치되어 일부 저층세대에 소음, 냄새, 매연, 조망 등의 환경권 침해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li> <li>• 109동 옥상 기계실로 올라가는 계단 내부에 출입통제 안내표지 및 차단문 설치되며, 현장여건과 소방협약에 따라 위치 및 형태가 변경될 수 있음.</li> <li>• 주방배기는 세대별 직접배기방식으로 외부에 루버(배기캡)이 설치됨.(단 시공여건에 따라 분양시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수 없음.) (단, 건축평면구조상 직접배기방식이 불가능한 평형은 공동배기방식으로 타평형과 배기성능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수 없음.)</li> <li>• 가스배관 인입 위치에 따라 다용도실 창의 위치가 좌우로 다소 이동할 수 있음.</li> <li>• 가스배관 설치 계획에 따라 가스배관이 외부에 설치될 수도 있음.</li> <li>• 가스 입상관에 방범용 커버 지상1층~3층, 최상층 2개층 설치. 단 수평배관은 제외하고 수직배관에만 설치됨.</li> </ul>
	지하주차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하주차장 주행통로의 높이는 2.3m이며, 주출입구의 지하진입층은 (P-1 지하1층, P-2 지하3층) 택배차량의 이동을 고려하여 메인 차량동선의 주행통로 높이는 2.7m로 계획됨. 지하주차장 이용시 택배차량의 정차차로 인해 일부 대기시간이 발생할 수 있음.</li> <li>• 주출입구에 위치한 P-1, P-2 주차장 출입구 부근과 지하2층 차량출입구에 외부인 출입통제를 위한 차단기 설치로 입출차시 대기시간이 발생할 수 있음.</li> <li>• 지하주차장 층별 각 주동의 접근 및 주차 진출입구, 램프의 위치, 부대시설 및 기계, 전기실 등 관련 공간 계획으로 인해 각 주동별로 주차장 이용에 거리와 동선의 불편함이 따를 수 있으며 계약전 필요시 인허가 도서를 확인하기 바람.</li> <li>• 지하주차장의 경우 레벨차로 인하여 각 주동에 서로 연결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계약전 인허가 도서를 확인 후 계약하시기 바람에 이로 인한 민원을 제기할 수 없음.</li> <li>• 101동, 102동, 103동, 104동, 105동 P-1 지하1층 주차장, 지하2층 주차장으로 연결됨.</li> <li>• 106동 P-2 지하1층 주차장, 지하2층 주차장, 지하3층 주차장으로 연결됨</li> <li>• 107동, 108동, 109동 P-2 지하2층 주차장, 지하3층 주차장으로 연결됨.</li> <li>• 지하주차장 주차공간의 일반주차 폭 2.5m, 확장주차 폭 2.6m, 경형주차 폭 2.0m, 장애인주차 폭 3.3m로 계획되었으나 시공오차에 따라 폭이 변동될 수 있음.</li> <li>• 지하주차장의 배수 트랜치는 일부 구간에 물이 고일 수 있음.</li> <li>• 지하주차장은 밀폐된 공간으로 환기 부족시 결로현상이 발생할 수 있음.</li> <li>• 지하주차장 상부에는 각종 배선 배관이 노출될 수 있음.</li> <li>• 주차대수 확보를 위하여 기동간격이 일부 일정하지 않으므로 일부 주차면에는 기동과 간섭되어 승하차시 불편할 수 있음.</li> <li>• 발전기실/ 전기실/ 펌프실/ 저수조/ 저류조 등 각종 기전시설 공간이 지하에 계획되어 있으며, 이와 인접한 인접세대는 소음 및 진동의 발생으로 인한 생활권 침해가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민원을 제기할 수 없음.</li> <li>• 지하주차장에는 일부 동 지하 인근 급기, 배기용 환이 설치되어 있어 주변으로 소음 또는 열기가 발생할 수 있음.</li> <li>• 지하주차장에는 동지하 E/V홀에는 제습기가 설치되며 제습기 주변으로 소음 또는 열기가 발생할 수 있음.</li> </ul>
	부대복리 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근린생활시설, 부대복리시설의 실외기는 추후 실공사 과정에서 위치가 바뀔 수 있음.</li> <li>• 근린생활시설, 경비실, 관리사무소, 경로당, 어린이집, 작은도서관 및 주민공동시설(커뮤니티) 일체는 동선, 기능, 성능개선 및 인허가 과정에서 관계기관 협의 등에 의해 본공사시 내·외부 디자인과 용도, 규모, 구조, 높이, 재료, 창호사양 및 규격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상기 사항은 입주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 대상이 될 수 없음.</li> <li>• 근린생활시설 및 각 부대복리시설을 이용하는 계단실 및 엘리베이터실로 인해 인접한 저층 일부 세대의 조망권, 일조권, 프라이버시 침해 등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단, 추후 본공사시 그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li> <li>• 108동 하부 지하3층에 경로당이 설치되며, 이로인해 인접한 세대에서 소음, 프라이버시 침해 등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단, 추후 본공사시 그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li> <li>• 108동 남측에 어린이집이 설치되며, 지하주차장과 연결되지 않고 이로 인해 인접한 저층세대 소음 및 프라이버시 침해 등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li> <li>• 102동 동측, 106동 북측에 커뮤니티시설(피트니스클럽, 실내골프, 탈의/ 샤워실, 작은도서관, 독서실 등)은 지상계단실 및 승강기로 P-2 지하1층, 지하2층, 지하3층 주차장, 단지내부 레벨 +53.30에서 접근이 가능하며, 이로인해 인접한 세대에서 소음, 빛공해, 프라이버시 침해 등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단, 추후 본공사시 그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민공동시설은 경로당, 어린이집, 피트니스, 골프연습장, 사우나, 독서실 등으로 구성되며 구체적인 운영방법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후 입주자에 의해 결정됨.</li> <li>· 공사시 현장 여건에 따라 일부 변경 될 수 있으며, 홍보물로 제공된 CG, 모형과 일부 차이점이 있을 수 있음.</li> <li>·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은 기본 마감이 제공되고 집기류 일부만 제공됨.</li> <li>· 각 부대복리시설의 실외기는 P-2 지하1층주차장에 별도구획공간 또는 지붕, 지상돌출구간, 계단 하부와 같은 내·외부에 설치되고, 이에 따라 조경계획이 일부 변경될수 있고, 인접한 세대와 보행자에게 소음 및 진동, 펜 가동에 따른 바람이 전달되거나 조망권 침해 등 환경권 영향을 받을수 있음. 단, 추후 본공사 시 그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li> <li>· 본 단지의 부대복리시설 중 일부 및 단지내 공용부를 입주민의 입주지원 및 하자 보수를 위해 일정기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음. 준공 후 단지내 주민공동시설의 일부공간은 입주고객의 입주관리 및 A/S업무를 위한 입주관리사무실 및 A/S센터로 일정기간 운영된 뒤 향후 주민공동시설 등으로 변경될 계획이므로, 일부 사용이 늦어질 수 있음.</li> <li>· 당 단지는 하나의 사업주체로 분양되고 공동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계획되었으며, 각 단지에 설치되는 부대복리시설 및 커뮤니티시설 등도 입주민 전체의 공동시설로 관리 및 운영되도록 계획되었음. 단, 준공 후 입주자 협의체 구성상황에 따라 부대복리시설 및 커뮤니티시설의 이용이 조정될 수 있으며, 부대복리시설 및 커뮤니티시설 등에 대한 구체적인 운영 및 관리 방안은 입주 후 입주자대표회의 등 입주자 협의체에서 결정하여 운영 및 관리 예정임.</li> <li>· 주동 공용부 엘리베이터 홀의 지하층은 바닥-타일, 벽-타일 및 도장 마감 기준, 기준층은 바닥-타일, 벽-도장 마감기준으로 시공되며 마감재의 품질, 품귀 시 동등 수준 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li> <li>· 단지 내 부대시설(주민공동시설)은 설계변경을 통해 일부 실의 규모 및 배치 형태, 각 실의 천정과, 창호의 크기 및 위치, 기능, 내부구조 등의 건축계획과 내외부 마감재, 집기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li> </ul>
단위세대	공통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위세대의 안목치수 및 발코니 면적산정 등의 범규는 기본형평면(발코니 비확장형, 단, 단열관련 기준은 관계법령에 따라 기본형 또는 확장형으로 진행가능)을 적용하며, 입주자에게 제공되는 유무상 옵션(거실 및 복도 아트월, 주방벽마감, 가구, 가변벽체, 창호 옵션 등의 유사한 사항 등)으로 추가되는 마감재, 가구, 기기, 벽체 등의 두께(치수)는 안목치수 산정 시 제외하여 기본형 평면의 안목치수를 적용함. (단, 안목치수 산정시 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따라 마감두께에는 벽체 바름층의 두께 등 미세한 치수(걸레받이, 천장몰딩, 벽지 등)를 포함하지 않음) 예를 들어, 거실쪽의 안목치수가 4.5m일 때, 거실아트월타일, 타일 부착두께는 고려하지 않은 치수로, 석재, 타일 시공 시 실측치수는 해당자재 및 부착두께 만큼 줄어 들게 되고, 마감자재별 상이 할 수 있음.</li> <li>· 단위세대 천장고는 H:2,300으로 일부 시공 오차가 발생할 수 있음.</li> <li>· 인접 세대(상하좌우) 및 동일 세대 내부 각 부위별 발코니 확장 여부에 따라 추가 단열공사로 인하여 발코니 및 침실, 기타 일부 구간의 벽체 및 천정의 일부가 돌출 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해당부분의 커튼박스, 몰딩, 등박스, 걸레받이, 마감재, 가구류의 형태와 위치가 확장형 기준층 도면과 상이할 수 있음.</li> <li>· 세대 내부의 욕실 단차는 바닥구배 시공으로 인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침실 내부로 물 넘김을 방지하기 위해 설계된 것으로 욕실 출입시 문짝에 의한 신발걸림은 하자사유가 아님.</li> <li>· 내부의 일반가구, 주방가구 및 내부 벽체 마감 등은 인허가 과정 및 하자방지, 사용성 개선 등을 고려하여 인허가 도서 치수와 상이할 수 있음.</li> <li>· 골조와 이질벽체(경량벽체 또는 조적벽 등)의 접합부에는 크랙하자 방지를 위하여 일부 마감면과 골조의 조정이 있을 수 있으며 마감재 부착디테일이 상이할 수 있음.</li> <li>· 세대 내부의 우물천장 형태, 커튼박스의 길이, 깊이 및 형태는 천장내부의 설비 및 전기 배관등의 시설물 설치로 인하여 다소 축소되거나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음.</li> <li>· 타일 및 엔지니어드스톤, 인조대리석의 줄눈의 위치는 형별, 타입별로 상이하며 본 시공시 하자 및 사용성 개선 등을 고려하여 시공 위치 및 개소와 상이할 수 있음.</li> <li>· 세대내 세부마감 디테일은 마감품질 확보를 위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일부 세대는 공사 시행중에 고품질 시공을 위하여 선행세대로 사용될 수 있음.</li> <li>· 타입에 따라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식기세척기 등 가전 일체) 및 가구 등이 폭,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하여 세대내 설치가 불가할 수 있으니 유의바람.</li> <li>· 엔지니어드스톤, 인조대리석 자재의 이음부는 자재 특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으로 하자와는 무관함.</li> <li>· 발코니/욕실/현관 등 단차부위는 실시공시 시공오차가 있을 수 있으며, 출입시 문짝에 의한 신발걸림은 하자사유가 아님.</li> <li>· 입주시 세대내 추가 실별가구(장롱, 불박이장 등) 및 가전설치시 마감재별 두께차이에 의한 내부치수 변동이 있을 수 있으므로 필히 실측한 후 설치하여야 함.</li> <li>· 세탁기 등을 두는 발코니 및 다용도실의 경우 발코니 확장유무와 관계없이 비난방 공간임.</li> <li>· 비확장 세대의 경우 조명기구 및 배선기구의 타입, 배치 및 설치, 수전 등은 확장형세대와 차이가 있음.</li> <li>· 옵션선택에 따라 조명기구 배선기구의 종류 및 설치위치가 변경될 수 있음.</li> <li>· 59A, 59B, 84A, 84B 전타입은 발코니에 피난용 하향식 피난사다리가 설치될 예정이며(1층 및 필로티 상부층 제외), 본 공사시 설치위치가 변경될 수 있음.</li> <li>· 피난용 하향식 사다리는 짝수층, 홀수층 교차되게 설치되며 발코니 상부에 피난용 하향식 사다리가 노출되어 있음. 하향식 피난사다리는 1층 및 하부 필로티 세대는 설치되지 않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59B, 84B 타입은 다용도실에 세탁기 및 건조기를 수직으로 설치 시 외부창호와 간섭이 있으니 분양자료 확인 후 계약체결 바람.</li> </ul>
제공품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각 세대별 기본제공품목(일반가구, 주방가구, 마감자재, 기기류) 및 유상제공품목은 상이하며, 수납공간의 크기와 마감재가 주택형별로 상이하므로 분양홍보물, 인쇄물 및 카탈로그등을 참고하시기 바람. 세대에 제공되는 가구/가전/마감 등과 관련하여 분양홍보물과 인허가도서가 상이할 경우, 분양홍보물을 우선 기준으로 함.</li> <li>• 각 세대 타입별 옵션 선택에 따라 단열 및 벽체, 창호, 물딩 및 걸레받이, 조명류 등의 설치위치가 상이하며 가구와 마감재의 디자인과 품목이 상이하게 적용될 수 있음.</li> <li>• 현관등문 등의 유상옵션 및 세대 도어를 비롯한 샤워부스, 욕실장 등 제작제품의 경우 디자인, 세부사양, 컬러, 손잡이 사양 등이 본공사시 일부 변경될 수 있음.</li> <li>• 품목 및 자재류 등은 법규 및 제규정 변경, 정책 변경, 인허가, 단종, 수급 여건 등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li> </ul>
가구공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불박이장류(신발장, 불박이장, 욕실장,복도장, 장식장, 주방가구 등)와 접해있는 벽, 바닥, 천장에는 마감재가 설치되지 않음.</li> <li>• 현관 신발장, 현관 창고, 복도팬트리, 주방가구, 드레스룸, 욕실장 등 수납공간의 크기, 수량 및 마감자재는 세대형별로 상이하며 일부 평면에는 가구가 미적용 될 수 있으니 반드시 계약 포함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람.</li> <li>• 시공에 포함되어 설치되는 가구의 경우 전기 배선 및 마감재 설치, 기타 사유와 관련하여 설치 완료 후 이동 불가함.(아일랜드 식탁 포함)</li> <li>• 가구의 힌지, 레일 등의 하드웨어류는 본공사시 동등성능의 다른제품으로 변경 될 수 있음.</li> <li>• 주방 싱크대 하부장의 온수분배기 가림판으로 인하여 수납공간이 줄어들고, 온수분배기는 본 시공시 세대별 위치와 크기가 변경 될 수 있음.</li> <li>• 배관이 설치되는 주방의 상부장은 수납장 내부의 깊이와 형태가 변경되거나 수납공간으로 사용 불가할 수 있음.</li> <li>• 주방가구 상판은 자재의 특성상 별도의 물덕이 없으므로 사용시 물튀김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하자의 사유가 되지않음.</li> <li>• 욕실 거울 및 철재류는 녹발생 방지를 위하여 알칼리나 산성세제가 아닌 중성세제를 사용하시기 바람.</li> <li>• 인허가 과정 및 실제 시공 시 사용성 개선을 위하여 주방가구 및 수납공간의 계획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li> <li>• 세대내 목문, ABS문의 상하부면의 마감재는 부착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실시공시 시공성을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음.</li> <li>• 유사 이형타입의 경우, 가구의 길이 및 위치가 상이하며, 일부 설치불가 평면에는 가구가 미적용 될 수 있으니 반드시 계약시 포함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람.</li> <li>• 주택형별 팬트리의 유무, 크기 및 제공형태가 상이하오니 반드시 계약시 포함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람.</li> <li>• 주방가구 상하부장 뒷판의 상하부면은 마감이 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하자의 사유가 되지 않음.</li> <li>• 평형별 제공되는 가구의 수량, 크기, 형태, 마감자재 및 사양 등이 상이하오니 카탈로그 및 분양홍보물을 통하여 제공사양을 확인하시기 바람.</li> </ul>
창호공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부창호 디자인, 프레임사이즈, 유리두께 등의 창호 사양은 인허가 진행, 풍동실험 및 외부 입면 계획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음.</li> <li>• 확장옵션(유상)을 선택할 경우 거실, 침실 (59A, 59B, 84A, 84B 타입)의 창호는 이중창이 설치됨.</li> <li>• 견본주택에 설치된 세대내 실외기실 루버창의 형태, 규격, 손잡이 등은 실시공시 변경될 수 있음.</li> <li>• 세대내 창호는 인테리어 마감, 시스템 에어컨 등의 간섭을 고려하여 창호높이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음.</li> <li>• 비확장 세대는 외부 단창 및 이중창 분합창이 설치되며, 인허가 진행 사항 등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음.</li> <li>• 루버창의 색상은 같은 타입이라도 동별/층별 상이할 수 있음.</li> <li>• 세대내 목창호, 여닫이 창호 및 일반가구/주방가구 문짝의 개폐방향은 수분양자의 편의를 위해 변경될 수 있음.</li> </ul>
전기/설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실 시공시 욕실의 천정높이는 바닥타일의 마감구배와 천장 내 설비배관 설치 등에 의하여 도면상의 치수와 달리 일부 오차가 발생할 수 있음.</li> <li>• 욕실내 샤워부스바닥과 욕조바닥에는 난방코일이 설치되지 않으며, 별도 제어용 온도조절기가 없음.</li> <li>• 세대 전열교환기는 실외기실에 필터 교체 및 유지 관리를 위해 장비와 연결 덕트가 노출로 설치되며, 가동 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음.</li> <li>• 세대 주방 및 욕실배기가 당해층 직배기 방식으로 인접 세대에 냄새가 전달될 수 있음.</li> <li>• 도시가스 배관 및 가스계량기 등은 다용도실에 설치되며, 세대 평면 구조 및 현장 시공 여건에 따라 설치 위치가 달라 질수 있음. 또한 세탁기, 건조기 2단 적재가 불가할 수 있음.</li> <li>• 냉장고 급수용 공배관은 냉장고 자리 벽면 하부에서 주방 개수대 하부장(온수분배기 근처)까지 매립배관 되며, 사용자가 별도 부속을 사용하여 급수분기하고 배관연결하여 사용하여야 함.</li> <li>• 각 층 세대 공용부 피트 내부에 급수 계량기가 설치되며, 외기에 취약한 일부 층에 동파방지열선(카바형)이 설치됨.</li> <li>• 동별 외부 가스배관 입상에 3층까지 방범용 배관카바가 설치됨. 단 수평배관은 제외하고 수직배관에만 설치됨.</li> <li>• 주방 렌지후드 상부장은 주방 자동식소화기 설치공간으로 수납공간으로 사용하기 어려움.</li> <li>• 세대 내부에 공용설비 점검을 위한 점검홀이나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음.</li> <li>• 수전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에는 배수구가 설치되지 않음.</li> <li>• 가스배관이 설치되는 주방의 상부장은 수납장 내부의 깊이와 형태가 변경되거나 수납공간으로 사용 불가할 수 있음.</li> <li>• 커뮤니티센터, 근린생활시설, 공용시설(경로당, 어린이집, 경비실)의 실외기 가동 시 인접세대에 소음 및 분진, 조망 등의 환경권 침해 및 미관저해가 발생할 수 있음.</li> </ul>

- 견본주택에 설치된 세대 환기용 전열교환기 급배기용 디퓨저의 사양, 위치, 개수는 본공사 시 변경될 수 있음.
- 주방가구 하부에는 바닥 난방이 설치되지 않을 수 있음.
- 식탁용 매입 및 직부 조명기구의 위치는 일반적으로 식탁이 놓일 것으로 예상되는 곳에 정하였으며, 위치변경은 불가함.
- 분전반 및 통신단자함의 위치는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여야 하며, 관련법규에 의거하여 침실 내부 (시야에 노출될 수 있는 위치)에 설치되며, 본공사 시 공사 여건에 따라 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동체 감지기는 1,2층(필로티 포함) 및 최상층에만 설치되며, 배터리 교환 주기는 통상 1년이며, 사용 요건에 따라 교환주기가 변경될 수 있음.
- 세대통신 단자함 내부에는 별도의 허브 장치가 지원되지 않으며 해당 장치는 인터넷 설치시 각 사업자에게 제공을 요청하여야함.
- 무선인터넷 사용을 위한 세대 내 무선 AP가 설치되며, 인터넷 회선 가입 및 비용은 입주자의 부담임.
- 거실에는 전기/통신 통합형 수구가 설치되며, 벽걸이 TV 설치 시 전선, 케이블 등이 노출될 수 있음.
- 세대 각 침실에 적용되는 스마트 스위치의 기능은 조명기구 점/소등, 대기전력차단, 난방온도조절의 통합기능이 있는 제품으로, 조명기구 점/소등, 대기전력차단, 난방온도 조절기능을 분리하여 개별로 설치할 수 없음.
- 호실 내 대기전력 차단 콘센트의 경우 특정 전자기기에 한하여 호환의 문제로 사용이 불가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 및 추가선택품목에 따라 배선기구/조명기구/스마트스위치/분전함 등의 위치 및 수량, 사양 등은 변경되며, 일부는 미설치 될 수 있음.
- 인덕션, 하이브리드 등 전기 쿡탑 용량은 3kW기준으로 인프라를 구성하며, 입주자가 추후 3kW 이상의 제품으로 별도 설치할 경우 배선 및 배선기구의 변경은 입주자의 부담임.
- 장식장 및 주방가구 간접조명은 일괄소등 스위치로 제어되지 않음
- 견본주택에 설치된 온도조절기, 배선기구, 조명기구, 세대단자함, 환기디퓨저 등 각종 기구의 제품사양 및 위치, 개소는 실시공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견본주택 내 전시품은 디스플레이 가전, 인테리어 소품가구 및 패브릭, 연출용 조명(전시용 간접조명, 스탠드, 펜던트, 스팟조명 등)과 소품 등이 포함되며 이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연출용으로 입주 시 제공되지 않음.
- 견본주택에 설치된 감지기, 유도등, 스프링클러헤드의 사양, 위치, 개수는 본 공사와 무관하며 실시공시 소방법에 맞추어 설치되므로 이로 인한 세대 내 일부 변경사항이 있을 수 있음. (마감형태, 천정 및 커튼박스, 창호, 가구 등)
- 보일러 및 욕실 환기팬의 위치 및 사양은 실시공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스프링클러 및 환기구(급/배기용)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견본주택 가시설물로서 본공사 시 소방법에 근거하여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음.  
(본공사 시 상기 사항 적용에 따른 일부 마감사양, 우물천장, 커튼박스, PL창호, 주방기구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욕실 내 설치되는 배수구 및 환기팬, 천장점검구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
- 우수 배관, 바닥드레인 및 수전의 위치 및 개소는 시공시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음.
- 단위세대 에어컨의 냉매 및 응축수 배관은 기본타입(거실, 안방)에 설치되며 에어컨의 연결 및 유지보수를 위한 연결용 매립박스과 커버가 시공됨.  
(유상흡선 및 시스템에어컨 세대는 제외임 (일부 중복되는 세대가 있을 수 있음))
- 기본형 환기장치는 실외기실에 설치되며 시공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기본형 환기장치의 설치위치 및 환기디퓨저 위치는 변경될 수 있으며, 작동시 소음이 다소 발생할 수 있음.
- 기본형 환기장치는 본 공사 시 위치가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덕트가 설치됨. (덕트 노출을 가리기 위해 해당타입 침실 커튼박스 길이 및 폭이 변경될 수 있음)
- 환기장치 및 욕실배기, 주방배기를 위하여 외부에 환기캡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건축면적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청정환기 시스템 옵션 미선택 시 기본형 환기장치에 미디움 필터가 설치되며, 사용하는 정도에 따라 필터교체주기(연2회 교체 권장)는 다소 상이할 수 있음.
- 배관 동파 방지를 위해 열선이 설치될 수 있으며, 설치 시 사용에 따른 전기료가 발생되며, 관리비에 포함하여 부과됨.
- 본 공사 시 욕실 천장 내부에 급수급탕분배기가 설치됩니다.
- 본 공사 시 단위실 마감자재(수전 및 액세서리류)의 설치 위치는 마감치수 및 사용자 편의를 고려하여 견본주택에 설치되는 위치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시 싱크대 하부에는 온수분배기 및 음식 탈수기, 옵션에 따른 추가장비가 설치되며 이로 인해 싱크대 하부공간이 부분 수정되거나 줄어들 수 있습니다.
- 렌지후드 주변 천장에 점검구가 시공될 수 있습니다.
- 렌지후드 작동 시 다소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는 각 세대별 개별보일러에 의한 개별난방이 시공됩니다.
- 보일러가 설치되는 다용도실 또는 창고, 발코니, 실외기실 등은 겨울철 동파가 발생할 수 있으니, 창문 닫기 및 보온 조치 등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옵션 선택에 따라 난방 온도조절기가 삭제될 수 있으며, 거실 또는 인근 침실과 연동되어 작동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드레스룸에는 별도의 온도조절기가 설치되지 않으며 침실(안방)과 연동되어 난방이 공급됩니다.</li> <li>• 배수 드레인, 선홍통, 각종 배관 등은 시공 여건을 고려하여 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유지 관리를 위해 점검구 수량이 추가되거나 사양,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본 공사 시 설비 배관 구성에 따라 거실 우물천장의 크기 및 형태, 높이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다용도실 천장, 실외기실 천장 또는 발코니 천장에 환기 장치가 설치될 수 있으며, 점검을 위해 장비와 덕트가 노출되거나 확장형 다용도실인 경우는 천장마감 및 점검구가 설치되어 천장고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li> <li>• 본 공사 시 욕실 및 다용도실 천장에 배관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설치되며, 점검구의 위치, 개소 및 크기는 견본주택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li> <li>• 세대 내 오배수관, 급수급탕분배기는 아래층 세대의 해당 위치 천장내에 설치되며 상층 세대 사용 시 생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최하층 세대의 경우 동파방지를 위해 급수급탕분배기는 당해층에 설치될 수 있으며 세대에 2개의 급수급탕분배기가 설치될 수 있음.)</li> <li>• 세대 내 난방온수분배기의 위치상 주방 구역 및 복도구간, 알파룸, 부속실 등 일부는 별도의 실별 난방제어가 되지 않습니다.</li> <li>• 세대 내 난방 및 온수공급을 위한 개별 가스보일러가 설치되며 사용 시 보일러 가동 소음과 진동이 발생합니다. 또한 보일러 가동 특성상 수전에서 온수가 나오기까지 다소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li> <li>• 도시가스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특정세대 내에 가스정압기(감압기) 또는 신축 엘보가 설치될 수도 있습니다.</li> <li>• 가변형 벽체 여부 및 유상유선 선택에 따라 난방제어구획, 스프링클러헤드와 환기 디퓨저의 배치와 수량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동절기 관리 소홀로 인한 수도 및 기타 물이 들어 있는 배관 동파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하며 호스 내 고인 물은 퇴수시켜 주십시오.</li> <li>• 인덕션, 하이브리드 등 전기 쿡탑 용량은 3kW 기준으로 인프라를 구성하며, 입주자가 추후 3kW 이상의 제품으로 별도 설치할 경우 배선 및 배선기구의 변경은 입주자의 부담입니다.</li> <li>• 세대내의 배수구 등 설비위치는 입주예정자의 동의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ul>
<p>발코니 및 실외기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용도실 비확장발코니, 실외기실 등 비확장 부위의 바닥레벨은 본공사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음.</li> <li>• 발코니 측.외벽에 단열재 추가 설치 시 가구 및 구조체 등의 치수가 변경될 수 있음.</li> <li>• 다용도실 세탁기 설치구간의 바닥단차 및 다용도실 가구 형태, 적용 위치는 본공사시 일부 변경될 수 있음.</li> <li>• 발코니 선홍통 및 드레인의 위치와 개수는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음.</li> <li>• 각 타입별로 윗층 세대 세탁배수배관이 노출 설치될 수 있으며, 같은 타입이라도 동별로 건축구조상 배관길이 및 위치가 다를 수 있음.</li> <li>• 세탁기와 실외기가 설치되는 공간 또는 발코니 인접실에 수전이 설치되는 곳은 겨울철 동파가 발생할 수 있으니, 창문닫기 및 보온조치 등 입주자의 신중한 관리가 필요함.</li> <li>• 발코니에는 각 세대의 가스배관 및 발코니에 필요 시 선홍통 및 드레인 등이 계획/시공되며, 발코니 확장 선택 시 가구를 설치하여 처리하더라도 미관상 조잡할 수 있으며, 비확장 세대의 발코니 사용 또는 우천으로 인하여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음.</li> <li>• 발코니 확장 세대의 상부세대가 비확장일 경우 상부세대의 배관 일부가 확장세대 상부에 노출되어 이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li> <li>• 발코니 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 배관(환기 덕트 포함)은 노출배관(천장, 벽)으로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고, 하부 바닥 배관으로 인한 탁이 형성될 수 있음.</li> <li>• 발코니 확장 선택 시 발코니 변화층의 경우 발코니 변화 세대 간 조건에 따라 이와 접한 발코니 확장 세대의 확장 발코니 부위에 단열재 등이 시공될 수 있으며, 천장 돌출, 벽체 돌출, 조명 위치 변경, 일부 배관 노출 등의 마감 상태 변경이 있을 수 있으며 결로 등이 발생할 수 있음.</li> <li>• 안방 또는 침실 전면 비확장발코니에 설치되는 전동빨래 건조대와 스위치 등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li> <li>• 다용도실 세탁기 설치구간의 바닥단차 형태, 적용 위치는 본공사시 일부 변경될 수 있음.</li> <li>• 견본주택에 설치된 바닥 타일 줄눈의 위치는 본공사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음.</li> <li>• 실외기실의 에어컨 전원은 단상(1Ø x 220V x 60Hz)이 공급되므로 제품 선정 전에 확인하여 주십시오. (실외기를 2대 이상 설치 시 전기 용량이나 환기량 부족에 기인한 장비 소손 등이 발생)</li> <li>• 실외기실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배관 및 덕트는 노출 시공(천정, 벽)으로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li> <li>• 실외기 설치시 세대 여건에 따라 냉매배관의 설치 방향 및 형태가 세대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li> <li>• 실외기실 도어의 개폐방향은 견본주택 및 설계도면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li> <li>• 실외기실 그릴창의 손잡이의 방향은 견본주택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li> <li>• 각 주택형별 실외기실 공간 면적이 상이하므로 입주 후 사용 예정인 실외기 용량 및 규격에 따라 실외기 설치가 불가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시어 확인바라며 이에 따른</li> </ul>

		<p>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실외기실 루버에는 방충망이 설치되며, 실외기 성능확보를 위해서는 입주인의 주기적인 관리와 청소가 필요합니다.</li> <li>• 실외기실 내에는 실외기 외 성능에 방해가 되는 다른 어떠한 적재물도 없어야 합니다.</li> <li>• 실외기실 또는 다용도실에 가스계량기 및 가스배관이 시공되며, 가스배관의 관경 및 인입경로, 가스계량기 위치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스 인입을 위한 날개벽이 계획되어 건본주택과 다르게 창호 위치가 날개벽만큼 이동될 수 있습니다.</li> </ul>
	추가 선택품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본주택 내 건립세대는 확장시 선택 가능한 추가선택품목 중 하나로 건립되어 있으며, 다른 옵션 선택 시 건본주택 건립세대의 우물천정, 가구, 마감형태 및 사양 등이 상이할 수 있으니 계약전 확인 바람.</li> <li>• 추후 소비자가 선택한 유상옵션에 따라 기본형과 우물천정, 가구, 마감형태 및 사양 등이 상이할 수 있음.</li> <li>• 주택형별로 우물천정의 크기가 상이하며, 환기, 에어컨, 소방배관 경로 확보로 인하여 우물천정이 천정의 중앙에 위치하지 않을 수 있음.</li> <li>• 각 세대 타입별 옵션 선택에 따라 조명기구, 배선기구류의 설치 위치와 사양이 변경 될 수 있음.</li> <li>• 모든 유상옵션 품목은 설치 특성상 발코니 확장시에만 선택할 수 있으며, 일정 시점 이후 시공을 위하여 자재 발주를 해야하므로 계약 후 선택사항 변경 및 해제가 불가함. (추가 선택품목 계약 체결 최종 일정은 별도 통보예정임)</li> <li>• 추가 선택품목의 옵션공사비는 옵션 설치에 따른 기존 설치 품목의 미설치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임.</li> <li>• 추가 선택품목의 설치 부위는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를 지정불가 하며 상세한 사항은 분양홍보물 및 옵션 계약서를 참조하시기 바람.</li> <li>• 추가 선택품목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 품귀, 신제품의 출시, 성능개선 등의 이유로 동급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자의 동의 및 별도의 통보 없이 진행되고 주택형별로 설치 위치 및 선택 여부가 상이함.</li> <li>• 당 현장의 경우 조합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유상옵션이 포함되어 있으며, 해당 시공분은 시공사 와는 무관하므로 당사 하자 보수의 대상이 아님.</li> <li>• 추가선택품목 공급금액은 주택형별로 산출된 가격이며, 설치 위치는 지정되어 있어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를 지정할 수 없습니다. 주택형별 설치 위치 등 세부사항은 건본주택에서 계약체결 시 반드시 확인하여 주십시오.</li> <li>•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모델하우스에 설치된 디자인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li> <li>• 건본주택 내에는 유상옵션 선택품목을 보여드리기 위해 타입별로 상이한 브랜드 제품을 전시하고 있으며, 선택하는 브랜드 제품에 따라 설치방법 및 설치형태 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li> <li>• 동일한 주택형이더라도 호수에 따라 건본주택과 다르게 좌우대칭형 평면이 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가구/가전 구성 순서, 도어 개폐방향 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li> <li>• 평형 및 추가선택품목 선택에 따라 일부 배선기구 수량, 종류, 위치, 타공, 조명, 가구 구성 및 형태(시스템가구 포함) 등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li> <li>• 건본주택에 설치된 일부 가전기기는 전시품목이므로 실 시공시 제공되지 않음.</li> </ul>
	기타 유의사항	<p>※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사업주체로 문의하여 재확인하시기 바람(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는 관계법령이 우선함.)</p>
기 타	분양상담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분양상담 및 계약 과정에서 분양 직원의 아래와 같은 행위는 시공사의 지침과 위배된 사항으로 시공사와 무관함.</li> </u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프리미엄 보장, 추가 할인, 계약해제, 연체료 감면 및 이와 유사한 보장행위</li> <li>2. 계약 후 환매를 보장하는 행위</li> <li>3. 분양대금을 제외한 일체의 금전거래행위</li> <li>4. 아파트 공급계약서에 규정한 사항을 제외한 별도의 개별 약정행위</li> </ol>

**X 기타사항**

**■ 입주자 사전 방문「주택법」 제48조의2, 동법 시행령 제53조의2 및 3,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의2 및 3,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0조의2**

- 국토교통부 “입주자 사전점검 운영요령”에 따라 입주개시 전 약 1~2개월 전에 특정 일자를 통보하여 사전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사전점검 진행절차는 추후 별도 안내예정입니다.
- 사전점검 대상 : 도장공사, 수장공사, 가구공사, 타일공사, 주방용구공사 및 위생기구공사

**■ 입주 예정일 : 2027.02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 예정임)**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 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실입주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선납할인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일까지만 적용됨)
  -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암반 발견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사업주체의 귀책 사유에 가하지 않은 입주 지연의 경우 보상은 발생하지 않음)

**■ 부대 복리시설**

부대 · 복리시설
관리사무소,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주민운동시설(피트니스 1개소, G/X룸 1개소, 필라테스 1개소, 골프연습장 1개소, 스크린골프연습장 1개소) 작은도서관, 다함께돌봄센터, 공동육아시설, 사우나, 독서실, 오픈스터디

**■ 학교 배정 관련 유의사항**

- 부산광역시 동래교육지원청 배치기준에 따라 초등학교는 부곡초등학교로 배치 가능하고, 중학교는 남학생의 경우 동현중, 부곡중, 금양중으로 배치 가능하며, 여학생의 경우 부곡여중, 부곡중, 금양중으로 배치 가능합니다.
- 부산광역시 교육청 배치기준에 따라 고등학교는 동래학교군 고등학교에 분산 배치 가능합니다.
- 학생배치는 향후 사업추진 현황, 세대수 변경 등 제반여건 변화와 주변 개발사업, 교육부 정책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동래교육지원청 및 부산광역시 교육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통학거리와 관련하여서는 계약 전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는 교육청이나 인허가 관청 요청 시 분양계약 관련사항(일부 개인정보 포함)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본 주택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득한 아파트 임**

보증기간	보증금액	보증서번호
입주자모집공고승인일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 (사용검사 또는 당해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 포함)까지	143,650,269,000원	제 01282024-101-0001900 호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 주요내용**

- 보증채무의 내용(보증약관 제1조)  
공사는 「주택도시보증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주채무자가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 주택의 분양이행 또는 환급이행 책임을 부담합니다.

<p><b>【공사】</b>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의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p> <p><b>【주채무자】</b> 보증서에 적힌 사업주체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p> <p><b>【분양이행】</b> 주택법령에서 정한 주택건설기준 및 해당 사업장의 사업계획승인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 입주를 마침</p> <p><b>【환급이행】</b>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되돌려 줌</p>
---

-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보증약관 제2조)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분양권 양도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에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습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한 채무
  2. 주채무자가 대물변제 · 허위계약 · 이중계약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대물변제】** 주채무자의 채권자가 그 채권에 대하여 주채무자가 분양하는 아파트 등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변제에 갈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허위계약】** 분양의사가 없는 자가 주채무자의 자금 유통 등을 돕기 위하여 명의를 빌려주어 분양계약하는 것으로 차명계약을 의미합니다.

3.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입주금】**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로부터 받는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을 말합니다.

4.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한 입주금납부계좌(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를, 공사가 입주금납부계좌를 변경·통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함)에 납부하지 않은 입주금.
  5. 공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증지를 알린 후에 그 납부증지통보계좌에 납부한 입주금
  6.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납부기일 전에 납부한 입주금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입주금. 다만, 공사가 입주금을 관리(주채무자 등과 공동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계좌에 납부된 입주금은 제외합니다.
  7. 보증채권자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넘어 납부한 입주금
  8.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 이자, 비용, 그 밖의 종속채무
  9.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입주금 대출금의 이자
  10. 보증채권자가 입주금의 납부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
  11. 보증사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할 입주금. 다만, 보증사고 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유로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 이전에 분양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12. 주채무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 이내에 입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
  13.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주택 또는 일반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의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사양선택 품목(예시:홈오토, 발코니샤시, 마이너스옵션 부위, 그 밖의 마감재공사)과 관련한 금액
  14. 보증채권자가 제5조의 보증채무이행 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3조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그 밖에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15.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등과 도급관계에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등에게 자금조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납부한 입주금
  16.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이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환을 위하여 납부한 입주금
  17.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으로부터 계약금 등을 빌려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 ②공사가 제6조에 따라 분양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입주금 및 제1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공사에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입주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1. 사용검사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2.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중 전체 입주금의 9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잔금

**【보증채권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에 대하여 주택법령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여 주채무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분양권 양수자를 포함)를 말합니다. 다만, 법인이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 이전에 그 주택분양계약에 대하여 공사에 직접 보증편입을 요청하고 동의를 받은 법인만 보증채권자로 봅니다. 이하 같습니다.

○ 보증사고의 정의(보증약관 제4조)

- ①보증사고란 보증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주채무자의 정상적인 주택분양계약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1. 주채무자에게 부도·파산·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주채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공정률)을 말함. 이하 같음)보다 25퍼센트P 이상 부족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다만, 입주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행청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3.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퍼센트를 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 없이 예정공정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4. 시공자의 부도·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보증기간】** 해당 주택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복리시설의 경우 신고일을 말함)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사 또는 해당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함)까지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 ②보증사고일은 공사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사고 안내문으로 알리면서 다음 각 호 중에서 보증사고일로 지정한 날을 말합니다. 이 경우 공사는 보증서에 적힌 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일간지(공고를 한 일간지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개 일간지를 말함)에 실어 통보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하 같습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부도·파산일, 사업포기 관련 문서접수일 등

2. 제1항 제2호에서 제4호의 경우에는 보증이행청구 접수일

※ 공사진행 정보 제공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 사업장의 공사진행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HUG-i)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의2에 따른 주차장 차로 및 출입구의 높이

구분		유효높이	출입구높이
P-1	지하1층	2.7m (주행통로 기준)	2.7m (주출입구 통한 지하진출입구 기준)
	지하2층	2.3m	2.3m (P-1주차장 출입구 기준)
P-2	지하1층	2.3m	-
	지하2층	2.3m	-
	지하3층	2.7m (주행통로 기준)	2.7m (주출입구 통한 지하진출입구 기준)

### ■ 내진 성능 및 능력

최대지반가속도	내진능력(MMI 등급)
0.239g	VII

### ■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4조에 따른 친환경 주택의 성능 수준

의무사항	적용여부	사양, 성능, 설치위치, 설치개수 등
건축부문 설계기준 (제7조 제3항 제1호)	단열조치 준수(가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1호에 의한 단열조치를 준수
	바닥난방의 단열재 설치(나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3호에 의한 바닥난방에서 단열재의 설치방법을 준수
	방습층 설치(다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4호에 의한 기밀 및 결로방지 등을 위한 조치를 준수
기계부문 설계기준 (제7조 제3항 제2호)	설계용 외기조건 준수(가목) (냉난방설비가 없는 경우 제외)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8조제1호에 의한 설계용 외기조건 준수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나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8조제2호에 의한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 준수
	고효율 가정용보일러(다목)	○ 가정보일러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제17조에 따른 환경표지 인증 제품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대상 제품별 인증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고효율 전동기(라목)	○ 전동기(단, 0.7kW 이하 전동기, 소방 및 제연송풍기용 전동기는 제외)는 산업통상자원부 고시「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 따른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받은 제품 또는 최소소비효율기준을 만족하는 제품을 사용
	고효율 난방, 급탕·급수펌프(마목)	○ 난방, 급탕 및 급수펌프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받은 제품을 사용하거나 그 평균 효율이 KS 규격에서 정해진 기준 효율의 1.12배 이상의 제품을 사용
	절수형설비 설치(바목)	○ 세대 내에 설치되는 수전류는 「수도법」 제15조 및 「수도법시행규칙」 제1조의2, 별표1에 따른 절수형 설비로 설치
	실별 온도조절장치(사목)	○ 세대 내에는 각 실별난방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온도조절장치를 설치
전기부문 설계기준 (제7조 제3항 제3호)	수변전설비 설치(가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1호에 의한 수변전설비를 설치
	간선 및 동력설비 설치(나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2호에 의한 간선 및 동력설비를 설치
	조명설치(다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3호에 의한 조명설비를 설치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 설치(라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4호에 의한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를 설치
	공용화장실 자동점멸스위치(마목)	○ 단지 내의 공용화장실에는 화장실의 사용여부에 따라 자동으로 점멸되는 스위치를 설치





■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

구 분	사업주체	시공사
상 호	금정더샵지역주택조합	주식회사 포스코이앤씨
주 소	부산광역시 금정구 기찰로 59 (부곡동)	경북 포항시 북구 중흥로 307(죽도동)
법인등록번호	304-82-68437	174611-0002979

■ 사업지, 견본주택, 분양문의 안내

사업지 약도	견본주택 약도	안 내
<p>부산광역시 금정구 부곡동 200-1번지 일원</p> <p>현장 :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곡동 200-1 일원</p>	<p>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동 1364-7번지</p> <p>견본주택 :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동 1364-7</p>	<p>분양문의 : 051-864-3600</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운영시간 : 10:00 ~ 18:00</li> <li>※ 정부방침에 의해 '주52시간 근무제'가 본 견본주택에도 적용됩니다.</li> <li>• 운영기간 : 분양종료시까지</li> <li>※ 분양일정에 따라 견본주택 관람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대표번호를 통하여 사전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li> </ul>
		<b>홈페이지 주소</b>
		www.더샵금정위버시티.com